

난민인정 심사 · 처우 · 체류 지침

2020. 4.

<지침 제·개정 연혁>

- ▶ 2013. 06. 28. 난민인정업무 처리지침 제정
- ▶ 2013. 07. 24. 난민처우지침 제정
- ▶ 2014. 02. 07. 통합지침 제정
- ▶ 2014. 07. 04. 일부 개정
- ▶ 2015. 04. 16. 일부 개정
- ▶ 2015. 04. 27. 일부 개정
- ▶ 2016. 07. 27. 일부 개정
- ▶ 2016. 10. 07. 일부 개정
- ▶ 2017. 06. 30. 일부 개정
- ▶ 2018. 02. 12. 일부 개정
- ▶ 2018. 07. 31. 일부 개정
- ▶ 2018. 10. 01. 일부 개정
- ▶ 2019. 07. 01. 일부 개정
- ▶ 2020. 04. 17. 일부 개정

법 무 부
난 민 정 책 과

목 차

I. 총 칙

1. 개 요 1
2. 업무처리 절차도 및 안내자료 게시 4
3. 관할구역 5

II. 출입국항 난민신청 및 심사

1. 개 요 6
2. 신청 접수 8
3. 회부/불회부 결정 11
4. 회부/불회부 결정 후속조치 14
5. 불회부결정 취소소송 제기자 처리 17
6. 난민입시상륙허가 18
7. 출입국항 면담조서 등 정보공개 및 열람·복사 19

III. 대한민국 안에서의 난민신청 및 심사

1. 접 수 22
2. 면 접 32
3. 사실조사 43
4. 신원검증 45
5. 가족결합 심사 등 48
6. 난민 인정/불인정 결정 51
7. 인정/불인정 결정 후속조치 54
8. 이의신청 접수·보고 56
9. 난민인정 결정의 취소 및 철회 58
10. 난민소송 제기 및 확정 시 조치 사항 65
11. 자료 등의 열람·복사 66

IV. 난민신청자 등 체류관리 및 사범심사 등

1. 체류관리 및 사범심사 일반원칙 68
2. 난민신청자 체류관리 및 사범심사 71
 - 가. 체류자격 부여·연장·변경 등 71
 - 나. 취업허가 77
 - 다. 법 위반자 등 체류허가 및 사범처리 기준 78
 - 1) 난민신청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변경·연장 등 제한자 처리기준
 - 2) 난민심사 진행 중 체류기간 도과자 처리 기준

3) 위·변조 여권(사증·심사인 위변조 포함) 행사자 및 밀입국자 조치사항	
4) 밀입국자에 대한 체류허가 및 사범심사	
5) 난민신청자 불법취업자 처리방안	
6) 벌금형 확정자 처리방안	
7) 국내 입국 전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행위자 처리방법	
8) 신원확인 등 난민신청자의 보호 및 해제절차	
9) 난민소송 제기자 등 조치사항	
3. 인도적체류자 체류관리	88
가. 체류자격 부여·연장·변경 등	88
나. 취업허가	91
다. 가족결합	92
라. 범위반자 처리방법	94
마. 체류허가 취소 및 기간연장 등 불허	95
4. 난민인정자 체류관리	96
가. 체류자격 부여·연장·변경 등	96
나. 영주자격 변경	98
다. 난민여행증명서 신청 및 발급	100
라. 범위반자 처리방법	107
마. 배우자 등에 대한 사증발급 등(가족결합)	107
바. 난민인정 취소된 자의 체류	112
사. 난민인정 철회된 자의 체류	113

V. 난민신청자 등의 처우

1. 개 요	114
2. 난민신청자의 처우	116
3. 인도적체류자의 처우	130
4. 난민인정자의 처우	131
5. 난민처우협의회 구성·운영	139

VI. 벌칙 및 유엔난민기구와의 교류·협력

1. 난민법 상 벌칙	140
2. 유엔난민기구와의 교류·협력	141

VII. 행정사항

VIII. 붙임자료

143

1. 개 요

가. 목 적

- 이 지침은 난민인정신청서 접수, 난민인정 심사,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처우 및 체류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난민업무 처리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난민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목적으로 함

나. 근거 규정

- 난민법, 난민법 시행령, 난민법 시행규칙
-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 난민위원회 운영세칙,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 등

다. 용어의 정의

- "난민"이란 ①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②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③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
-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이하 "난민인정자"라 한다)이란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외국인
-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인도적체류자"라 한다)이란 난민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 또는 청장 등으로부터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

-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이하 "난민신청자"라 한다)이란 대한민국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①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
 - ※ 출입국항 난민신청자의 경우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가 결정된 날부터 난민법상 난민신청자 지위를 취득
 - ② 난민불인정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의 제기기간 또는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각결정을 받고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③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
- "재정착희망난민"이란 대한민국 밖에 있는 난민 중 대한민국에서 정착을 희망하는 외국인
 - ※ 재정착희망난민의 수용 여부와 규모 및 출신지역 등은 난민법 제24조에 따라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 무국적자를 포함하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복수국적자는 외국인이 아님

라. 강제송환의 금지

-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이하 "난민신청자등")는 난민협약 제33조 및 고문방지 협약 제3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거나 고문을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추방 또는 송환되지 아니 함
- 다만, 국가안보에 위협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중대한 범죄에 대한 최종적인 유죄판결이 내려져 국가공동체에 위협이 되는 난민신청자등에게는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 함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명령과 강제송환 금지 원칙은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며(강제퇴거 명령과 집행은 구분됨), 난민신청자가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을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난민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강제퇴거명령을 집행할 수 있음(출입국관리법 제62조 제4항 단서)

※ 난민인정 가능성, 범죄의 중대성과 강제송환으로 인한 결과 등을 비교 검토하여 강제퇴거 집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비례성 원칙)

*** 난민협약 제32조 (추방)**

1. 체약국은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이유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합법적으로 자국영역 내에 체재하고 있는 난민을 추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이러한 난민의 추방은 적법절차에 따라 내려진 결정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달리 국가안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난민은 자신이 추방될 이유가 없다는 결백함을 밝히는 증거를 제시하고, 또한 관할기관 또는 관할기관이 특별히 지명한 자에게 이의를 신청하고 이 목적을 위하여 대리인을 내세우는 것이 인정된다.
3. 체약국은 이러한 난민에게 다른 국가에의 합법적인 입국허가를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부여한다. 체약국은 그 기간 동안 필요하다고 보는 국내조치를 취할 권한을 유보한다.

*** 난민협약 제33조 (추방 및 송환의 금지)**

1.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그러나 이 규정에 의한 이익은 그가 있는 국가의 안보에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또는 특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최종적인 유죄판결이 내려지고 그 국가공동체에 대하여 위험한 존재가 되는 난민에 의하여는 요구될 수 없다.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3조**

1.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 받을 위협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위와 같이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당국은 가능한 경우 관련국가에서 현저하며 극악한 또는 대규모 인권침해 사례가 꾸준히 존재하여 왔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모든 관련 사항을 고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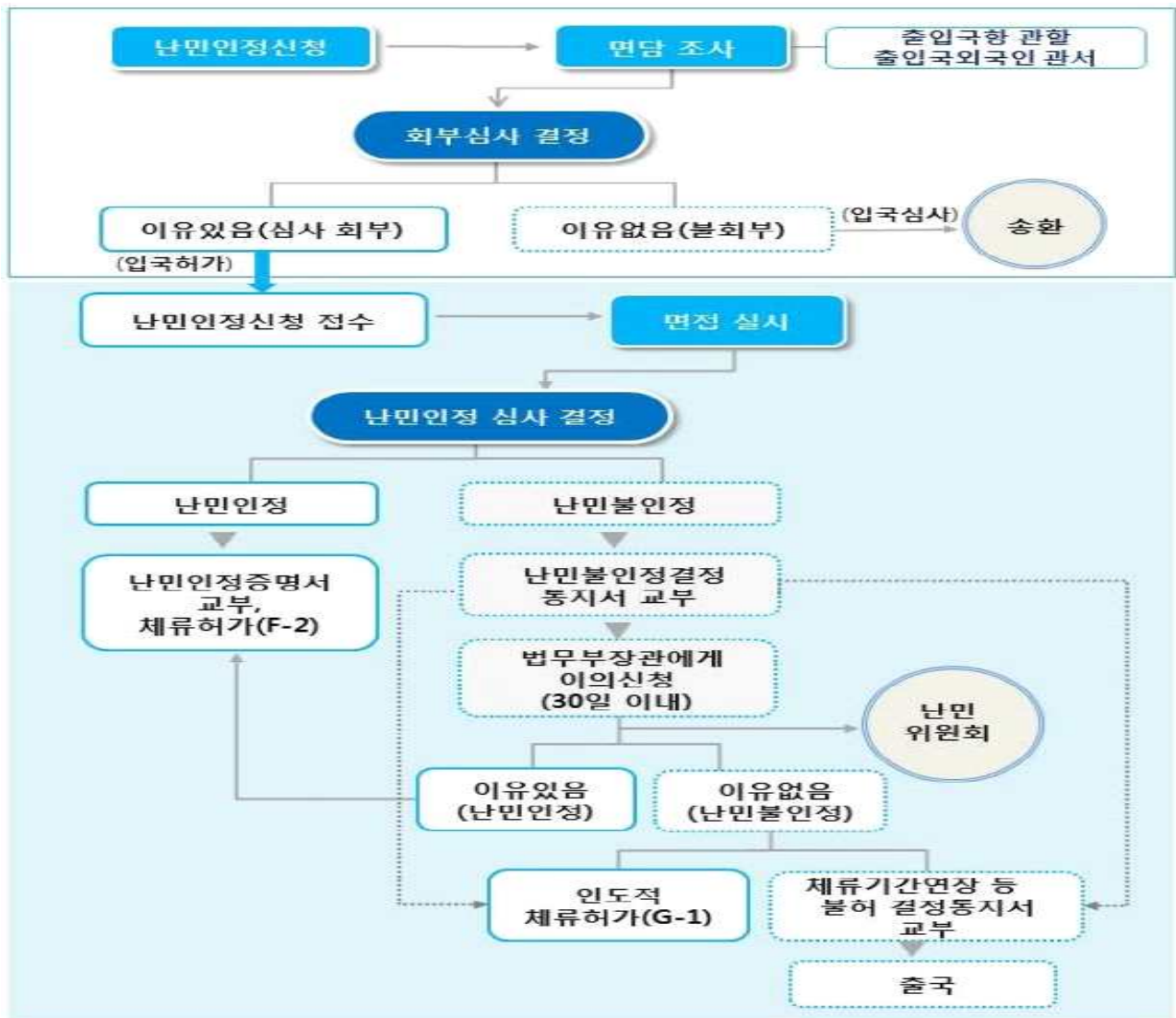
마. 다른 법률의 적용

- 난민신청자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하여 난민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출입국관리법」을 적용

- 각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권한이 있는 사항의 경우 인도적 사유의 유무 등 개별 판단*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
 - * (예) 질환·자녀부양 등 인도적 사유, 체재 중 국가정황 변동 등
 - ※ 동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출입국관리법령 및 해당 지침에 따름

2. 업무처리 절차도 및 안내자료 게시

가. 난민인정 신청 및 처리 절차도



나. 난민인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의 게시

- 청장 등은 '청 등 게시자료(붙임 5, 6, 7)'를 민원인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한글 및 영문으로 게시하여야 함
 - (출입국향) 입국재심 사무실, 난민신청자 대기실 등에 게시

- (체류지) 난민접수 창구에 게시

○ 청장 등은 난민신청 절차 및 난민신청자의 권리 등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가이드북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

※ 가이드북 내용은 법무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에도 게재

3. 관할구역

가. 난민인정신청서 접수

- 난민인정신청서 접수는 모든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가능
- 난민심사 거점기관 이외의 청 등에서 난민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난민심사 거점기관으로 이첩
- 등록외국인이 난민인정 신청 후 체류지를 변경한 경우
 - (면접 실시 전) 변경된 체류지 관할 난민심사 거점기관으로 이첩
 - (면접 실시 후) 면접을 실시한 난민심사 거점기관에서 심사·결정

나. 난민인정 심사·결정(거점청 등)

난민심사 거점기관 ¹⁾	소재지	관할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서울특별시	서울, 서울남부, 김포공항, 수원, 양주, 대전, 청주, 춘천 (출장소) 세종로, 도심공항, 서울역, 고양, 평택, 평택항, 천안, 서산, 당진, 동해, 속초, 고성 (보호소) 화성, 청주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인천광역시	인천 (출장소) 안산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부산광역시	부산, 김해공항, 울산, 창원 (출장소) 감천, 김해, 통영, 사천, 거제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대구광역시	대구 (출장소) 구미, 포항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광주광역시	광주, 전주 (출장소) 목포, 무안, 군산, 광양 (보호소) 여수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인천광역시	2014. 7. 1. 이후 회부 결정된 사람은 외국인등록을 한 체류지 관할 거점청 등에서 난민인정 심사 실시

1) 관련문서 : 출입국·외국인청 난민신청 제도 개선 및 심사보고서 양식 신설 알림(난민과 - 2707, 2014. 6. 26.), '14. 7. 1. 시행, 난민심사 거점사무소 신규 지정(대구사무소) 및 관할권 조정 지시(난민과 - 6448, 2015. 8. 27.), '15. 9. 1. 시행,

1. 개 요

가. 출입국향 회부/불회부 심사의 의의

- 출입국향에서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하 “출입국향 신청자”)에 대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입국심사에 앞서 정식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절차임

※ 난민법 제2조 제4호 가목은 난민신청자의 개념을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난민법 시행령 제5조제6항은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정된 사람에게 그 결정일에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부/불회부 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은 난민법상 난민신청자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음

나. 본인 신청의 원칙

- 난민인정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함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본인이 신청하거나 법정대리인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14조의2에 따라 특정후견인이 신청을 대리

다. 난민인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 게시(법 제7조)

- 청장 등은 출입국향에 난민인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고 접수방법 및 난민신청자의 권리 등 필요한 사항 게시
- 입국심사(재심) 과정에서 외국인이 난민신청 의사를 밝히면 지체 없이 난민업무담당자에게 인계

라. 변호인 접견

- 회부심사가 진행 중인 출입국향 난민신청자가 변호인 접견을

요청할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변호인 접견 허용

[변호인 접견 절차]

① 변호인 접견 신청(변호사) ⇒ ② 접견 접수(담당자) ⇒ ③ 변호인 신분 확인 및 접견실로 이동(담당자) ⇒ ④ 변호인 접견대장 작성(담당자) ⇒ ⑤ 접견 실시

※ 접견 장소는 공항만 청 등 여건에 따라 장소 활용

- ① 변호인 접견 신청은 변호인 접견 신청서(붙임 3)를 작성하여 변호인 선임서 및 변호사 신분증 사본을 팩스 또는 메일 등으로 청 등의 담당부서에 사전 제출
※ 공항만 내 보호구역 출입을 위한 임시출입증 발급 신청 절차 등이 필요함에 따라 사전에 관련 서류 제출 필요
- ② 접견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난민인정신청자에게 변호인 선임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함
- ③ 담당자는 변호사 신분증 확인 후 접견실로 안내(이동)
- ④ 담당자는 변호인 접견실에 비치된 변호인 접견 대장을 작성
- ⑤ 접견시간은 평일 09:00 ~ 18:00(12:00 ~ 13:00 제외) 사이에 실시, 다만, 청장 등이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무일에도 실시 가능

마. 유엔난민기구의 면담 참여

1) 유엔난민기구와의 협력

- 유엔난민기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난민인정신청 회부 심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신청자에 대한 면담 참여에 협조하고 그 결과를 본부에 보고

2) 난민인정신청 회부 신청자 면담 참여

- 유엔난민기구에서 난민인정신청 회부 신청자에 대하여 면담 참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관할 청장 등에게 요청하여야 함.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
※ 신청서 제출 등은 본 지침 변호인 접견 절차 준용
- 유엔난민기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청장 등은 회부심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청자에 대한 면담 참여에 협력
- 출입국항에 난민신청자대기실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대기실에서, 그 이외에는 난민심사대기실로 사용하는 곳으로 한정
- 유엔난민기구의 면담 참여는 본인의 희망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본인이 유엔난민기구의 면담 참여를 거부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기관 면담대장에 기록하고 본인 서명 징구

바. 위·변조여권 행사 또는 여권 미소지자 입국기록

○ 난민인정심사 회부자(입국)

⇒ 본인진술 또는 정황조사에 의해 밝혀진 인적사항으로 입국 기록 생성

※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 지침」 제11조제4항

④ 위명 또는 위·변조여권을 행사한 사람의 출입국심사기록 등은 행사한 여권상의 인적사항이 아닌 본인의 인적사항을 저장한다.

○ 난민인정심사 불회부자(입국불허)

⇒ 입국을 하지 못하므로 입국기록 생성 불요

2. 신청 접수

가. 신청 장소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8조에서 정하는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

나. 신청 시기

○ 외국인이 입국심사를 받는 때(법 제6조 제1항)

- 입국심사를 받는 때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입국심사를 시작한 때부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송환지시서를 발급하는 때까지를 말함

- 회부심사를 진행하는 동안 난민신청자대기실에서 머무르도록 함

※ 난민신청자대기실이 없는 공항만의 경우 그에 준하는 일정한 장소 제공

○ 송환지시서가 발급된 이후

- 송환지시서가 발급된 이후 난민신청 의사를 밝히면, 난민신청 안내를 받을 때 난민신청을 하지 않은 사유를 확인하고,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난민신청자대기실로 옮겨 회부심사 진행

- ※ 난민신청자대기실이 없는 공항만의 경우 그에 준하는 일정한 장소 제공
- ※ 입국재심 초기에 난민신청에 대한 사항이 포함된 질문서*를 제공하고 작성하도록 안내
 - * 외국인 재심처리 절차 및 입국불허 기준 관련 지침 개정 및 시행, 별지 7 양식(출입국심사과-21414, 2017.06.23.)
- ※ 난민법 및 난민협약 상 난민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오로지 경제적인 목적으로 난민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면 간이하게 면담 등을 실시한 후 불회부 결정

다. 신청 방법

-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난민인정 신청서 제출
- 난민인정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함(법 제5조 제3항)
- 신청자가 글을 쓸 줄 모르거나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접수하는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자와 함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함 (법 제5조 제3항)
 - ※ 청각장애인 또는 언어장애인의 경우 통역인을 통해 문자로 묻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음
-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난민인정 신청에 관하여 문의하거나 신청 의사를 밝히는 외국인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야 함(법 제5조 제4항)

라. 제출(제시) 서류

- 난민인정신청서(붙임 25 난민인정신청서)
 - ※ 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난민인정신청서' 양식 14-1번 문항 난민신청 사유에 '가족결합', '기타'를 추가한 붙임 25 양식 이용
- 여권(여권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 ※ 위·변조여권의 경우 입수경위 및 사용 이유 등을 사유서에 상세하게 기재
-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제시)
- 난민인정 심사에 참고할 문서 등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
 - ※ 체포영장, 법원판결문, 신문기사 등 박해 입증 서류와 난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진, 영상물 등

주의사항

참고문서 등 신청자가 제시한 서류는 복사한 후 사본에 원본대조필 확인인을 날인한 후 원본은 본인에게 반환. 단, 신청자가 원본 제출에 동의하면 원본자료를 보관

○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3.5cm × 4.5cm) 1장

※ 사진이 없는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디지털카메라로 촬영

마. 여권 미소지 또는 위·변조 여권 소지자

○ 원칙

- 위·변조 여권을 소지하거나 여권이 없는 사람이 인적사항 관련 질문 등에 응하지 아니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회부 결정 후 송환

○ 위변조 판단 방법

- 인천공항 감식과에 감식 의뢰하여 위변조 여부 판단

○ 회부할 경우

-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위변조 적발처리 및 사범심사 결정
- 위변조여권 인적사항은 「입국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처리

※ 필요 시 주거지를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로 정하여 조건부 입국허가, 회부 결정된 사람이 난민법 제20조(신원확인을 위한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원확인을 위한 보호

- 난민법 제20조에 따라 신원확인을 위하여 보호된 사람의 신원이 확인되면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즉시 보호를 해제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원확인이 지체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0일의 범위에서 보호기간 연장

※ 난민법 제20조에 따른 신원확인을 위한 보호기간 종료 시 출입국관리법 제51조에서 정한 보호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고, 보호 요건을 충족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보호로 전환

○ 불회부할 경우

- 위변조 여권 소지자에 대한 입국불허 절차에 따라 처리

바. 허위난민 신청 정보 수집 시 조치사항

○ 허위난민 신청 정보를 입수한 때에는 관련 내용을 “ICRM- 조사-정첩보입력” 및 “ICRM- 난민-난민회부신청-참고사항”에 입력하여 조사 및 난민심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

사. 재송환된 외국인의 난민인정 신청 시 처리방법

- 강제퇴거명령 집행 후 재송환된 경우
 - 강제퇴거명령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재송환을 위한 대기자로서, 입국심사의 대상이 아니므로 난민인정 신청 불가
- 입국거부 후 재송환된 경우
 - 입국거부 처분이 종료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인 자로, 입국심사의 대상이 아니므로 난민인정 신청 불가

3. 회부/불회부 결정

가. 결정권자

- 출입국향을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 ※ 출입국향 난민신청을 접수한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회부/불회부 결정을 하고, 면담과정 녹음·녹화 실시(녹음·녹화 관련사항은 본 지침 “대한민국 안에서의 난민신청 및 심사절차”에 정한 면접 내용의 녹음·녹화 절차 준용)

나. 결정 기한

- 난민인정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
 - ※ 기간을 계산할 때 초일은 산입하지 않음
- 7일 이내에 결정하지 못하면 신청자의 입국을 허가하여야 함
 - ※ 7일 이내에 결정하지 못하여 입국을 허가한 경우 신청자에게 체류지 청 등에서 다시 난민신청 하여야함을 안내

다. 회부 결정의 효력

- 난민인정 심사 회부 결정일에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
 - ※ 출입국향 신청자가 난민인정 심사 회부 결정을 받고 입국을 하면 별도로 난민신청을 할 필요가 없음

라. 불회부 사유(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각호 해당 여부 판단)

- 1)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테러 혐의로 입국이 규제된 자

-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자
 -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 또는 불법 취업으로 강제퇴거 명령 또는 출국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2) 인적사항 관련 질문 등에 응하지 아니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여권 등 신분증을 고의로 파기·멸실하거나, 브로커 등에게 제공한 자
 - 국적,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및 선박 등의 탑승수속 시 사용한 여권의 국적, 성명 및 탑승지, 여행경로 등에 관한 질문에 거짓된 진술로 일관하거나, 박해 관련 사항에 관하여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진술을 거부하는 등 출입국관리공무원 및 난민심사관의 신원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 ※ 신분 은폐를 위해 선박 등에 탑승 시 사용한 여권 등을 고의로 파기·멸실시킨 경우에는 불회부
- 3)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다만, 입국심사 과정에서 지체 없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밝힌 경우는 제외
- 거짓으로 난민신청을 하기 위하여 위조여권을 사용한 자
 - ※ 난민인정 신청을 하기 위하여 자국 탈출 수단으로 위조여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스스로 진술한 경우 등은 제외
 - 난민인정 신청 사유 등에 관하여 거짓된 진술로 일관하는 자
- 4)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 박해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제3국에서 체류하다가 온 사람
 - ※ '안전한 국가란 난민법상 난민인정 신청사유로 인한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국가'라 할 수 있으며, 안전한 국가 출신이라 함은 난민인정신청자의 국적 또는 시민권이 속한 국가가 이러한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인 경우임
 -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란 안전한 국가의 국적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안전한 국가를 거쳐 우리나라에 오는 경우'를 말함
 - ※ 난민신청자가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이미 그 '안전한 국가'에서 난민인정 신청을 할 기회가 있었다면 불회부

- '그 안전한 국가에서 난민인정 신청을 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는지, 그 국가에서 난민인정 신청을 하지 않은 타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 안전한 국가에서 직접 또는 안전한 제3국에 체류하다가 온 경우에도 그 국가에서 난민신청을 하지 않은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 5) 과거 우리나라에서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 6) 난민법 제19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유엔난민기구 외에 유엔의 다른 기구 또는 기관으로부터 보호 또는 원조를 현재 받고 있는 경우. 다만, 그러한 보호 또는 원조를 현재 받고 있는 사람의 지위가 국제연합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관련 결의문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결됨이 없이 그러한 보호 또는 원조의 부여가 어떠한 이유로 중지되는 경우는 제외

- 국제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하는 세계평화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 또는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대한민국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7) 그 밖에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 난민신청 사유가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 사인간의 채무관계 또는 자연재해 등 난민법에 따른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등 5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신청자 진술의 중요 부분에 모순이 있거나 객관적인 사실과 명백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중요 부분'은 난민에 해당하는 원인 사실, 즉 박해와 관련된 진술을 말하며, 박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실에 대한 진술은 제외

- 입국이 불허되어 강제송환을 면할 의도로 신청한 경우

4. 회부/불회부 결정 후속조치

가. 회부 결정 시 조치사항

1) 결과 통지, 접수증 교부 및 외국인등록 안내

-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난민인정신청 접수증 교부

-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 위치 등을 설명하고,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 및 외국인등록 시 신체검사서를 제출하도록 철저히 안내(입국신고서상 체류예정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위치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

※ 관련 문서 : 난민과-4842(2017. 3. 3.), 출입국항 회부자에 대한 난민인정심사 관련 업무 지시

2) 입국심사

-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정된 경우 지체 없이 출입국관리 법령에 따라 입국심사

※ 사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소지하고 있는 사증으로 입국심사를 하고, 사증이 없는 경우 일반외국인 입국심사 절차에 따라 처리

3) 조건부 입국허가

- 대상

- 여권 미소지, 위·변조여권 소지, 그 외 청장 등이 조건부 입국을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기간

- 90일의 범위에서 허가기간을 정하고 허가기간 내에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조건을 갖추지 못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허가기간 연장 가능

○ 조건

- 주거의 제한, 출석요구에 따를 의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조건부입국허가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23호 서식)를
발급하고, 조건부입국허가서 발급대장에 기재
 - ※ 난민은 자국 대사관 등을 통해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없으므로 여권 발급을
조건으로 조건부 입국을 허가하는 것은 부적절
 - ※ 필요 시 법무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난민지원시설(출입국·외국인
지원센터 등)로 주거 제한

4) 결과 보고/통보

- 청장 등은 조사보고서(심사보고서), 면접조서 등을 첨부하여 회부
심사 결과 본부 보고 및 체류지 관할 난민심사 거점기관 통보
 - ※ 수시로 외국인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90일 이내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으면
입국신고서 상 국내 체류지 관할 난민심사 거점기관으로 통보

5) 시스템(ICRM) 입력

- 조사보고서, 면담조서, 심사보고서, 기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일체를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

나. 불회부 결정 시 조치사항

1) 불회부결정통지서 교부 및 재심실 연계

- 난민업무 담당자는 난민불회부결정통지서(붙임 1)에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각호 중에서 해당되는 사유를 표시하여
신청자에게 교부
 - ※ 불회부결정통지서 교부 시 통역(전화통역 가능)을 통해 불회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교부과정 녹음·녹화 실시

- 난민불회부결정통지서 교부 후 입국재심으로 인계하여 입국심사 절차 진행

2) 결과 보고 및 시스템(ICRM) 입력

- 청장 등은 조사보고서(심사보고서), 면담조서 등을 첨부하여 불회부 심사 결과를 본부에 보고
- 조사보고서(심사보고서), 면담조서, 신청인 제출 서류 일체를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

3) 입국심사

- 입국재심업무 담당자는 불회부 결정된 사람에 대해 지체 없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허가 여부 결정
 - ※ 불회부 결정된 사람을 소지하고 있는 사증 등에 따라 입국허가 할 때에는 사전에 본부(난민정책과, 출입국심사과) 협의
- 입국불허 결정을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일 항공편으로 신속하게 송환 절차 진행
 - ※ 입국불허통지서 교부, 해당 항공사에 송환지시서 발급

일반 입국불허자가 송환지시서 발급 이후 송환 대기 중 난민신청 의사를 밝힐 경우, 난민신청자대기실로 옮겨 회부/불회부 심사 진행

다. 회부 결정된 사람에 대한 난민인정 심사 절차

1) 회부 결정으로 입국한 경우

- 회부가 결정된 사람은 그 결정일부터 난민법상 ‘난민신청자’의 지위가 인정되고 “대한민국 안에서의 난민신청 및 심사절차”에 따라 난민인정 심사 진행
- 회부 결정일에 회부를 결정한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난민인정 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별도의 난민인정 신청 불요

※ 회부가 결정된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 시 신체검사서를 제출할 것을 안내

- (회부결정 청 등) 회부를 결정한 담당자는 수시로 회부된 자의 외국인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외국인등록이 확인되면 난민인정 신청서, 면담조서, 난민회부심사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난민신청자의 체류지 관할 거점청장 등에게 송부하고 해당 난민신청 건 이첩
 - 입국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도록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난민인정신청서 또는 입국신고서 상 국내 체류지를 관할하는 난민심사 거점기관에 난민인정신청서, 면담조서, 난민회부심사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송부하고 해당 난민신청 건 이첩
- (난민심사 거점기관) 신청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면접이 불가할 경우 출석요구 절차를 거쳐 심사 종료
 - 체류지가 변경되면 신체류지 관할 난민심사 거점기관으로 이첩

2) 7일 이내에 회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여 입국한 경우

- 입국 후 별도의 난민인정 신청을 하여야 함을 안내

5. 불회부결정 취소소송 제기자 처리

가. 일반원칙(소송 제기 시)

- 성별, 연령, 건강상태 및 청 등 사정을 고려하여 출국대기실, 환승구역 등에 대기하도록 안내하고,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 진행 요청

나. 소송 진행 중 조치사항

- 하급심에서 국가 승소, 원고가 항소하는 경우
 - 성별, 연령, 건강상태 및 청 등 사정을 고려하여 출국대기실, 환승구역 등에 대기하도록 안내하고,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 진행 요청
- 하급심에서 국가 패소, 국가가 항소하는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난민인정불회부결정 취소소송 원고 승소 확정'을 조건으로 입국허가(조건부 입국허가)

- ※ 국가승소가 확정되면 조건부 입국허가 기간 연장 불허하고 출국 안내, 국가패소가 확정되면 난민인정심사 회부결정 하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심사
- ※ 불회부결정 취소 소송 확정 전 체류지에서 난민신청을 시도하면 강제 퇴거명령·보호조치 됨을 고지. 그럼에도 난민신청 하면 난민신청서를 접수하고 조건부 입국허가 조건 위반으로 보호조치 후 난민심사 진행

다. 소송 확정 시 조치사항

1) 국가승소

- 본인 설득, 필요 시 항공사·변호인·UNHCR 등과 협의하여 자발적 출국 유도, 송환 거부 시 강제퇴거 명령 및 보호조치
 - ※ 유아동반 등 인도적 고려 필요시 강제퇴거명령은 하되 보호조치(보호 명령) 없이 항공사에 적극적인 송환집행(항공보안요원 동반 등) 지시

2) 국가패소

- 난민인정심사 회부결정 하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심사

6. 난민임시상륙허가(출입국관리법 제16조의2)

가. 허가권자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나. 허가 대상

-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
 - ※ 난민임시상륙허가는 선박을 이용한 대량 난민이 한국을 임시 경유지로 활용할 때 의미 있는 제도임

다. 제출서류

- 난민임시상륙허가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의3 서식)
- 소명자료(신청인 자격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것)
- 얼굴사진(3.5cm×4.5cm) 1장
 - 사진이 없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디지털카메라로 촬영

라. 허가 요건

- 난민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이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이유로 그 생명·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에서 도피하여 곧바로 대한민국에 비호를 신청

마. 허가 기간

- 90일의 범위에서 상륙허가
- 허가기간 내에 출국할 수 없어 상륙허가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90일의 범위에서 허가기간 연장(연장횟수는 제한 없음)

바. 허가 절차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난민 임시상륙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난민임시상륙허가 승인 여부 결정
- 법무부장관이 난민임시상륙허가를 승인하면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난민임시상륙허가서를 발급하고, 난민보호소 기타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거소 지정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난민임시상륙허가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난민임시상륙허가서 발급대장에 기재

7. 출입국항 면담조서 등 정보공개 및 열람·복사

- ☞ 관련 문서 : 난민과-527(2019. 1. 22.), 출입국항 난민신청자 면담조서 등 정보공개 및 열람·복사 기준 시달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정보공개포털, www.open.go.kr)를 할 경우 정보공개 여부

가. 회부 결정된 사람

1) 출입국항 면담조서

- 청구적격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에 해당해야 함

*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면담조서는 조사보고서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난민법」 제16조(자료 등의 열람·복사)에서 정한 난민면접조서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체류지 면접심사 완료 여부와 상관없이 「난민법」 제16조에 따른 열람·복사를 허용해선 아니 됨

○ **제공시기 : 외국인 등록 및 체류지 면접 종료 후 제공**

- 체류지 난민심사 면접 종료 전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에 따르면, 회부결정을 받은 경우 난민인정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난민인정접수증을 교부하고 체류지 난민신청자와 동일한 난민인정심사절차(면접 등)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회부심사는 체류지 난민인정심사절차의 일부에 해당 따라서, 체류지에서 면접 종료 전까지는 난민인정심사가 계속 진행(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중으로 볼 수 있음
또한, 면접 기법 등이 외부에 노출되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난민심사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2) **녹음·녹화 자료**

○ **청구적격 :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 해당해야 함**

*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제공시기 및 제공방법 : 외국인 등록 및 체류지 면접 종료 후 열람만 허용**

- 체류지 난민심사 면접 종료 전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

※ 비공개 논거는 '출입국향 면담조서' 비공개 논거와 동일

- 체류지 난민심사 면접 종료 후 : 지정장소에서 열람만 허용

※ 난민신청자, 통역인 및 난민면접담당자의 얼굴·음성 등 신체정보가 SNS를 통해 유출·공개되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수 있으며, '체재 중 난민' 사유 발생 등 부작용 발생 우려

- 열람 시 휴대전화 등 별도 전자기기를 통한 재녹음·재녹화는 허용되지 않음을 안내하고, 재녹음·재녹화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열람절차를 중단하고 해당 파일은 즉시 삭제토록 조치
- 열람 시 동석 허용범위 및 제한기준은 면담 시 허용범위 및 제한기준을 준용

3) 본인 제출 자료(신청서 등)

○ 제공시기

- 「정보공개법」에 따라 요청한 경우 : 외국인등록 후 제공(체류지 면접 실시 여부와 무관)
- 「난민법」 제16조(자료 등의 열람·복사)에 따라 요청한 경우 : 회부결정일 이후에는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 면접 실시 여부와 무관하게 제공
 - ※ 난민인정 심사 회부결정된 사람은 그 결정일에 난민신청자 신분을 획득하므로(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난민법 제16조에 따른 열람·복사 청구권 발생**. 따라서, 회부결정된 사람이 난민법 제16조에 따라 본인이 제출한 자료(신청서 등)를 요청할 경우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 면접 실시 여부와 상관없이 열람·복사 허용

나. 불회부 결정된 사람

1) 환송구역에 있는 사람

-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은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이므로 불회부 결정 후 환송구역에 있는 사람은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적격이 없음
- 불회부 결정 후 환송구역에 있는 사람은 「난민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하는 난민신청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난민법 제16조에 따른 열람·복사 청구권이 없음

2) 불회부 결정을 받았지만 입국한 사람

-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 ‘회부결정을 받은 출입국향 난민신청자’에 준하여 처리
 - ※ 불회부 결정을 받은 사람은 난민신청자가 아니므로 난민법 제16조에 따른 열람·복사 청구권은 없음

다. 법원 등 관계기관이 자료제출을 요청할 경우

- 관련규정에 따라 자료제공

1. 접수

가. 신청 자격

-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불법체류자, 밀입국자 포함)
- 출입국항 난민인정 신청자 중 그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난민인정 심사에 대한 회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여 입국을 허가 받은 외국인
 - ※ 출입국항에서 회부 결정을 받고 입국한 외국인은 난민법시행령 제5조 제6항에 따라 회부 결정일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별도의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 난민임시상륙허가를 받은 외국인
- 출입국항 회부심사 결과 불회부결정을 받은 외국인은 긴급상륙허가 또는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더라도 난민인정신청 대상이 아님

나. 신청 시기

-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언제든지 난민인정 신청 가능
 - ※ 합법체류 여부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고, 보호 중에도 신청 가능

다. 신청 장소

-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

라. 신청 방법

- (원칙) 본인이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신청
- 신청자가 글을 쓸 줄 모르거나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접수하는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자와 함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함
 - ※ 청각장애인 또는 언어장애인의 경우 통역인을 통해 문자로 묻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음
-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난민인정 신청에 관하여 문의하거나 신청의사를 밝히는 외국인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야 함

○ 변호사, 통역인의 조력

- 신청서 작성을 조력하기 위해 변호사, 통역인 등 동반 가능

○ 접수 시 부모 등 보호자, 법률상 대리인, 통역인 등의 동반을
접수요건으로 요구하지 않도록 유의

마. 접수 시 확인사항

○ 기재사항 등 확인

- 접수 담당 공무원은 난민인정신청서, 여권 등 신청 서류를 제출 받아 인적사항, 박해사유 등 기재사항을 충실히 기재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난민인정신청서 접수

※ 미성년자의 경우 신청서 상 부모와 동일한 사유(가족결합)라고 기재하였더라도 다른 박해사유가 있는지 확인한 후 난민인정신청서를 접수하고, 독자적 박해사유 유무 확인 후 난민신청서 표지에 “독자적 난민사유 있음” 또는 “독자적 난민사유 없음” 등 기재

※ 난민법상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명백히 난민인정 제한 사유에 해당 또는 난민인정신청서 작성이 부실하더라도 접수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난민신청 접수 시 ICRM ‘신청사유 요약’란에 입력을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

- 난민인정신청서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외 언어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번역본 첨부

※ 한국어 또는 영어 외 언어로 난민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한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된 번역본을 첨부하도록 안내

※ 난민신청자가 번역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접수기관은 통역 예산 및 통역인 수급 사정을 고려하여 난민신청서상 박해 관련 부분 번역·첨부

○ 본인 직접 신청 원칙

- 난민인정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난민인정 신청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난민인정 신청을 하려는 자가 신청서의 기재 내용을 이해하고 서명하였음을 자필로 쓰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경우에는 타인의 대필 또는 컴퓨터 출력물 인정

○ 예외적 대리 신청 허용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본인이 신청하거나 법정대리인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14조의2에 따라 특정후견인이 신청을 대리

※ 민법상 성년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 신청은 허용되지 않음

○ 문맹 또는 장애가 있는 경우의 난민신청 접수

- 글을 쓸 줄 모르거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접수하는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자와 함께 서명 또는 기명 날인

※ 청각장애인 또는 언어장애인의 경우 통역인을 통해 문자로 묻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음

※ 접수담당 공무원은 신청서 작성 또는 난민인정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신청자의 진술 녹음 가능

○ ‘사정변경 없는 재신청자 등’ 유형 해당여부 확인

- ‘사정변경 없는 재신청자 등’유형에 해당하는 난민신청을 접수하면 즉시 외국인등록화면 참고사항에 「사정변경 없는 재신청자 등-체류기간연장 불허 안내」내용을 입력

<‘사정변경 없는 재신청자 등’ 유형>

- ①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

- ②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난민법 제22조에 따라 난민 인정이 취소된 후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을 신청한 경우

- ③ 대한민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 또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이 그 집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

- ④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아 난민인정 심사가 종료된 후 다시 신청하는 경우

※ 다만, 출석요구에 응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을 객관적으로 입증(병원 입원확인서 제출 등)하는 경우 제외

- ⑤ 명백히 난민협약 상 난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재신청하는 경우(사인간의 재산분쟁, 채권자의 위협, 범죄단체의 위협 등)
- ⑥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통지를 받은 사람·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사람·출국권고 또는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이 난민 신청하는 경우

○ 3회 이상 신청자

- 체류기간(출국기한)이 남아 있는 사람이 중대한 사정변경 없이 3회 이상 신청하는 경우 체류자격 부여(자격변경 등) 및 취업이 불가함에 대하여 설명하고 자진하여 출국하도록 안내
- 난민인정 신청을 하면 접수 당일 사정변경 관련 사항에 대하여 간이하게 면접 실시 후 불인정결정(당일 면접이 어려울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면접일자를 지정하고 출석요구서 발부)

○ 허위난민 신청 정보 수집 시 조치사항

- 허위난민 신청 정보를 입수한 때에는 관련 내용을 “ICRM- 조사-정첩보입력” 및 “ICRM- 난민-난민인정신청/인정-참고사항”에 입력하여 조사 및 난민심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

○ 출생월일 불분명 난민신청자의 출생월일 부여 방법

- (원칙) 본인진술에 따라 출생월일 부여
⇒ 본인이 진술한 출생월일 또는 희망하는 출생월일 부여
- (예외) 본인 진술이나 희망하는 월일이 없는 경우 난민신청자 동의를 받아 '0000' 부여

※ 담당공무원이 '0101' 등 임의로 출생월일을 부여할 경우 민원을 야기할 수 있음

○ 난민신청사유 입력 기준

- (판단순서) ①인종·국적·정치적 의견 해당여부 먼저 판단 → ② 종교사유 해당여부 판단 → ③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특정사회집단으로 입력
- (신청사유가 복수인 경우) 난민신청자가 기재한 사유를 입력하되, 신청자도 복수로 기재한 경우에는 내용상 주된 신청사유로 입력
 - ※ 다만 심사보고서 작성 시에는 모든 난민신청사유 기재
- (종교사유 해당여부) 종교의 자유 보호 취지를 고려하여 소규모 인원이 사적으로, 체계적 교리 없이 정기적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본인이 종교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종교사유로 입력
 - ※ 우리나라 헌법상으로도 종교의 자유는 매우 폭넓게 보장되며, '종교'에 대한 판단기준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
- (특정 종교로부터의 박해) 국가·정부와 무관한 특정 종교 세력이 가입·활동을 강요한다는 등의 사유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타' 사유로 입력
 - ※ 사인 간 박해로서 출신국 정부에 보호를 요청할 사안임
 - ※ 해당 종교가 국교인 등 그 종교세력과 국가를 구분해서 보기 어려운 경우(예-이슬람 / 반대사례-전능신교)에는 '종교' 사유로 입력
- (특정종교로 오인되어 박해) 개인 신앙과 무관한 특정종교인으로 오인되어 국가로부터 박해를 받는 경우, 종교의 자유 침해로 인한 것이므로 '종교'로 입력
 - ※ 다만, 심사 시에는 국가에 해명하여 박해를 피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
- (입력내용 점검) 각 거점기관은 신청건을 이첩받은 후 입력내용 재점검

바. 가족결합 난민신청 접수 시 조치사항

난민심사 거점기관이 아닌 곳에서 가족결합 난민신청을 접수할 때에는 아래와 같이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할 난민심사 거점기관과 긴밀히 협력

1) 주신청자 면접 이전 가족결합 난민신청

- 난민신청 접수단계에서 주신청자를 파악하여 주신청자와 함께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2) 주신청자 면접 완료 이후 1차 심사결정 이전 가족결합 난민신청

- 난민신청 접수단계에서 주신청자를 파악하여 주신청자와 함께 심사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면접이 필요한 경우 접수 당일 면접일자 지정)

3) 주신청자의 이의신청 후 가족결합 난민신청

- 난민신청 접수단계에서 주신청자를 파악하고, 면접이 필요한 경우 접수당일 면접일자 지정 등 신속하게 심사절차 진행
 - ※ 소속과장과 본부 이의신청 담당자(난민위원회 총괄계장)에게 가족결합 사유 난민신청 접수 사실을 법무샘 메모보고
- 가족결합 사유 난민신청자가 이의신청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신청자와 함께 이의신청 심의 진행

사. 제출(제시) 서류

① 난민인정신청서(붙임 25 난민인정신청서)

- ※ 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난민인정신청서' 양식 14-1번 문항 난민신청 사유에 '가족결합', '기타'를 추가한 붙임 25 양식 이용

② 여권

- ☞ 여권은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4호의 여권을 말하며, 여권이 없거나 위·변조여권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 ※ 위·변조여권의 입수경위 및 사용이유 등을 사유서에 상세하게 기재

③ 외국인등록증

- ☞ 외국인등록증은 난민인정 신청을 하려는 자가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제시

④ 난민인정 심사에 참고할 문서 등

- ☞ 스스로 난민임을 입증하는 체포영장, 법원판결문, 신문기사 등 박해 입증 서류와 기타 난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서류,

사진, 영상물 제출 또는 제시

- ※ 난민신청자가 위 입증서류를 제시한 경우에는 원본을 복사하여 사본에 원본대조필 확인인 날인 후 원본은 반환하고 사본 보관. 단, 신청자가 원본 제출에 동의하면 원본 자료를 보관

⑤ 사진 1장

- ☞ 사진이 없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디지털카메라로 촬영
 - ※ 사진의 규격 등은 체류관리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름

⑥ 신체검사서

- 난민법 제42조에 따른 의료지원의 일환으로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체검사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신체검사서 제출은 의무사항이 아님
- 다만, 출입국관리법령 및 관련 지침에 따른 신체검사서 제출 대상은 정해진 건강검진 항목(결핵 등)이 포함된 신체검사서를 제출하도록 안내

- ☞ 보건소, 복십자의원, 한국건강관리협회 및 법무부 지정병원에서 발행한 결핵, 매독 및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검사결과 포함
 - ※ 난민신청 시 제출하지 못한 경우 외국인등록(체류기간 연장, 자격 부여 등) 할 때 원본을 제출하도록 함(난민신청 접수자에게도 사본 제출)
 - ※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 심사 회부 결정을 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외국인등록 시 체류지 관할 청 등에 신체검사서를 제출하도록 안내
- ☞ 청장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체검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기타 단체 등으로부터 무료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 신체검사서 내용 중 결핵, 매독 및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양성 반응일 경우 출입국관리시스템 참고사항에 등재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
 - ※ 결핵감염자 및 의심자 처리 등 난민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체류관리지침 적용

⑦ 기타 서류

- 배우자 또는 자녀를 동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난민입시상륙허가서 또는 조건부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 입국한 경우 그 허가서

아. 난민신청 접수 시 조치사항

- 1) 난민신청자 취업안내문(붙임 18) 교부
 - 난민신청 접수 시 난민신청자의 취업절차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난민신청자에게 교부
- 2) 체류허가 절차 안내 '확인서'(붙임 29) 징구
 - 난민신청 후 합법적으로 국내 체류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확인서를 제출받은 후 ICRM에 스캔
 - ※ 보호 중 난민신청자는 제외

자. 접수증 교부

- 난민인정 신청을 접수한 청장 등은 난민신청을 받은 경우 즉시 신청자에게 난민인정 신청 접수증 교부(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 난민인정 신청 접수증을 교부받은 외국인은 그때부터 난민신청자로서 지위 인정

차. 난민인정신청서 등의 이첩 및 심사 관할

1) 등록외국인(합법체류자)

- 난민심사 거점기관이 아닌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난민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체류지 관할 난민심사 거점기관으로 이첩
 - 난민인정신청서, 난민회부심사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난민신청자의 체류지 관할 난민심사 거점기관에 송부하고 해당 난민신청 건 이첩
 - 반드시 출입국관리시스템(ICRM)에 이미지 등록 후 난민인정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난민심사 거점기관으로 이첩
 - 이첩하는 기관은 공문 시행 후 출입국관리시스템(ICRM)에 반드시 이첩 관련 사항 입력(통계 등 관리 필요)
- 등록외국인이 체류지 관할 청 등이 아닌 청 등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하는 경우

-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난민 신청하도록 안내
- 다만, 난민인정을 신청을 원하는 외국인의 체류지가 당해 청 등의 지역으로 이사를 한 경우에는 체류지변경 후 난민인정신청서 접수
- 등록외국인이 난민인정 신청 후 체류지를 변경하는 경우
 - 면접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된 체류지 관할 난민심사 거점기관으로 난민인정 신청 건 이첩
 - 면접을 실시한 경우에는 면접을 실시한 난민심사 거점기관에서 계속하여 심사 진행

2) 단기사증 소지자 및 불법체류 외국인

- 모든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청서 접수, 관할 난민심사 거점기관에서 난민심사 진행
- 난민인정신청서를 접수한 청 등이 난민심사 거점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청 등을 관할하는 난민심사 거점기관으로 이첩

3)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되어 있는 난민신청자에 대한 심사 관할

○ 보호된 후 난민신청자

- 보호소에 보호된 후 난민신청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호소에서 난민인정신청서를 접수하여 해당 청 등을 관할하는 난민심사 거점기관에서 난민인정심사 절차 진행

※ 5대 박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대한민국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행위*(면접과정에서 본인의 진술 등에 따라 범죄를 저질렀다고 추정되는 경우 포함)에 따른 박해 사유로 난민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강제퇴거 명령 및 집행**(적용법조: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 3호 및 4호, 제46조 제1항 3호, 제62조 제4항)

- 강제퇴거 명령 집행정지 소송 제기자에 한해 집행정지하고, 소송 결과에 따라 퇴거집행 여부 결정

○ 난민신청 후 보호된 자

- 면접을 실시한 경우에는 면접을 실시한 기관에서 난민심사 진행
- 면접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보호소 관할 거점기관에서 난민심사 진행

○ 특별 보호해제, 보호 일시해제 된 자 등

- 면접을 실시한 경우 면접을 실시한 거점기관이 난민심사 진행
※ 질병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능한 한 보호해제 전에 면접 진행
- 면접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보호일시해제를 결정한 청 등을 관할하는 난민심사 거점기관에서 난민심사 진행
※ 보호(특별일시) 해제 시 난민심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 난민심사 거점기관에 통보
- 난민심사는 보호일시해제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하되, 보호일시해제가 취소되는 경우 보호상태에서 난민심사 진행

2. 면접

가. 면접

1) 면접 준비

가) 난민인정신청서 검토 및 질문서 작성

- 난민인정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검토하고, 관련 국가정황 조사
- 주장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한 면접조서 예상 질문 작성
- 난민신청자의 사용언어, 신청사유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통역인을 선정하되, 난민신청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성 난민전문통역인 선정
※ 통역인은 난민전문통역인 중에서 선정하고, 해당 언어의 난민전문통역인이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난민전문통역인 중에 선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통역인 선정(「난민전문통역인 등 운영지침」에 따라 처리)

- 난민신청자, 통역인 등과 협의하여 면접일시 확정

나) 출석 요구

- ☞ 출석요구서를 발급하기 전에 반드시 **출국 여부 확인**

○ 1차 출석요구서 발급

- 난민전담공무원은 난민신청자에 대한 난민면접 일정을 정하고 난민신청자와 면접 일정 조정 후 면접 일정에 따라 출석요구의

취지,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출석요구서(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발급

○ 2차 출석요구서 발급

- 1차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출석하지 않은 난민신청자에 대해서는 새로이 면접일정을 정하여 출석요구서 발급하되, 1차 면접 지정일로부터 1개월 범위 내에서 2차 면접일 지정

○ 3차 출석요구서 발급

- 2차 출석요구에 무단으로 불응하여 출석하지 않은 난민신청자에 대해서는 새로이 면접일정을 정하여 3차 출석요구서 발급하되, 2차 면접 지정일로부터 1개월 범위 내에서 3차 면접일 지정

○ 출석요구서 공시송달 (불입 28 출석요구서 공시송달문)

- 3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난민신청자에 대해서는 새로이 면접일시를 정하여 출석요구서를 공시 송달하되, 3차 면접 지정일로부터 1개월 범위 내에서 면접일 지정

※ 게시의 범위는 난민신청 접수번호, 접수일, 체류지 등으로 한정하여 난민법 제17조 인적사항 등의 공개 금지에 위반되지 않도록 할 것

○ 출석요구 불응에 대한 심사 종료

- 3차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난민심사관은 난민인정 신청 직권 종료 절차에 따라 난민인정심사 종료

※ 연속하여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로 중간에 출석에 응한 경우에는 그 이후부터 새로 출석요구 횟수 계산

○ 출석요구서 발급대장 관리 등

- 난민심사관 등이 출석요구서를 발급한 때에는 출석요구 대장 (난민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기록
-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출석이 불가능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접일정 연기 또는 난민심사관의 출장 면접 실시 등 고려

- 긴급을 요하여 출석요구서를 발급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전화 등 구두의 방법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 긴급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구두의 방법으로 출석을 요구하거나, 난민인정 신청 시 면접예정일시를 서면으로 교부한 경우도 난민법 제8조제6항의 출석요구를 한 것으로 봄

다) 심사종료 후 출석하여 면접을 요구할 경우

○ 심사종료 절차 상 하자가 없는 경우

- 해당 난민신청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유와 관계없이 새로이 난민인정신청서 접수 후 절차 진행

○ 심사종료 절차 상 하자가 있는 경우

- 심사종료를 취소하고 다시 난민인정 심사를 개시하여 난민인정 여부 결정

※ 심사종료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처분인지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며, 종료처분이 위법할 경우 심사종료를 취소하여야 함

2) 면접 실시

가) 일반원칙

○ 난민면접을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면접관)은 난민전담공무원으로서 난민신청자와의 사적 친분관계 등 난민심사의 공정성이 의심될만한 사정이 없는 자여야 함

○ 통역인은 난민면접에 필요한 통역능력이 충분한 자로서 난민신청자와의 사적 친분관계 등 통역의 공정성이 의심될만한 사정이 없는 자여야 함

○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같은 성의 공무원이 면접을 하여야 함

○ 난민신청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성의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함

- 같은 성(性)의 통역인을 구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통역을 실시하거나 칸막이를 설치하여 통역하는 등 난민신청자를 배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 통역인이 통역하게 할 수 있음
- 청각장애인이거나 언어장애인의 경우 통역인을 통해 문자로 묻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음

나) 면접 전 고지 사항

- 면접 시작 시 아래 사항에 관하여 난민신청자에게 고지

- 난민법상 난민의 요건에 대한 사항과 면접은 난민지위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임
- 면접 중 진술은 어떤 경우에도 출신국 또는 제3자에게 전달되지 않으며, 통역자 또한 선서를 통해 비밀엄수에 대해 약속을 하였음
- 면접은 약 X시간 동안 지속될 예정이며 모든 면접내용(질문과 답변)은 면접조서에 기록되고, 면접 중 신청인은 진술한 내용에 대해 확인과 수정을 요청할 수 있음
- 면접내용은 난민지위 결정의 가장 중요한 자료이므로 난민신청자는 난민심사관의 질문에 충실하게 답변하는 등 면접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함
- 난민신청자 본인을 위해 정직하게 진술하여야 하며 만약 면접 이후에 거짓된 진술, 사실의 은폐 등이 밝혀진 경우에는 난민의 인정을 받더라도 법령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

- 난민신청자는 면접을 통해 난민인정 신청의 진실성, 타당성 및 박해 사유 등에 관하여 신청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을 설명
- 고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친 때에는 고지사항에 대한 설명 내용을 면접조서에 기록하고, 난민신청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도록 함

다) 난민전문통역인 등의 변경

- 난민신청자가 의사소통 문제, 성별, 친분관계 등의 사유로 통역인이나 면접관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통역인 등 변경 요청서' (붙임 33)를 작성하도록 함
- 통역인 등의 변경사유가 이유있는 경우에는 통역인 등을 변경하고 다시 면접을 진행

- 정당한 사유 없이 통역인 등의 변경을 반복적으로 요청하며 3회 이상 면접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3회 이상 면접불출석자와 동일하게 처리

3) 면접 내용의 녹음·녹화

○ 녹음 또는 녹화 실시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접시작 전 난민신청자의 녹음·녹화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면접과정을 녹음·녹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난민신청자가 녹음·녹화를 요청할 경우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됨

- 난민신청자가 면접과정의 녹음·녹화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접 녹음·녹화 미동의 확인서'(붙임 34)를 작성하도록 함

- 법무부 위촉 난민전문통역인의 섭외 등이 어려워 난민통역인(난민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른 통역인) 또는 대동통역인(면접과정에서 통역지원을 위해 난민신청자가 데리고 온 사람)이 면접을 실시할 때에는 면접과정을 반드시 녹음·녹화

※ 「난민전문통역인 등 운영지침」에 따라 처리

○ 녹음 또는 녹화 시 면접 장소

- 면접 내용의 녹음 또는 녹화가 필요한 경우, 난민심사관은 녹음 또는 녹화시설이 갖추어진 '전자조사실'에서 면접
- 전자조사실이 없거나 이동 거리 등의 사정상 이용이 어려운 청 등에서는 '녹음·녹화장비'를 이용하여 면접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

○ 녹음 또는 녹화 내용의 보관 및 관리

- 면접 내용 녹음 또는 녹화 후 CD, DVD의 형태로 1부 제작 후 난민신청자 개인별 파일에 첨부하여 보관하고, 원본 파일 또한 각 청 등의 실정에 맞게 저장하여 보관 및 관리

※ CD, DVD 앞면에 난민신청번호, 난민신청자 성명, 녹음·녹화 시작일시 기재

- 녹음 또는 녹화한 경우 ICRM 「난민인정/신청」 화면 '면담조사' 입력 시 녹음 또는 녹화 일자, 파일명 등 반드시 입력

※ ICRM 「난민인정/신청」-「명단/대장」-「녹음·녹화 대장」에서 명단 확인 가능

4)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허용

- 난민심사관은 난민신청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면접의 공정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용할 수 있음

※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범위는 가족, 친지, 친구, 변호사로 한정

- 난민신청자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어려움에 의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나 난민신청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허용

- 동석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동석한 사람으로 하여금 난민신청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됨

-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신청

- 난민신청자는 면접 과정에 신뢰관계 있는 사람과 동석을 희망하는 경우 동석신청서(붙임 20)를 작성하여 청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함

- 원칙적으로 동석신청은 면접 전일까지 신청하도록 하고, 면접이 지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당일 신청 허용(면접 지연에 따른 통역인 민원 방지 등)

- 난민신청자가 동석자의 동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단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권번호), 성별 및 국적을 밝혀 하여야 함

- 난민심사관은 난민신청자로부터 동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동석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동석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난민신청자에게 동석이 불가함을 통지하여야 함

- 동석의 제한

- 신뢰관계는 난민신청자의 주관에 의한 것이므로, 동석자의 신분과 자격 등에는 제한이 없으나, 난민법 제13조에 따라 면접의 공정성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석을 제한할 수 있음

- 동석을 희망하는 자가 과거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7조의2,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
- 난민신청자와 함께 동일한 사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여 면접이 예정되어 있어 면접에 참여함이 이후의 면접 및 심사의 공정성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
- 난민신청자에게 난민인정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거짓된 서류 등을 제공하거나 거짓 진술 등을 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 동석자는 동석에 앞서 비밀 준수 서약서(붙임 21)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통역인에 대하여도 통역에 앞서 비밀 준수 의무 등을 확인시키고 비밀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 동석자 고지 사항

- 난민심사관은 난민면접을 시작하기 전 동석자에 대하여는 아래 동석자에 대한 행동 제한 사항을 고지하고, 이를 면접조서에 기재하여야 함

- 신뢰관계 있는 동석자는 난민심사관의 질문에 난민신청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난민신청자에게 답변할 내용을 알려주는 등 일체의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됨
- 신뢰관계 있는 동석자는 난민심사관의 면접 진행을 방해하거나 공정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난민심사관은 동석자가 면접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공정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동석의 허용을 중단하고 면접실에서 퇴실할 것을 지시할 수 있음

5) 유엔난민기구(UNHCR)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면접 참여

- 유엔난민기구에서 난민신청자에 대한 면접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관할 청장 등에게 요청하여야 함,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

※ 신청절차 등은 '출입국향 난민신청 및 심사절차 중 변호인 접견 절차(7p)' 준용

- 유엔난민기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청장 등은 난민심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난민신청자에 대한 면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그 결과를 본부에 보고

- 난민신청자가 유엔난민기구의 면접 참여를 동의하면 허용하고, 난민신청자가 유엔난민기구의 면접 참여를 거부하면 이를 관계기관 면접대장에 기록하고 난민신청자 서명 징구

6) 면접 시간 및 휴식

- 면접시간이 100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분간 휴식하여야 함
- 하루에 할 수 있는 면접 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
- 면접 시간이 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식사 후 면접을 재개하여야 함

7) 야간 및 공휴일 면접

- 야간 및 휴무일의 면접은 난민심사관 및 난민신청자의 안전과 면접의 신뢰성·공정성의 확보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난민신청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에 사전에 청장 등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8) 난민면접조서 기재사항의 확인

- 난민심사관은 면접 내용을 면접조서(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함
- 난민심사관이 면접을 마친 때에는 난민면접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난민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 또는 번역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난민심사관은 난민신청자에게 난민면접조서의 기재 내용에 오기나 틀림이 없는지 물어야 하고, 난민신청자가 내용의 추가·삭제 또는 변경을 요청하면 그 진술을 난민면접조서에 기재하여야 함
- 난민심사관은 난민신청자가 면접조서의 기재내용에 대한 확인을 마치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함(기명날인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이를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난민면접조서에 기재)

- 난민심사관은 통역인에 대하여도 난민면접조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도록 함

9) 면접 종료 후 고지 사항

- 난민신청자에게 가까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심사결과 서류를 교부 받도록 안내

나. 가족결합 신청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면접

1) 배우자

- 난민신청자의 배우자가 가족결합을 이유로 난민신청 하더라도 면접을 실시하여 다른 박해 사유가 있는지 확인

2) 미성년 자녀

[면접 원칙]

- 미취학 아동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난민신청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심사
- 신청서상 가족결합만을 이유로 난민신청 했더라도 부모 면접 시 독자적 박해사유 유무 반드시 확인

- 10세 미만이면 부모 면접 시 자녀에게 독자적 박해사유가 있는지 확인
- 보호자가 대리 진술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면접 실시

※ 부모 면접 시 미성년자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지금부터는 자녀의 난민신청에 대한 면접을 하겠습니다.”라고 고지한 후 진행

- 10세 이상 16세 미만이면 신청사유가 가족결합이더라도 보호자 동석 하에 면접을 실시하고, 다른 박해 사유가 있는지 확인

- 16세 이상이면 신청사유가 가족결합이더라도 개별면접을 실시하여 다른 박해 사유가 있는지 확인

3) 가족결합과 함께 다른 박해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 보호자(부모 등) 동석 하에 예외 없이 면접 실시

- 1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보호자가 대리 진술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면접을 실시

다. 보호자(부모 등) 없는 미성년자 면접

- 예외 없이 면접 실시

라. 교도소 수감 중인 난민신청자 면접

☞ 관련 문서 : 난민과-17696(2017. 9. 7.), 난민심사 절차 시달

1) 면접 대상

- 1년 이상 형이 확정되어 수감 중인 난민신청자

2) 면접 장소

- 난민신청자가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

3) 심사 관할

- 교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난민심사 거점기관

4) 면접 절차

- ① 사전에 교도소와 면접일정 유선 협의 후 협조요청 공문 발송
※ 협조요청 공문에 난민법 제11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적시
- ② 난민신청자에게 출석요구서 발송
- ③ 교도소 협조를 받아 난민신청자가 면접에 응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
- ④ 면접에 응할 의사가 있으면 출장 면접 실시
- ⑤ 면접에 응할 의사가 없으면 3회 출석요구서 발송 후 심사종료

5) 참고사항

- 그 외 사항은 난민 법령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처리
- 교정본부 보안과와 업무협의 및 협조요청 공문 발송(난민과-17694, 2017. 9. 7.)
 - 난민담당자·통역인의 교도소 출입 및 면접장소 제공, 교도소 내에서 난민면접용 녹음·녹화장비 휴대 및 사용, 난민신청자의 면접 의사 유무 확인 협조 등

마. 허위난민 신청 정보 수집 시 조치사항

- 허위난민 신청 정보를 입수한 때에는 관련 내용을 “ICRM - 조사 - 정척보입력” 및 “ICRM - 난민 - 난민인정신청/인정 - 참고사항”에 입력하여 조사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

바. 국내 입국 전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행위자 적발 시 조치사항

1) 적용대상

-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난민신청자(면접과정에서 진술한 경우 포함)

* 살인, 성폭행, 무장 강도, 마약거래, 마약투약 등

2) 조치사항

- 강제퇴거 명령(보호조치) 및 퇴거 집행

※ 적용법조 :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제62조 제4항

- 강제퇴거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소송이 인용된 경우에는 본안 소송 확정시까지 퇴거 집행 보류

3) 처리절차

- 거점기관 난민담당

- 「난민협약」 제1조 F항* 및 「난민법」 제19조 에서 정한 난민인정의 제한(배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면접 후 지체 없이 대상자 명단(면접조서 포함)을 본부 난민정책과에 보고

* (a) 평화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 또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제문서에서 정하여진 범죄를 저지른 자, (b) 난민으로서 피난국에 입국하는 것이 허가되기 이전에 그 국가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자, ©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 난민신청 접수 시, 「난민협약」 및 「난민법」에서 정한 배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이내 면접 실시

- 본부 난민정책과

- 거점기관 보고 건에 대해 난민인정 제한(배제) 사유 해당 여부를 면밀히 검토 후 제한대상으로 결정되면 ICRM에 “난민인정 제한(배제) 강제퇴거 대상임”으로 입력*

* 「ICRM」상 「난민인정신청/인정」, 「외국인등록/체류」 참고사항 및 관리 대상자 등 입력

- 난민인정 제한(배제) 사유에 해당하여 이의신청 기각 결정된 경우 이의신청 담당자는 ICRM에 “난민인정 제한(배제) 강제퇴거 대상임”으로 입력

3. 사실조사

가. 난민신청서 기재내용, 국가정황, 체류실태 등 조사

- 난민심사관은 면접에 앞서 난민인정신청서(진술서 포함) 및 입증서류 등을 검토하고 난민신청자에 대한 입국 관련 자료 조사
 - 여권 발급지, 발급일시, 유효기간
 - 우리나라 출입국기록, 체류사실 또는 과거 난민인정 신청사실 여부
 - 우리나라 입국목적 및 체류자격, 체류기간
 - 국내 초청자(초청 목적) 및 보증인
 - 사증사항(소지 사증, 사증발급 경위 등)
- 난민심사관은 국가정보(COI : Country of Origin Information)를 조사하여 신청서 내용 및 면접 시 난민신청자 진술의 신빙성 확인
 - 난민신청 사유 및 박해사항 등에 관한 신청자 진술과 그 국가의 객관적 정보 및 상황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
 - 국가정황 자료에 관하여는 이를 꾸준히 업데이트하여 최신 정보로 유지하도록 노력
- 난민심사관은 난민신청자의 난민신청 사유와 관련하여 필요 시 국내에서 활동한 사항 등에 관하여 조사
 - 체류실태에 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과 등에 실태조사 의뢰
 - 필요한 경우 관계자 등 참고인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여 질문하거나 문서 등의 제출 요구
 - 난민심사관, 난민전담공무원이 아닌 조사부서 직원이 난민법

제10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실조사 담당
난민전담공무원 지정 후 사실조사 실시

※ 관련 문서 : 난민과-11741(2017. 6. 15.), 난민 사실조사 담당 난민전담공무원
지정 지시(동향조사 담당자 중 2명 이상 난민전담공무원 지정)

나. 난민신청자에게 유리한 자료의 수집

- 난민심사관이 난민인정 심사를 할 때에는 난민신청자에게 유리한
자료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심사 자료로 활용하여야 함

다. 난민인정 제한 사유 해당 여부 조사

○ 난민인정의 제한 사유(난민법 제19조)

- 유엔난민기구 외에 유엔의 다른 기구 또는 기관으로부터 보호 또는
원조를 현재 받고 있는 경우
- 국제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하는 세계평화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 또는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대한민국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난민인정 제한 사유에 대한 사실조사

- 난민심사관은 난민인정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 시
난민신청자의 난민인정 제한사유에 대한 사실조사 실시
- 난민인정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난민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외교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유엔난민기구 등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이나 사실조사 협조 요청
- 조사 결과 난민인정 제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난민불인정 결정

라.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 청장 등은 난민법 제11조에 따라 난민인정 심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이나 관련 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 또는 사실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청장 등은 관계기관의 장 또는 관련단체의 장 등에게 면접 또는 사실조사에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사나 자료요청을 할 수 있음
 - 난민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 난민신청자의 출신국 또는 출신지역의 국가정보
- 법무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이나 관련 단체의 장에게 난민신청자의 정치적 견해, 종교, 민족, 인종 등에 관하여 의견을 물을 수 있음

4. 신원검증

☞ 관련 문서 : 난민과-1463(2019. 3. 5.), 난민업무 처리 관련 업무 지시

가. 대상 : 14세 이상 난민신청자

나. 제출서류 : 범죄경력증명서 또는 본인확인서(붙임 32)

○ 범죄경력증명서는 난민 접수 또는 면접 시 제출

-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또는 제3국 정부 발행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면접 시 제출하는 본인확인서 제출로 같음

* 국내 입국 전 제3국 체류기간이 3개월 이상인 대상자

○ 본인 확인서는 면접 시 통역인 입회하에 작성하도록 하고 작성요령에 대해 상세히 설명

※ 본국 또는 제3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본인확인서는 제출 생략

다. 조치사항

○ (소속기관) 범법사항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본부 난민정책과에 즉시 메모보고 본부 난민정책과는 관계기관에 관련 사실 통보

○ (본부 난민정책과) 소속기관에서 범법사항 등 특이사항을 보고하면 본부 난민정책과는 관계기관에 관련 사실 통보

라. 신원검증 특례

○ (신원검증 특례대상) 아래 테러취약국가 등 13개 국가 국민 중 2017년 1월 이후 신청자로 14세 이상²⁾ 남자



2)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특례대상 신원검증 방법

- ① (본부 난민정책과) 관계기관에 신원검증 의뢰 → 회신결과를 난민신청 접수기관에 배포
- ② (난민신청 접수기관) 본부 난민정책과에서 배포한 신원검증 결과를 ICRM 난민신청/인정 참고사항에 입력

마. 세부절차

- 1) 매월 초(10일~15일) 본부에서 전월 검증대상 난민신청자 명단 및 참고자료를 관계기관 송부
- 2) 관계기관 → 본부로 검증 결과 회신
- 3) 본부 담당자는 난민신청 접수사무소 기준으로 분류하여 지방청(사무소) 담당자에게 회신 결과 ICRM - 난민 - 난민인정/신청 '참고사항'에 입력하도록 지시
 - 특이사항 없는 경우 : 2000.00.00. 관계기관 조회 결과 특이사항 없음
 - 특이사항 있는 경우 : 2000.00.00. 0000 위반사실 확인
- 4) (거점기관) 난민심사 시, 참고사항에 기재된 범죄사실 확인되는 경우 조치 사항
 - 가) 아래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입국금지자(입국금지 무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 테러범 및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자· 본국 또는 제3국에서 살인, 강도, 범죄조직, 마약, 약취, 유인, 인신매매,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미성년자 대상 범죄 등 강력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
--

- 난민법 제19조(난민인정의 제한)에 따라 난민불인정 결정 및 입국규제업무 처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조치(강제퇴거 및 입국규제 등)

나) 위 가)에 해당하지 않으나 범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난민신청 과정에서 제출한 '난민신청자 범죄경력 등 본인확인서'를

확인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26조 제1호 위반에 따라 사범처리(세부기준은 범칙금 양정기준에 따름)

바. 신원검증의 자료 활용

- 난민심사 및 체류허가 시 「난민법」 제19조,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 46조(강제퇴거) · 62조(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해당 여부 확인 자료로 활용

사. 신원검증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사항 (난민심사 거점기관)

1) 대상

- 14세 이상이고 신원검증을 받지 않은 자로, 난민인정 또는 인도적 체류허가 대상

2) 시기

- 난민인정 및 인도적 체류허가를 결정하기 전
 - ※ 관계기관 검증에 상당 기간(1~2개월 남짓) 소요되는 점을 고려, 난민인정 및 인도적 체류허가 예정 건을 사전에 파악하여 신원검증 의뢰

3) 검증절차

가) 거점기관 담당자는 난민인정 및 인도적체류허가 예정자 명단을 관계기관에 송부

- ※ 신청인이 정부 발행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거나 기존에 관계기관 검증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제외

나) 관계기관에서 해당 거점기관에 신원검증 결과를 회신하면 거점기관 담당자는 회신 결과를 ICRM - 난민 - 난민인정/신청 '참고사항'에 입력하고 난민심사에 참고

- 특이사항 없는 경우 : 2000.00.00. 관계기관 조회 결과 특이사항 없음
- 특이사항 있는 경우 : 2000.00.00. 0000 위반사실 확인

4) 범죄사실이 확인되는 아래와 같이 조치

가) 아래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입국금지자(입국금지 무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 국제 테러범 및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자
- 본국 또는 제3국에서 살인, 강도, 범죄조직, 마약, 약취, 유인, 인신매매,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 미성년자 대상 범죄 등 강력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

- 난민법 제19조(난민인정의 제한)에 따라 난민불인정 결정 및 입국규제업무 처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조치(강제퇴거 및 입국규제 등)

나) 난민신청자 범죄경력 등 본인확인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 난민신청자 범죄경력 등 본인확인서(붙임 32)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체류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출입국관리법 제26조 제1호 위반에 따라 사범처리(세부기준은 범칙금 양정기준에 따름)

※ 위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부 난민정책과에 사전 메모보고

5. 가족결합 심사 등

가. 가족결합 심사

1) 대상

- 난민인정자의 배우자(법률혼), 미성년 미혼자녀

2) 제출서류

- 본국 정부 발행 가족관계 증빙 서류, 대한민국 시(구)·읍·면의 장이 발급한 혼인신고 수리증명서, 출생증명서(병원 등), 기타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 가족관계의 진정성이 의심스러울 경우 실태조사 실시

3) 가족결합 처리기준

가) (원칙) 독자적인 난민사유 유무 심사

- 가족결합 대상자에게 독자적 난민사유가 있으면 심사를 통해 난민인정 여부 결정

- 독자적 난민사유가 없는 경우 아래 나)혼인에 의한 가족결합 및 다)출생에 의한 가족결합 기준에 따라 처리

※ 난민법 제19조의 난민인정 제한 사유 해당자는 제외

나) 배우자 가족결합(독자적 난민사유가 없는 경우)

○ 난민인정 대상

- 주신청자의 난민신청일(재신청자는 최초 난민신청일 기준) 이전에 가족관계 형성된 경우

○ ‘난민인정자 가족(F-1-16)’ 체류허가 대상

- 주신청자의 난민신청일(재신청자는 최초 난민신청일 기준) 이후에 가족관계가 형성된 경우

※ 난민업무담당자는 난민불인정 결정 시, ICRM 난민심사 결정사항 입력란에 “난민인정자 가족(F-1-16) 체류자격 부여 대상”이라고 기재

○ 이혼 등에 따른 난민지위 유지 여부

- 배우자 가족결합으로 난민인정 이후 이혼, 별거, 사망하더라도 난민법 제22조(난민인정결정의 취소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난민지위 유지
- ※ 난민의 가족결합이 이혼, 별거 또는 사망으로 해체되는 경우에도 가족결합에 의하여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부양가족은 정지조항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난민지위를 유지함(UNHCR 난민절차 편람 제187항)

다) 미성년 자녀 가족결합(독자적 난민사유가 없는 경우)

○ 난민인정 대상

- (국내출생 자녀) 부모 일방이 독자적 난민 사유로 난민 인정을 받은 경우
- (외국출생 자녀) 부 또는 모의 난민신청일(재신청자는 최초 난민신청일 기준) 이전에 가족관계 형성된 경우

○ ‘난민인정자 가족(F-1-16)’ 체류허가 대상

- (국내출생 자녀) 부모 모두 독자적 사유 없이 가족결합으로 난민인정을 받은 경우

※ 난민업무담당자는 난민불인정 결정 시, ICRM 난민심사 결정사항 입력란에

“난민인정자 가족(F-1-16) 체류자격 부여 대상”이라고 기재

※ 국내 출생자녀가 부모 국적국의 국적관련 법령으로 국적을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 본부와 협의하여 난민인정 여부 결정

- (외국출생 자녀) 부 또는 모의 난민신청일(재신청자는 최초 난민신청일 기준) 이후에 가족관계가 형성된 경우

나. 정신장애인 심사

- 심각한 박해를 경험했던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의 정신장애는 빈번히 나타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을 들은 후 심사를 진행하고, 일반적인 신청인보다 입증책임을 경감하여 판단
- 신청인이 표현한 두려움이 실제 경험에 근거한 것이 아니거나 과장된 두려움이라는 징후가 있는 경우 신청인의 진술보다는 객관적인 상황에 더욱 비중을 두어야 함
- 신청인의 가족, 친척 또는 신청인과 알고 지내는 사람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신청인이 특정 난민집단에 속할 경우 신청인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 및 국적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신뢰성 판단

다. 동반자가 없는 미성년자³⁾ 심사

- 동반자가 없는 미성년자가 난민지위를 인정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일차적으로 그의 정신적 발달 및 성숙도에 따라 결정되며, 정신적 성숙도는 일반적으로 그의 개인적, 가족적, 문화적 배경에 비추어 결정되어야 함
- 반증이 없는 한 16세 이상인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한 두려움을 가질 만큼 성숙했다고 인정할 수 있고,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통상 충분히 성숙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UNHCR 난민지위 인정기준 및 절차편람 215절)
- 미성년자가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을

3) 대한민국 민법은 만 19세 미만을 미성년자라 함

만큼 성숙하지 못한 경우에는 객관적 요소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하고, 난민집단과 함께 있는 미성년자는 사정에 따라 난민이라는 정황일 수 있음

- 16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가지는 공포는 성인과 같은 비중을 가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유리하게 해석의 원칙」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6. 난민 인정/불인정 결정

가. 심사보고서 작성

1) 심사보고서 작성·보고

- 난민심사관은 면접과 사실조사를 마치면 난민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첨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장 등에게 보고

2) 심사보고서 내용

- 난민신청 사유, 본국에서의 활동사항,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의 존재 여부, 난민신청자 신청 사유 관련 국가정황 및 국내 체류실태 등
- 진술의 일관성, 국가정황 등 사정에 비추어 난민신청자가 귀국 시 박해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
- 미성년 신청자가 가족결합 외 독자적 박해사유가 없는 경우 해당 내용을 기재

3) 심사보고서 비공개

- 난민인정 심사과정에서 생산된 내부 문서나 수집된 자료 등은 비공개
 - ※ 형사소송법은 공소가 제기되기 이전, 즉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는 일체의 수사자료에 대한 열람·복사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있고,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이나 증인에 관한 사항이 아닌 이상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 등에 대하여만 열람·등사를 허용하고 있음(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나. 심사결정

- 청장 등은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난민인정 여부 결정
- 난민인정 여부 결정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 및 민간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음

다. 심사결정 기간

1) (원칙) 난민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청장 등은 난민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난민인정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함
- 부득이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 가능
- 난민인정 심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청장 등은 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기간을 연장하는 사유 등을 포함하여 본부 보고
- ※ 만료일에 임박하여 의례적으로 연장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관서별 계획성 있는 난민심사를 진행하기 위함

2) '사정변경 없는 재신청자 등(24p)'

-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며, 가급적 3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신속심사 대상자에 대하여는 신청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다른 난민신청자에 우선하여 심사
- 심사절차의 일부 생략
 - 난민심사관은 난민신청자의 난민인정 신청사유, 법 위반 내용 및 정도, 난민인정 신청횟수, 불법체류 기간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사실조사를 생략
 - 면접은 난민심사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절대 생략해서는 안 됨. 다만, 신청사유에 따라 난민인정 여부와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한 질문은 생략하여 면접시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면접 실시

3) 보호 중 난민신청자

- 가급적 15일 이내에 심사결정하되, 통역 섭외 곤란 등 지체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개월 이내에 심사 결정(1개월 도과 시 본부 사전 보고)

- 보호 후 난민신청한 경우 난민신청일로부터, 난민신청 후 보호조치된 자가 면접 전인 경우 보호일로부터 처리기간 계산

※ 다만 신청인이 보완서류 준비기간을 요구한 경우 보완서류 제출일로부터 처리기간 계산

4) 심사기간 연장 통지

- 6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는 아래와 같음

- 난민신청 건수의 급증 등으로 인한 난민심사관 및 난민전담공무원 등 업무처리 인력 부족
- 난민신청자의 언어권에 해당하는 통역인(동성(同性)의 통역인 포함)을 구할 수 없어 면접 및 조사 등이 지연되는 경우
- 국황가정등 사실조사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거나 다른 사무소로부터 이첩을 받은 경우 등

- 청장 등이 난민인정 심사 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종전의 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난민인정 심사기간 연장 통지서(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를 발급하여 난민신청자에게 송부

라. 심사결과 보고 및 시스템 입력 등

1) 심사보고서 및 면접조서 등 시스템 입력

- 난민심사관은 면접조서와 심사보고서를 이미지로 스캔하여 등록
- 기타 난민신청자의 입증서류 및 관련 서류 일체 이미지 등록
- 미성년 신청자가 가족결합 외 독자적 박해사유가 없어 가족결합 원칙에 따라 난민불인정결정한 경우 해당 내용을 시스템(ICRM 「난민인정신청/인정」-「심사 및 결정」중 「결정사항」)에 입력

2) 보호 중 난민신청자에 대한 후속조치

- 난민인정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보호의뢰 청장 등 및 보호소장에게 심사결과 통보
- 난민심사관은 심사결과 난민인정 또는 인도적 체류허가가 결정된 경우에는 즉시 보호의뢰 청장 등 및 보호소장에게 난민인정결정서 또는 난민불인정결정서를 송부하고, 보호의뢰 청장 등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해제 의뢰서를 보호소장에게 송부하여 보호 해제토록 조치

- 난민심사관은 보호 중인 난민신청자가 난민인정 또는 인도적 체류허가 등이 결정된 이후에도 장기간 보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결과를 결정 당일 즉시 통보하고, 보호소장은 난민심사결과에 따라 보호해제 절차 진행
- 보호소장은 보호 해제한 외국인에 대해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등에서 30일 내에 체류허가 등을 받도록 안내

3) 가족결합 사유 인정자 등에 대한 후속조치

- 가족결합을 사유로 난민인정결정 또는 인도적 체류허가를 한 경우, 시스템에 관련 가족관계 기재

※ ICRM 난민 - 난민신청 및 심사 - 난민접수 및 심사 - 신청 - 가족사항

7. 인정/불인정 결정 후속 조치

가. 난민인정증명서,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 등 교부

1) 난민인정증명서,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 교부

- (교부기관) 모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교부 가능
- (교부대상) 난민법 제1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따라 난민신청자(이의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교부

※ 대리인의 범위 - 배우자, 직계혈족, 소송대리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민법 제14조의2에 따른 후견인

※ 대리인 제출서류 - ① 배우자 및 직계혈족의 경우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난민신청자의 난민인정신청서 가족관계란에 기입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위임장 및 위임자와 수임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② 소송대리인, 법정대리인, 후견인은 위임장, 위임자 및 수임자의 신분증 사본,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수령인이 자필 서명한 인수증을 받아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난민 창에 등록

※ 대리인 수령 시 대리인 제출서류도 등록

- 난민인정증명서 교부 시 조치사항

- 난민인정증명서를 교부한 때에는 난민인정증명서 발급대장(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기재

○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 교부 시 조치사항

- (난민인정자 가족결합 여부 확인) ICRM으로 난민인정자 가족(F-1-16) 체류허가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F-1-16 체류허가 대상이면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에 “가족결합 F-1-16 체류허가 대상”이라고 기재하여 교부(체류 절차 등 안내)

- 단순 불인정결정자의 경우 이의신청 절차 및 이의신청 기간,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기간, 난민불인정 결정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은 난민법 제44조에 따른 난민신청자 처우가 제한되는 점 등 안내

※ “가족결합 F-1-16 체류허가 대상” 여부 반드시 확인

-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경우 인도적 체류허가의 의미와 체류절차에 관하여 안내하고, 이의신청 절차 및 이의신청 기간,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기간 등 안내

2) 직접 교부할 수 없는 경우의 통지 방법

- 난민신청자(인정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직접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송달

※ 직접 교부한다는 의미는 난민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출석하여 교부받는다는 의미임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

※ 붙임 23 ‘난민불인정결정 통지 공시송달문’ 및 붙임 24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 공시송달문’을 이용하되, 성명은 이니셜로 한정하여 난민법 제17조 인적사항 등의 공개 금지에 위반되지 않도록 할 것

나. 생활실태서 작성·등록

- (난민인정자 및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 및 인도적체류자에게 난민인정증명서 또는 난민불인정 결정 통지서 교부 시 '생활실태서 (붙임 8)'를 작성하게 하여 제출받은 후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외국인등록 창에 등록

다. 안내문 등 교부

- (난민인정자) '난민인정자 처우 안내문(붙임 12)' 및 가이드북 교부
- (인도적체류자) '인도적체류자 취업허가 안내문(붙임 18)'교부

8. 이의신청 접수·보고

가. 이의신청 대상

- 난민법 제18조에 따라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여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
- 난민법 제19조 각 호의 난민인정 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난민불인정 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
- 난민법 제22조에 따라 난민인정을 취소 또는 철회하여 난민인정 취소·철회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

나. 이의신청 제기기간

- 청장 등으로부터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도 포함), 난민인정취소·철회통지서 등을 교부받은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
 -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음

다. 이의신청서 접수

- 모든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처리한 이후에는 '이의신청 접수증'(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붙임 32) 교부

- 난민신청자는 이의신청서(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에 이의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본인이 신청하거나 법정대리인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14조의2에 따라 특정후견인이 신청을 대리
 - ※ 민법상 성년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 신청은 허용되지 않음
- (2016. 7. 27. 지침 시행 이후) '사정변경 없는 재신청자 등(24p)'에 해당되는 자의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외국인등록화면 참고사항에 「사정변경 없는 재신청자 등 - 체류기간연장 불허 안내」 내용을 입력

라. 이의신청 접수 보고

-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 접수담당 공무원은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지체 없이 이의신청서 및 이의를 소명하는 자료 등을 스캔하여 시스템에 입력하고 등록

마. 이의신청 처리 기간

-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함
-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안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
- 이의신청 심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이의신청 심사기간 연장 통지서(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를 이의신청인에게 발급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함

9. 난민인정 결정의 취소 및 철회

가. 개 요

1) 의의

- 난민으로 인정받기에 부적합한 사실이 추후에 밝혀지거나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이 더 이상 국제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이유가 발생하면 난민인정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음
- 난민법 제2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는 것이며, 반드시 취소해야하는 것은 아님
- 난민인정결정이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에 따른 것이더라도 난민인정자가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하여 박해를 받을 상황이 인정된다면 난민인정을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취소·철회권자

- 해당 외국인에 대하여 1차 심사결정을 한 청장 등(원처분청)
 - ※ 난민인정 취소·철회 사유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해당 외국인에게 난민 인정 결정을 한 청장 등에 통보(보고)

나. 난민인정 결정의 취소

1) 난민인정 결정 취소의 의의

- 난민인정의 취소는 신청인이 당초 난민인정 기준에 미달하였거나 처음부터 난민협약 상 적용중지 또는 적용배제 사유에 해당하여 국제적 보호의 대상이 아니었던 경우에 난민인정을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효과를 발생시킴
- 난민법 제22조는 난민인정결정이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에 따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난민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2) 취소 사유

○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난민인정 결정을 받은 경우

- 위조되거나 변조된 타인명의의 여권, 신분증을 제출하여 허위의 국적, 성명 등으로 난민인정 결정을 받은 경우

- 난민인정 결정의 중요한 입증서류 등이 거짓으로 만들어진 허위 사실로 밝혀진 경우

※ 박해의 위험성이 높은 국가의 국민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위조여권을 사용한 경우, 특정 인종, 민족으로 가장하기 위해 타인명의 여권이나 신분증을 사용한 경우, 박해사실을 위장하기 위해 위조된 수배전단을 제출하는 경우 등

○ 거짓 진술로 인하여 난민인정 결정을 받은 경우

- 난민으로 인정된 박해 사실 또는 난민신청 사유 등 난민인정 결정의 주요 진술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 박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동성애자가 아닌 사람이 동성애자로 위장한 경우 등

○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 결정을 받은 경우

3) 사실조사

○ 난민심사관 및 법무부 내 난민전담공무원은 난민인정 등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음

※ 난민심사관, 난민전담공무원이 아닌 조사부서 직원이 난민법 제10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실조사 담당 난민전담공무원 지정 후 사실조사 실시

○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난민인정자, 그 밖에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을 하거나 문서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4) 취소 통지

○ 청장 등이 난민인정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난민인정이 취소된 자나 그 대리인에게 난민인정취소통지서(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를 교부하고 난민인정증명서 회수

※ 난민인정이 취소된 자나 그 대리인에게 직접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송달

※ 대리인 교부의 경우 '난민인정증명서,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 등 교부' 참고

○ 난민인정취소통지서에는 취소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함을 기재하여 통지

○ 체류 및 사범담당 부서 통보

- 난민인정 결정 취소 시 관련 내용을 ICRM 「난민인정/신청」 화면 및 「외국인등록」 화면 참고사항에 입력 후 체류·사범담당 부서에 통보

○ 관계기관 통보

- 난민인정자로서의 처우를 받지 못하도록 관계기관에 취소사실 통보

다. 난민인정 결정의 철회

1) 의의

○ 더 이상의 국제적 보호가 필요 없는 난민인정자에 대하여 난민인정자의 지위를 중지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킴

○ 난민법 제22조제2항은 난민협약의 '적용중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난민인정을 철회할 수 있음을 규정

○ 난민인정의 철회는 이미 난민심사가 종료된 건에 대한 처분으로 난민인정 심사가 진행 중인 난민인정 신청의 철회와는 구분

- 난민인정의 취소는 난민인정이 거짓서류나 진술에 의한 것으로 밝혀져 처음부터 난민인정 결정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돌리는 처분임에 반하여, 난민인정의 철회는 유효하고 적법한 난민인정 결정의 효력을 장래에 중지하는 처분임

2) 난민인정 철회 사유

- 자국의 법률·제도·정치적 상황 등 사정 변경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국적국에 돌아가는 등 국적국의 보호를 다시 받고 있는 경우
- 국적국의 박해 등 사유로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국적을 상실하였던 자가 자발적으로 자국의 국적을 회복한 경우
- 새로운 국적을 취득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를 떠나거나 또는 그 국가 밖에서 체류하고 있다가 자유로운 의사로 그 국가에 재정착한 경우
- 난민인정 결정의 주된 근거가 된 사유가 소멸하여 더 이상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거부할 수 없게 된 경우
- 무국적자로서 난민으로 인정된 사유가 소멸되어 종전의 상주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경우

3) 사실조사

- 난민심사관 및 법무부 내 난민전담공무원은 난민인정 등의 철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음
 - ※ 난민심사관, 난민전담공무원이 아닌 조사부서 직원이 난민법 제10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실조사 담당 난민전담공무원 지정 후 사실조사 실시
-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난민인정자, 그 밖에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을 하거나 문서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대한민국 밖에서의 활동에 대하여 외교부(재외공관) 등을 통하여

사실조사 협조 요청

4) 철회 통지

- 청장 등이 난민인정결정을 철회한 때에는 난민인정자나 그 대리인에게 난민인정취소·철회통지서(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를 교부하고 난민인정증명서 회수

※ 주소 등을 알 수 없어 난민인정취소·철회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송달

※ 대리인 교부의 경우 '난민인정증명서,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 등 교부' 참고

- 난민인정취소·철회통지서에는 철회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함을 기재하여 통지

- 체류 및 사범담당 부서 통보

- 난민인정 결정 철회 시 관련 내용을 ICRM 「난민인정/신청」 화면 및 「외국인등록」 화면 참고사항에 입력 후 체류·사범담당 부서에 통보

- 관계기관 통지

- 난민인정자로서의 처우를 받지 못하도록 관계기관에 철회사실 통보

라. 난민인정의 철회와 난민신청의 철회

1) 난민인정의 철회와 난민인정 신청의 철회

- 난민인정의 철회는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난민인정자의 지위가 적용 중지된다는 의미이나, 난민신청의 철회는 난민신청자가 난민심사가 종료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철회하는 것임

- 난민신청자가 1차 심사 진행 중에 신청을 철회할 경우 심사를 종료하고, 이의신청 중에 난민신청을 철회할 경우 이의신청 심사 종료

2) 난민인정 신청의 철회

- 난민인정 신청의 철회는 난민불인정결정을 하는 것이 아닌 난민인정

신청 자체를 무효화하여 심사를 종결하는 것으로 이의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난민인정 신청의 철회는 난민인정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청을 철회하는 것으로 난민법 제22조제2항의 난민인정 결정의 철회와는 구별됨
- 난민인정 신청의 철회는 본인의 의사 또는 난민인정 심사 과정에서의 결격 사유 등으로 신청 자체를 무효화 하는 것으로 난민인정 신청의 철회는 크게 **자진철회**와 **직권종료**로 구분됨

3) 난민인정 신청의 자진철회

-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난민신청자는 청장 등에게 난민 인정신청 철회서를 제출하여 본인의 난민신청 건을 철회

- 난민신청자가 박해의 원인이 해소되는 등 본국 상황이 바뀌어 스스로 난민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 가족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스스로 난민인정 신청을 포기하고 출국하기로 결정한 경우
- 기타 본인이 자진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철회한 경우 등

- 난민인정신청 철회서의 제출은 난민신청을 접수한 때부터 난민인정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가능

※ 난민인정 신청의 자진철회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이의신청 또는 소송진행 단계에서 모두 철회 가능

- 난민신청자가 난민신청 철회의사를 밝히면 난민인정신청 철회서(붙임 4)를 청구하고, 시스템 '심사 및 결정'란에 '신청철회 등'으로, '구분'란에 '자진철회'로, '세부사항'란에 알맞은 항목 선택, '철회사유 및 통지서 발행사유'란에는 해당 사유를 입력하여 난민인정 심사 종료(사유 예시 : 난민인정신청 철회서 제출)

※ 난민인정신청 철회서에 철회 사유를 자세히 기재하도록 안내

4) 난민인정 신청의 직권 종료

- 대상

- ① 난민신청자가 면접 등을 위한 출석요구에 3회 이상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 ② 난민신청자가 사망한 경우, ③ 난민신청자가 난민신청 철회를 하지 않고 완전 출국 했거나, 출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 이내에 재입국하지 않은 경우 ④ 난민신청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 연속하여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로, 중간에 출석에 응한 경우는 그 이후부터 기산

[출국일자 입력 방법 등]

□ 철회서 등을 제출하고 완전출국, 출국 후 체류만료일 이내 재입국하지 않은 경우, 심사종료 및 불법체류 후 자진출국한 경우 아래와 같이 '출국일자' 입력

•입력방법 : ICRM - 난민인정/신청 - ① '조치사항' 클릭 → ② '조치구분' - 9.출국 선택 → ③ 세부사항 - '자발적출국' 또는 '강제출국' 입력 → ④ 출국일자 입력 → ⑤ 하단 저장 클릭

•유의사항

- 철회서 제출 후 완전출국하는 경우는 관할 거점기관 담당자가, 심사종료 및 불법체류 후 자진출국 하는 경우는 공항만 사범처리 담당자가 출국일자 입력

- 공항만 사범처리 담당자는 철회서 제출받는 경우 관할 거점 기관에 철회 사실 통보

※ (「난민업무 처리 관련 업무 지시」 참조, 난민과-1043, 2019.02.12.)

○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종료 절차

① 출석 요구(출석요구 절차는 동 지침 32p 참조)

② 내부결재(결재권자 : 청장 등)

③ 시스템 입력

- 시스템 '심사 및 결정'란에 '신청철회 등'으로, '구분'란에 '직권철회'로, '세부사항'란에 알맞은 항목 선택, '철회사유 및 통지서 발행사유'란에는 해당 사유를 입력하여 난민인정 심사 종료(사유 예시 : 면접 3회 불출석, 완전출국, 사망 등)

○ 난민인정신청자가 직권종료 후 출석하여 면접을 요구할 경우

- 심사종료 절차 상 하자가 없는 경우 : 새로이 난민인정신청서 접수

- 심사종료 절차 상 하자가 있는 경우 : 직권종료 취소 후 난민인정 심사 진행

- 이의신청자가 난민인정신청 철회를 하지 않고 완전출국 했거나, 출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 이내 재입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국 여부와 상관없이 난민인정심사 절차 진행

【보호중 난민신청자 등 직권종료 절차】

- ☞ **(일반 난민신청자)** 보호중 난민신청자에게 보호소내 특정 장소 및 일시를 기재한 출석요구서(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하여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그 일시·장소에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고, 그 대상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출석 불응으로 처리
 - ◆ 최초 출석요구서 발부 후 1개월 범위 내(최소 2주 경과후) 2차 출석요구서를 발부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1개월 범위 내(최소 2주 경과후) 3차 출석요구서 발부, 연속 3회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난민인정 신청 직권종료 절차에 따라 난민인정심사 종료
 - ◆ 난민심사관 등이 출석요구서를 발급한 때에는 '출석요구서발급대장'(난민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기록
- ☞ **(정신질환 난민신청자)** 보호중인 난민신청자의 병명과 면접심사가 불가능한 사유 등을 소명할 수 있는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본부보고하고 면접일지 등에 관련사항 기재

5) 심사종료 등 현황 보고

- 난민인정신청 종료(자진철회, 직권종료) 현황을 매월 1회 본부 보고
 - ※ 매월 5일 전까지 전월 현황 보고

10. 난민소송 제기 및 확정 시 조치사항

가. 난민소송 진행상황 및 결과 등 입력

- 난민불인정결정 또는 난민인정 취소/철회 취소소송 제기, 진행 상황 및 결과를 ICRM 「소송·상조회」 화면의 「소송입력」 창* 및 「외국인등록」 화면 '참고사항'에 입력
 - * 소송당사자 항목 중 '등록번호', '난민신청번호' 입력, 관련분야 '난민' 선택

- 「소송·상조회」 화면에 각 심급별 진행사항 및 결과 등 입력

나. 난민소송 확정 시 조치사항

- 판결 취지가 난민인정을 하는 취지인 경우
 - 행정소송법 제30조(취소판결 등의 기속력) 및 난민법 제18조 (난민의 인정 등)에 따라 담당 청장 등은 원처분인 난민 불인정결정을 취소하고

난민인정자 지위 부여

○ 판결 취지가 면접생략 등 절차위반인 경우

- 판결의 취지에 따라 난민면접 재개 등 하자 치유 후 다시 난민심사결정

11. 자료 등의 열람·복사

가. 열람·복사 대상

○ 난민신청자는 본인이 제출한 자료, 난민면접조서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할 수 있음

○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열람이나 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하며, 심사의 공정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이나 복사를 제한할 수 있음

※ 녹음·녹화자료는 “II. 출입국항 난민신청 및 심사”부분 “7. 출입국항 면담조서 등 정보공개” 부분의 녹음·녹화자료 청구적격, 제공시기 및 제공방법 등 준용

나. 열람·복사(사본) 신청

○ 신청권자 : 난민신청자

※ 난민신청자가 자료 등의 열람·복사 신청을 위임*한 경우 아래 제출서류 징구

* 수임자의 범위 - 배우자, 직계혈족, 소송대리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민법 제14조의2에 따른 후견인

▶ 수임자 제출서류 - ① 배우자 및 직계혈족의 경우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난민신청자의 난민인정신청서 가족관계란에 기입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위임장 및 위임자와 수임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② 소송대리인, 법정대리인, 후견인은 위임장, 위임자 및 수임자의 신분증 사본,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난민신청자가 자료 등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열람·복사 신청서(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

○ 열람·복사 신청서에는 열람하고자 하는 자료 등을 분명히 밝혀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범위와 매수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함

다. 열람·복사 수수료

- 난민신청자가 자료 등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열람·복사신청서(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와 함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 수수료는 난민법 시행규칙 제7조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함
 - ※ 열람 1회당 500원, 복사 1매당 50원
- 청장 등은 인도적인 사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 수수료를 면제한 때에는 열람·복사 대장(붙임 26)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함

라. 자료 등의 열람 장소

- 청장 등은 난민신청자가 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장소(이하 '지정된 장소'라 함)를 마련하여야 함
- 자료 등의 열람을 신청한 사람은 지정된 장소에만 자료를 열람하여야 하며, 자료 등을 반출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됨
-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자료 등의 열람자가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열람에 참여하여야 함

마. 열람·복사 시기

- 난민신청자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면접이 끝난 후 곧바로 자료 등의 열람·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이에 응하여야 함
- 자료 등의 열람·복사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열람·복사의 요청이 쇄도하여 즉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나 복사기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신청자로 하여금 일시를 정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복사물을 수령하게 할 수 있음

바. 열람 및 복사의 제한

- 청장 등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난민신청자의 자료 등 열람·복사의 요청을 제한할 수 있음

- 동일한 자료의 열람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 자료 열람·복사의 용도 또는 목적에 맞지 않은 지나치게 많은 수량의 복사요구 등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지나치게 많은 양의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 신청으로 인하여 업무에 명백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열람의 시기를 지정하거나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누어 복사물을 교부할 수 있음
- 기타 열람·복사로 인해 심사의 공정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및 복사를 제한

사. 열람·복사 대장 작성 및 관리

- 열람 또는 복사 신청 내용과 처리 내용을 열람·복사 대장(붙임 26)에 작성하여 관리

아. 자료 등의 외부 제공

- 원칙적으로 난민신청자 및 법률상 대리인이 아닌 경우에는 난민심사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는 제한됨
 - ※ 난민법 제17조,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참고
- 다만 수사기관, 법원 등의 업무수행 목적 자료요청과 같이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제공 가능
 -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본부 협의 후 사안에 따라 결정

1. 체류관리 및 사범심사 일반원칙

가. 체류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불법체류기간 등 계산

※ 난민신청, 난민인정 결정 또는 인도적체류허가 결정 시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도록 안내

나. (각종 체류허가 등 수수료)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체류외국인과 동일하게 징수

○ 체류자격 부여

- 면제대상 : 난민신청자 등의 국내출생자녀
- 서류 : 국내병원 발급 출생증명서 등 국내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체류기간연장 및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 면제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
- ▶ 취업을 하기 어려운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 및 그 배우자
- ▶ 임산부, 9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및 그 배우자
- ▶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 ▶ 난민법 제40조에 따른 생계비를 지급받고 있는 사람
-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입주자

- 서류 : 진단서 등 각 대상별 관련사실 증명에 필요한 서류

○ 상기 면제대상 외에도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부에 승인 상신하여 면제

다. (위변조여권 및 밀입국 등) 위·변조 여권 행사, 밀입국 또는 국내 출생 등으로 여권이 없는 경우에는 위변조 여권 입수 경위, 밀입국 경위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기재한 사유서 징구

※ 난민신청 또는 최초 체류허가 시 사유서를 징구한 경우에는 그 이후 체류관리 과정에서는 사유서 제출 생략

라. 입국금지자 체류허가 시 조치 사항

1) (난민신청자) 최초 체류자격부여·변경·연장 시 본부(난민정책과) 승인 받아 체류허가, 본부 승인 받은 이후 체류허가는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권한으로 결정

※ 형사범으로 입국금지된 경우는 매 체류허가마다 본부 승인받아 체류허가

2) (인도적체류자·난민인정자 및 그 가족) 최초 체류허가 시 「입국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상의 입국금지 특별해제 절차에 따라 본부(출입국심사과, 난민정책과)에 입국금지 특별해제 승인 상신, 입국금지 특별해제 후 체류허가

※ 입국금지 특별해제 대상 중 [인도적 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기타 이에 준하는 인도적 사유가 인정되는 자'에 해당

마. 신원불분명 난민에 대한 기록관리(관련문서: 이민정보과-3013/17.7.14)

1) 공적 증명서류가 있는 경우

가) 적용대상 :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

나) 업무처리 절차

○ 체류업무담당자

①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접수·처리

⇒ 공적증명서(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등)를 근거로 등록사항 변경 처리

⇒ 생년월일 또는 성별 변경 시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재부여하고 성명만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 외국인등록번호 유지

※ 외국인등록번호 재부여 시에는 인적사항 변경 관련 내용을 참고사항에 반드시 입력하여 관리(변경이력 확인 시 필요)

⇒ 난민인정증명서 및 난민여행증명서(발급받은 자에 한함) 재발급 신청 안내

※ 등록사항변경신고 시 제출한 서류는 추후 사실관계 확인 시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반드시 이미지화하여 해당 등록정보에 저장

②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등 후속절차 진행

③ 난민업무담당자(사무소)에게 난민신청 및 난민인정 기록 정정 요청(공문으로 시행)

※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하고 추후 공문시행 가능

○ 난민업무담당자

① 체류담당 부서에서 발송한 기록정정 요청 공문에 따라 난민신청 및 난민인정 기록 정정

② 변경된 인적사항으로 난민인정증명서 등 재발급

※ 난민여행증명서 소지자의 경우 재발급 신청에 따라 재발급

2) 출생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공적증명서는 아니지만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

*출생증명서 발급기관이 국가기관이면 '1) 공적증명서류가 있는 경우'에 준하여 처리

가) 적용대상 : 난민인정자

나) 업무처리 절차

○ 난민업무담당자

① 난민인정증명서 인적사항 변경 신청 접수

② 본인인 제출한 서류, 진술 및 정황조사 등을 통해 실제 인적사항 확인

③ 난민신청 및 난민인정 관련 기록 수정

④ 변경된 인적사항으로 난민인정증명서 등 재발급

※ 대상자에게 14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할 것을 안내

○ 체류업무담당자

①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접수·처리

⇒ 변경된 인적사항으로 발급된 난민인정증명서를 제출받아 등록사항 변경 처리

②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등 후속절차 진행

3) 본인 진술 이외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가) 적용대상 : 난민인정자

나) 업무처리 절차

○ 난민업무담당자

- ① 난민인정증명서 인적사항 변경 신청 접수
- ② 면접 및 사실조사 등을 통해 인적사항 변경 가부 결정
- ③ 인적사항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난민신청 및 난민인정 관련 기록 수정
- ④ 변경된 인적사항으로 난민인정증명서 등 재발급
 - ※ 대상자에게 14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할 것을 안내
 - ※ 인적사항을 변경을 불허하기로 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사유 등 설명 후 종료

○ 체류업무담당자

- ①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접수·처리
 - ⇒ 변경된 인적사항으로 발급된 난민인정증명서를 제출받아 등록사항 변경 처리
- ②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등 후속절차 진행

바. 다른 법률의 적용

- 출입국심사, 체류관리, 사범심사 등과 관련하여 동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출입국관리법령 및 관련 지침에 따름
 - 각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권한이 있는 사항의 경우 인도적 사유의 유무 등 개별 판단*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
- * (예) 질환·자녀부양 등 인도적 사유, 체재 중 국가정황 변동 등

2. 난민신청자 체류관리 및 사범심사

가. 체류자격 부여·연장·변경 등

1) 체류자격 부여(→ 세분류 코드 G-1-5)

가) 대상

- 난민신청자로 국내 출생자 · 밀입국자 등 출입국관리법 제23조 해당자

나) 조치사항 등

- 기타(G-1-5, 1년 이내) 자격 부여

- 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의 체류기간 동일하게 부여

○ 제출 서류

- 신청서(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 여권,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 X 4.5cm) 1장
 - ※ 사진의 규격 등은 체류관리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난민인정신청 접수증(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가족관계 입증서류(난민신청 시 제출한 가족관계 입증서류로 같음 가능)
 - ※ 가족결합 사유 난민신청자에 한함
- 체류지 입증 서류
 - ☞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교회·난민지원시설·인권단체·UNHCR 등의 주거확인서 등
- 결핵검진확인서(결핵 고위험 19개 국가* 국민)
 - * ① 네팔 ② 동티모르 ③ 러시아 ④ 말레이시아 ⑤ 몽골 ⑥ 미얀마 ⑦ 방글라데시 ⑧ 베트남 ⑨ 스리랑카 ⑩ 우즈베키스탄 ⑪ 인도 ⑫ 인도네시아 ⑬ 중국 ⑭ 캄보디아 ⑮ 키르기스스탄 ⑯ 태국 ⑰ 파키스탄 ⑱ 필리핀 ⑲ 라오스
 - ※ 「외국인 결핵 환자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서 정한 결핵검진 확인서(진단서), 난민신청 시 결핵 포함된 건강진단서 제출한 경우 사본 첨부
 - ※ 난민신청 시 건강진단서 제출하지 않은 자는 자격변경 신청 시 건강진단서 제출 가능

다) 체류허가 및 사범심사의 특례

○ 난민신청자의 미성년 자녀가 난민신청(가족결합) 후 체류허가 신청한 경우

① 국내출생자(출생 후 90일 이내)

- (주신청자 : 합법 등록외국인) 체류허가(G-1-5, 1년 이내)
 - ※ 주신청자의 체류기간을 참고하여 체류기간 등 부여
- (주신청자 : 기한유예 또는 불법체류 중) 체류허가(G-1-5, 6월 이내)
 - ※ 주신청자의 체류기간을 참고하여 체류기간 등 부여

② 국내출생자(출생 후 91일 이후)

- (17세 미만⁴)이고 주신청자가 합법 등록외국인) 허가신청 등 의무자(출입국관리법 제79조) 과태료 처분 후 주신청자의 체류기간을 참고하여 체류자격(G-1-5, 1년 이내) 부여
- (17세 이상 19세 미만) 본 지침“난민신청 당시 불법체류자”처리방법 준용(단, 보호 관련 사항은 출입국관리법령 및 해당 지침에 따라 처리)

※ 주신청자의 체류기간을 참고하여 체류기간 등 부여

③ 국내출생자가 아닌 경우 : 일반적인 체류관리 기준에 따라 처리

○ 난민신청자의 국내출생 미성년 자녀가 난민신청을 하지 않고 체류허가 신청하는 경우

① (17세 미만이고 주신청자가 합법 등록외국인) 주신청자의 체류기간까지 체류허가(G-1-99 부여 등)

※ 단, 자녀가 출생한 날부터 90일 도과 불법체류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79조에 따라 허가신청 등 의무자 처벌 후 체류허가

동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출입국관리법령 및 해당 지침에 따라 처리

② (17세 이상 19세 미만) 일반적인 체류관리 기준에 따라 처리

○ 특정기간 내 특정언어 면접자 대상 특례

- 대상 : '15.9.1. ~ '18.6.30. 기간 내 아랍어로 면접을 본 이후 난민재신청하여 그 신청절차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거나, 아직 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 난민면접일을 기준으로 판단 (심사결정일이 아님), 난민면접을 2회 이상 본 경우에는 1번이라도 면접일이 기간 내면 해당됨
- ▶ 재신청 후 심사대기 중이거나, 이의신청/소송이 진행 중인 자도 포함됨
 - 이미 재신청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고 이의신청·소송 등 제소기간이 도과 하였거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는 대상이 아님
- ▶ 난민신청 횟수가 아닌 직전 난민신청일의 면접일을 기준으로 판단

4) 출입국관리법은 79조(허가신청 등의 의무자)의 연령(17세 미만) 규정 준용

- 조치 : 현 체류상황을 불문하고 체류자격 부여

※ '20.4.10. 난민정책과 업무연락 '특정 난민재신청자 업무처리 관련 지시' 참고

2) 체류자격 변경허가(→ 세분류 코드 G-1-5)

가) 대상

○ 난민신청자로 출입국관리법 제24조 해당자

나) 조치사항 등

○ 기타(G-1-5, 6개월 내지 1년) 자격 변경

○ 제출 서류

- 신청서(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소지자에 한함)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 X 4.5cm) 1장

※ 사진의 규격 등은 체류관리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난민인정신청 접수증(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가족관계 입증서류

※ 가족결합 사유 난민신청자에 한하며, 난민신청 시 제출한 가족관계 입증서류로 갈음 가능

- 체류지 입증 서류

☞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교회·난민지원시설·인권단체·UNHCR 등의 주거확인서 등

- 결핵검진확인서(결핵 고위험 19개 국가 국민, 결핵지침 시행 후 최초 체류허가 신청인 경우)

※ 「외국인 결핵 환자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서 정한 결핵검진

확인서(진단서), 난민신청 시 결핵 포함된 건강진단서 제출한 경우 사본 첨부

※ 난민신청 시 건강진단서 제출하지 않은 자는 자격변경 신청 시 건강진단서 제출 가능

다) 체류허가의 특례

○ 기존 체류자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난민인정절차 희망자

- 난민인정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기존 체류자격 유지 요건을 충족하고
신청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기존 체류자격(D-2, D-8 등) 유지 가능

※ 다만, 체류자격 성질 상 난민신청 지위를 가질 수 없는 체류자격(A계열)
소지자는 기타(G-1-5)자격으로 변경 조치

○ 특정기간 내 특정언어 면접자 대상 특례

- 대상 : '15.9.1. ~ '18.6.30. 기간 내 아랍어로 면접을 본 이후
난민재신청하여 그 신청절차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거나, 아직
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 난민면접일을 기준으로 판단 (심사결정일이 아님), 난민면접을 2회 이상
본 경우에는 1번이라도 면접일이 기간 내면 해당됨
- ▶ 재신청 후 심사대기 중이거나, 이의신청/소송이 진행 중인 자도 포함됨
 - 이미 재신청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고 이의신청·소송 등 제소기간이 도과
하였거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는 대상이 아님
- ▶ 난민신청 횟수가 아닌 직전 난민신청일의 면접일을 기준으로 판단

- 조치 : 현 체류상황을 불문하고 체류자격 변경허가

※ '20.4.10. 난민정책과 업무연락 '특정 난민재신청자 업무처리 관련 지시' 참고

3) 체류기간 연장 허가(→ 세분류 코드 G-1-5)

가) 대상

○ 난민신청자(G-1-5)로 난민인정절차 (소송 포함) 진행 중인 자

-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이의신청의 제기기간*이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이의신청 제기기간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나) 조치사항 등

○ (허가기간) 6개월 내지 1년(원칙)

※ 단, 소송 등 수행 예정기간, 기타 인도적인 사유 등을 고려하여 청장 등이 법정기한(1년) 내에서 탄력적으로 허가기간 부여 가능

○ 제출 서류

- 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소지자에 한함)

- 체류지 입증 서류

☞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교회·난민지원시설·인권단체·UNHCR 등의 주거확인서 등

-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소송제기 관련 증명서류

※ 소송제기 후 최초 연장의 경우 '소접수증명원' 또는 '소계속증명원', 이후 연장 시에는 '소계속증명원'을 제출받아 소송이 계속 진행 중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체류기간 연장

- 결핵검사서(결핵 고위험 19개 국가 국민으로 지침 시행 후 최초 연장인 경우)

※ 발급기관 등에 관한 사항은 G-1(난민신청자) 자격변경 시와 동일

다) 체류기간 연장의 특례

○ 특정기간 내 특정언어 면접자 대상 특례

- 대상 : '15.9.1. ~ '18.6.30. 기간 내 아랍어로 면접을 본 이후 난민재신청하여 그 신청절차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거나, 아직 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 난민면접일을 기준으로 판단 (심사결정일이 아님), 난민면접을 2회 이상 본 경우에는 1번이라도 면접일이 기간 내면 해당됨
- ▶ 재신청 후 심사대기 중이거나, 이의신청/소송이 진행 중인 자도 포함됨

- 이미 재신청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고 이의신청·소송 등 제소기간이 도과하였거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는 대상이 아님
- ▶ 난민신청 횟수가 아닌 직전 난민신청일의 면접일을 기준으로 판단

- 조치 : 현 체류상황을 불문하고 체류자격 변경허가

※ '20.4.10. 난민정책과 업무연락 '특정 난민재신청자 업무처리 관련 지시' 참고

나. 난민신청자 취업허가

1) 취업허가 대상

○ 난민법 상 난민신청자로 난민신청 후 6개월 경과자 원칙

※ 입증자료 제출 지연, 소재 불명, 보호 등 신청자 귀책사유로 인한 기간은 6개월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 다만, 난민신청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청장 등이 특히 인도적인 배려(임산부, 장애인 등 부양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취업허가 가능

2) 허가기준 등

○ (취업 허용 업종) 아래“취업제한 업종”을 제외한 단순노무 업무

【취업제한 업종】

- 건설업(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건설업만 기재되어 있으면 취업 불가, 건설업·제조업 등 복합 업종인 경우 건설업 취업불가 조건으로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스티커 하단에 “건설업 취업 불가” 날인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에 취업하는 행위
-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는 행위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과의 교습 행위
- 기타 난민신청자의 신분을 벗어난 활동 및 기타 법무부장관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

○ (허가 절차) 출입국관리법 제20조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절차 준용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스티커 하단에 “건설업 취업 불가” 날인

- 난민신청자가 그 신분을 유지하는 동안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자격외 취업활동 허가

○ (유의 사항) 취업허가는 사전 허가 사항임

- 난민신청자가 외국어회화강사(E-2) 등 전문분야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체류외국인과 동일한 서류 등 징구 및 절차 등 진행
- 근무처(고용주)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필요
- 고용주와 사용자가 동일하여야 하며 취업알선 업체, 인력파견 업체 등에 소속되어 일당제 또는 파견제 형식의 취업 불가
- 외국인 불법고용주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 제한기준 (체류관리과-5468, 2017. 9. 13.) 적용

○ 제출 서류

- 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소지자에 한함)
-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장 관련 서류

※ 난민신청자가 외국어회화강사(E-2) 등 전문분야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체류외국인과 동일한 서류 등 징구 및 절차 등 진행

다. 범위반 등 난민신청자 체류허가 및 사범처리 기준 등

1) 난민신청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변경·연장 등 제한자 처리기준

(→ [붙임 27 도식] 참조)

가) 기본원칙

- 청장 등은 난민신청자의 체류실태, 과거 범법사실, 범위반 경위, 인도적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완화하여 심사결정 가능
- 난민신청 시 체류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여 체류허가 등 신청 시 기간 도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기관 사정에 따라 체류허가 신청

(가)접수 등 사안별 조치

- 방문예약제 개선안 알림(체류관리과-2312, 2019.04.05.)을 참고하여 업무 처리

※ 부득이한 사유(사고, 질병치료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로 체류허가 등 신청 시 체류기간 초과상태가 된 경우 난민신청일 기준으로 완화하여 처리 가능

나) 난민신청 당시 합법체류자

○ 적용대상

- 대한민국에서 1년 이상 체류자로 체류기간 만료일 임박(4개월 이내)자, 난민재신청자,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을 받은 자,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을 받은 자, 출국권고 또는 출국명령을 받은 자가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

○ 사안별 조치사항

①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 결정 통지 후 출국기한 유예 대상

- 대한민국에서 1년 이상 체류자로 체류기간 만료일 임박(4개월 이내)자, 재신청자,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자가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

※ 사무소 재방문에 따른 민원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 통지, 14이내 출국기한 명시) 및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출국기한유예(3개월 이내) 절차 동시 진행

② (원처분에 따른) 출국기한 유예 대상

-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을 받은 자, 출국권고 또는 출국명령을 받은 자

출국기한 유예 처분 권한 기관 : 최초 처분청이 아니더라도 체류지 변경사실이 확인되면 변경된 체류지 관할청 등에서 출국기한 유예

【처리 예시】

- 난민신청자가 A청에서 출국기한 유예처분 받고 B청 관할로 체류지가 변경된 경우, B청의 사범(체류)담당자는 출국기한 유예 조치(3개월)하고, 변경된 주소지 서류를 ICRM에 스캔하고 - 「난민」-「참고사항」에 별도 기재
 - 제목 : 출국기한 유예자 체류지 변경
 - 참고사항/사유 : 변경된 주소지 기재

다) 난민신청 당시 불법체류자

○ 통고처분(범칙금) 면제 후 출국명령 대상

- 자진출석 후 최초로 난민신청한 자로 난민신청 후 체류허가 등 신청일 기준 불법체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 (자진출석, 최초 난민신청 한 자로) 합법체류 중 난민신청 하였으나 체류허가 등 신청 시 불법체류기간 30일 이내인 경우도 위에 준하여 처리

○ 통고처분(범칙금 부과) 후 출국명령 대상

- 자진출석 후 최초로 난민신청한 자로 난민신청 후 체류허가 등 신청일 기준 불법체류 기간이 31일 이상인 경우

※ (자진출석, 최초 난민신청 한 자로) 합법체류 중 난민신청 또는 불법체류 기간 30일 이내 난민신청 하였으나 체류허가 등 신청 시 불법체류기간 31일 이상인 경우도 위에 준하여 처리

○ 보호조치 대상

- 불법체류 중 단속에 적발된 후 난민신청한 경우
- 출국명령을 받은 자가 불법체류 중 난민신청한 경우
- 불법체류 중 자진출석 후 난민재신청 하는 경우
- 그 외 출입국관리법 제51조에서 정한 보호 요건을 충족한 경우
- (특례) 청장 등은 용의자의 체류실태, 과거 범법사실, 범위반 경위, 인도적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완화하여 심사결정 가능

2) 난민심사 진행 중 체류기간 도과자 처리 기준

○ 기본원칙

- 난민신청 후 기타(G-1-5) 자격 등으로 체류하던 자로 난민심사 진행 중이고 체류기간 도과된 경우 하단의 기준에 따라 조치

○ 통고처분(범칙금 부과) 후 체류허가 대상

- 불법체류기간에 따라 통고처분 후 체류허가
 - ※ 소송 등 수행 예정기간, 기타 심사진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체류기간 연장

○ 통고처분(범칙금 부과) 후 출국명령 대상

-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 후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사람이 출국기한 도과 후 30일 이내인 경우
 - ※ 난민인정 절차 종료 시까지 3개월 이내에서 출국기한 유예

○ 보호명령 대상

- 출석요구서가 발부된 사람으로, 1년 이상 불법체류 후 자진출석한 경우
- 기타(G-1-5)자격 체류기간 도과 후 단속에 적발된 경우
-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사람이 출국기한 도과 후 31일 이상인 경우
(다만, 단속에 적발된 경우는 도과기간에 상관없이 보호조치)
- 출국명령을 받은 자가 불법체류 중 자진출석 또는 단속에 적발된 경우
- 그 외 출입국관리법 제51조에서 정한 보호 요건을 충족한 경우
 - ※ 다만, 난민인정 심사 종료 시까지 강제퇴거명령 집행 유예

3) 위·변조 여권(사증·심사인 위변조 포함) 행사자 및 밀입국자 조치사항

4) 밀입국자에 대한 체류허가 및 사범심사

5) 난민신청자 불법취업자 처리방안 (취업허용 업종에 불법취업 한 경우)

가) 난민인정 신청일 이후 6개월 이내 취업한 경우(단속 포함)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외국인고용의 제한) 위반으로 통고처분
- 통고처분 불이행시 고발 조치

나) 난민인정 신청일 이후 6개월 경과 후 취업허가 없이 취업한 경우(단속 포함)

- 출입국관리법 제20조(체류자격외 활동) 위반으로 통고처분
- 통고처분 불이행시 고발 조치

다) 출국명령 또는 출국유예를 받은 자가 기한 내 취업 중 단속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외국인고용의 제한) 위반으로 통고처분
- 통고처분 불이행시 고발 조치

라) 체류기간 또는 출국유예기간 도과 후(불법체류 중) 취업 중 단속

- 원칙적으로 출입국관리법 제51조에 따라 보호조치 후 난민심사 진행

마) 범칙금 감면

- 난민신청 사유, 범칙금 부담 능력, 불법취업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범칙금 감면 여부 결정

※ 단, 난민신청자가 취업제한 업종에 불법취업 하는 경우에는 일반 체류외국인에 준하여 사범처리

6) 벌금형 확정자 처리방안

가) 기본원칙

- 벌금형이 확정된 난민신청자는 「벌금형 확정 외국인 심사결정 기준안(이민조사과-4072, '14. 8. 28.)」에 따라 처리

- 다만, 출국조치 대상은 난민인정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강제퇴거 집행 보류

나) 난민인정 절차 종료 전 강제퇴거 집행

- 연령, 범죄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 범죄 경력,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을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강제퇴거 집행

※ 난민신청자에 대한 강제퇴거 집행 사전보고 간소화 지시(이민조사과-1634, '19. 3. 19.) 참조

- 법적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62조 제4항(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7) 국내 입국 전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행위자 처리방법

☞ 관련 문서 : 난민과-13572(2018. 10. 19.), 난민업무 처리 관련 지시

가) 적용대상

-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살인, 성폭행, 무장 강도, 마약거래, 마약투약 등)를 저지른 난민신청자(면접과정에서 진술한 경우 포함)

나) 조치사항

- 강제퇴거 명령(보호조치) 및 퇴거 집행
 - ※ (적용법조)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제62조 제4항
- 강제퇴거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소송이 인용된 경우에는 본안 소송 확정시까지 퇴거 집행 보류

다) 업무처리 절차

- 체류 · 사범 · 보호 담당자 조치사항
 - (체류업무 담당) ICRM(참고사항 등) 조회 결과, 난민인정 제한(배제) 강제퇴거 대상자를 발견하면 사범업무 담당부서로 인계
 - (사범 · 보호업무 담당) 난민인정 제한(배제) 강제퇴거 대상자를 강제퇴거 명령(보호조치) 하는 경우 또는 퇴거 집행 이전, 지체 없이 본부(난민정책 과, 이민조사과) 서무 담당자에게 대상자(인적사항 등) 메모 보고

※ 난민신청자에 대한 강제퇴거 집행 사전보고 간소화 지시(이민조사과 -1634, '19. 3. 19.) 참조

○ 출입국항 조치사항

- 난민인정 제한(배제) 대상자가 출국하였다가 입국할 경우 입국불허 조치
- 난민인정 제한(배제) 대상자가 자진 출국할 경우 사범심사 결정(출국명령) 후 출국 조치

※ 출입국항에서 입국불허 또는 출국명령 조치 하는 경우 지체 없이 본부(난민정책과) 서무 담당자에게 대장자(인적사항 등) 메모 보고

○ 기타 사항

- ICRM 참고사항에 입력되지 않았으나 업무처리과정에서 난민인정의 제한(배제)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본부(난민정책과)에 보고하고 본부 지시에 따를 것

8) 신원확인 등 난민신청자의 보호 및 해제절차

가) 신원확인을 위한 보호

○ 대상

- 난민신청자가 난민 인정을 받을 목적으로 신원을 은폐하여 여권 등 신분증을 고의로 파괴하거나 거짓의 신분증을 행사한 자
 - 난민법상 신원확인의 대상은 난민신청자이므로, 출입국항 신청자 중에서 회부여부를 심사 중인 사람은 신원확인을 위한 보호대상이 아님
- ※ 다만, 난민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여 조건부 입국허가한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신원확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 가능

○ 신원확인을 위한 보호 절차

- 출입국관리법 제51조에 따라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보호

○ 신원확인을 위한 보호의 연장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원확인이 지체되는 경우 10일 범위에서 청장 등으로부터 보호기간 연장허가서를 발급받아 보호기간 연장

○ 신원확인을 위한 보호의 해제

- 난민신청자의 신원이 확인되거나, 10일 이내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보호를 해제 하여야 함

○ 보호 관련 규정의 준용

- 신원확인을 위한 보호에 관하여 난민법, 난민법 시행령, 난민법 시행규칙 및 동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령 및 해당 지침에 따라 처리

○ 행정사항

-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신원확인을 위해 보호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

나) 보호의 일시해제

○ 대상

- 보호 중인 난민신청자가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소송에서 승소(1심 또는 2심)한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 유지, 공공복리,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제외

- 기타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보호 일시해제가 불가피 한 경우

○ 보호 일시해제 절차

- 보호 일시해제를 하는 경우 보증금 부담능력이 없는 자는 난민신청자 신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증금 감액 또는 신원보증인의 보증으로 보호 일시해제
- 보호 일시해제의 절차는 출입국관리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9) 난민소송 제기자 등 조치사항

가) 난민소송 제기자

- 난민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 조치
- 다만, 소송 제기자가 '사정변경 없는 재신청자 등' 유형에 해당하면 아래 '소송 남용자에 대한 조치사항' 준용

나) 국가승소 확정자

- 체류기간 연장 불허, 불허결정 통지서에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출국기한 명시

다) 소송 남용자에 대한 조치사항

- (소송 남용 사례) 추후보완 항소(상고)장 또는 (재)항고장 제출한 경우, 소송종료 후 같은 처분에 대해 반복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난민불인정처분 1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임

- 체류기간연장 불허 후 소송절차 종료 시까지 30일 범위 내에서 출국기한 유예
- 출국기한 유예 중인 경우 소송절차 종료 시까지 30일 범위 내에서 출국기한 유예
- 이미 소송종결에 따른 출국명령을 받은 경우 소송절차 종료 시까지 30일 범위 내에서 출국기한 유예

10) 체류허가 및 사범처리의 특례

가) 인도적 사유 등 개별 참작사유가 있는 경우

- 불법체류, 불법취업 등 범위반 사실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부 승인 상신하여 처리
- ※ 지침 3쪽 및 71쪽의 일반원칙 참조(동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출입국관리법령 및 관련지침에 따름)

나) 특정기간 내 특정언어 면접자 대상 특례

- 대상 : '15.9.1. ~ '18.6.30. 기간 내 아랍어로 면접을 본 이후 난민재신청하여 그 신청절차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거나, 아직 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 난민면접일을 기준으로 판단 (심사결정일이 아님), 난민면접을 2회 이상 본 경우에는 1번이라도 면접일이 기간 내면 해당됨
- ▶ 재신청 후 심사대기 중이거나, 이의신청/소송이 진행 중인 자도 포함됨
 - 이미 재신청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고 이의신청·소송 등 제소기간이 도과하였거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는 대상이 아님
- ▶ 난민신청 횟수가 아닌 직전 난민신청일의 면접일을 기준으로 판단

- 조치 : 불법체류 또는 불법취업한 경우 범 위반기간에 관계없이

통고처분 면제 후 체류허가

- 통고처분 면제는 최초 1회에 한하며, 향후 범질서 위반 시 특례 미적용
 - 단속에 적발된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 일반 형사범 등 기타 범 위반자, 보호 중 신청자도 해당사항 없음
- ※ '20.4.10. 난민정책과 업무연락 '특정 난민재신청자 업무처리 관련 지시' 참고

3. 인도적체류자 체류관리

가. 체류자격 부여·연장·변경 등

1) 체류자격부여(→ 세분류 코드 G-1-6)

가) 대상

-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았으나 난민법 제2조 3호(인도적체류자)에 해당하는 자
-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자, 보호 중인 자, 밀입국자 등 출입국관리법 제23조 적용 대상자

나) 조치사항 등

- 인도적체류자(G-1-6, 1년 이내) 자격 부여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족의 체류기간 동일하게 부여
- 제출 서류
- 신청서(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 여권,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 X 4.5cm) 1장
- ※ 사진의 규격 등은 체류관리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난민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 체류지 입증 서류
- ☞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교회·난민지원시설·인권단체·UNHCR 등의 주거확인서 등

- 결핵검진확인서(결핵 고위험 19개 국가 국민, 결핵지침 시행 후 최초 체류허가 신청인 경우)

※ 「외국인 결핵 환자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서 정한 결핵검진 확인서(진단서)

○ 인도적체류자 취업허가 안내문 교부(붙임 19)

- 인도적체류허가 시 안내문을 이미 교부 받은 경우는 생략 가능

2) 체류자격 변경허가(→ 세분류 코드 G-1-6)

가) 대상

○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았으나 난민법 제2조 3호(인도적체류자)에 해당하는 자

- 체류자격 정정이 필요하거나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나) 조치 사항 등

○ 난민신청자(G-1-5) 자격 소지자 : 체류자격 정정(세분류 코드 정정(G-1-6) 후 체류기간 연장(1년 이내))

- 기타(G-1)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인 난민신청자가 체류자격의 변동 없이 세분류 코드만 인도적체류자(G-1-6)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시스템 상에는 체류신청 및 허가사항란에는 “자격변경”란으로 설정하여 입력할 것(정정 후 체류기간 연장 조치한 경우 연장 수수료 부과)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의 체류기간 동일하게 부여

○ 난민신청자(G-1-5) 자격 외 체류자격 소지자 :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 조치

- 다른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인 자가 기존 체류자격을 계속하여 유지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체류자격 변경 불요

○ 제출 서류

- 신청서(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 X 4.5cm) 1장(등록증 재발급 시)
 - ※ 사진의 규격 등은 체류관리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체류지 입증 서류
 - ☞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교회·난민지원시설·인권단체·UNHCR 등의 주거확인서 등
- 결핵검진확인서(결핵 고위험 19개 국가 국민, 결핵지침 시행 후 최초 체류허가 신청일 경우)
 - ※ 「외국인 결핵 환자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서 정한 결핵검진 확인서(진단서)
- 인도적체류자 취업 허가 안내문 교부(붙임 19)
 - 인도적체류허가 시 안내문을 이미 교부 받은 경우는 생략 가능

3) 체류기간 연장허가(▶ 세분류 코드 G-1-6)

가) 대상 : 인도적체류자(G-1-6)자격 소지자로 아래 해당자

- 국내 체류를 허가한 인도적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나) 조치사항 등

- (허가기간) 1년 이내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족의 체류기간 동일하게 부여
- 인도적체류자 취업허가 안내문 교부(붙임 19)
 - 동 개정지침 시행이전 인도적 체류허가 받고 국내 체류 중인 자를 포함하여 변경된 양식의 인도적체류자 취업허가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체류기간 연장 시 교부
- 제출 서류
 - 신청서(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체류지 입증 서류

☞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교회·난민지원시설·인권단체·UNHCR 등의 주거확인서 등

4) 체류지 변경신고 및 재입국허가

○ 난민신청자 체류지 변경신고 및 재입국허가 준용

나. 인도적체류자 취업허가

1) 기본원칙

○ 통상적인 단순노무 등 활동에 한정하되 전문직은 해당 법령에 따른 요건 충족 시 취업 가능

※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2) 허가 기준 등

○ (허가 기간)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최대 1년(계속 연장 가능)

○ (취업허용 업종) 아래 '취업제한 업종'을 제외한 단순노무

【취업제한 업종】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에 취업하는 행위
-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는 행위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과외 교습 행위
- 기타 난민신청자의 신분을 벗어난 활동 및 기타 법무부장관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

○ (조치사항) 출입국관리법 제20조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절차 준용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내용과 허가기간 명시

- 건설업 취업의 경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사항 입력 시 비고란에 “인도적체류자” 입력 및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서 교부

※ 건설업 취업 시 사전이수 의무사항인 “외국인노동자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신청 시 대상자의 체류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서 발급

○ (유의 사항) 취업허가는 사전 허가 사항임

- 인도적체류자가 외국어회화강사(E-2) 등 전문분야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체류외국인과 동일한 서류 등 징구 및 절차 등 진행
- 근무처(고용주)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필요
- 고용주와 사용자가 동일하여야 하며 취업알선 업체, 인력파견 업체 등에 소속되어 일당제 또는 파견제 형식의 취업 불가
- 외국인 불법고용주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 제한기준 (체류관리과-5468, 2017. 9. 13.) 적용

○ 제출서류

- 신청서(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장 관련 서류

다. 인도적체류자 가족결합(→ 세분류 코드 G-1-12)

1) 기본원칙

- 인도적체류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인도적체류자와 함께 국내에 체류하고자 체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아 기타(G-1-12, 인도적체류자 가족결합) 자격 부여

※ 인도적체류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독자적인 난민신청 사유 없이 오로지 가족결합을 목적으로 난민신청하는 경우 난민신청 접수 없이 체류허가 신청 안내

-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 중인 인도적체류자의 가족에 대한 가족결합을 인정하되,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에 대한 사증발급은 불인정

- 인도적체류자의 가족 등이 난민인정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도적체류자와 가족결합 체류 불허

2)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인도적체류자가 국내 체류 중 혼인으로 인한 새로운 신분관계 형성 시 혼인의 구체적 경위 및 진정성 등을 판단
 - ※ 인도적체류자가 본국의 배우자 외에 국내에서 새로운 배우자와 혼인(중혼)한 경우에는 국내 「민법」에 따라 배제
- (자녀) 미성년 자녀(국내 출생 자녀 포함)에 한정, 미성년 자녀가 혼인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
- (부모, 형제자매) 원칙적으로 제외, 다만 부모의 경우 국내에 동반 입국하여 함께 난민신청 시 신병치료, 자녀양육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에 포함(개별적으로 입국한 경우는 제외)

3) 체류자격 부여·변경 허가

가. 부부 및 친생자 관계 등 가족관계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실태조사 등을 거쳐 가족관계의 진정성 확인 후 체류허가

나. 제출서류

- 신청서(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 여권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 X 4.5cm) 1장
 - ※ 사진의 규격 등은 체류관리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가족관계 입증서류
 - ☞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증명서, 혼인신고 수리증명서 등 혼인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미성년 자녀) 출생증명서 등 부모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체류지 입증 서류

- ☞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교회·난민지원시설·인권단체·UNHCR 등의 주거확인서 등

○ 결핵검진확인서(결핵 고위험 19개 국가 국민)

- ※ 「외국인 결핵 환자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서 정한 결핵검진 확인서(진단서)

4) 체류기간 연장 허가

○ 체류기간 연장 기간

- 매회 1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가능
- 인도적체류자가 국내 체류하는 동안 체류기간 연장허가 가능

5) 취업허가

- 인도적체류자에 대한 취업허가 절차 및 기준 준용

6) 불법체류 중 인도적체류자 가족결합(G-1-12) 신청자 처리방법

○ 불법체류기간 계산

- 체류허가 신청일 기준으로 불법체류기간 계산

○ 통고처분 면제(범칙금 면제) 대상

- 자진출석한 사람으로 국내 체류기간이 입국일로부터 1년 이내이고 불법체류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 통고처분(범칙금 부과) 대상

- 원칙적으로 상기 통고처분 면제 대상을 제외하고는 통고처분 후 체류허가

- 동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령 및 지침에 따름

라. 법 위반자 처리방법

1) 일반사항

-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을 위반한 자는 출입국관리법령 및 해당 지침에 따라 처리

2) 인도적체류자 불법취업자 처리방안

가) 일반원칙

- 인도적체류자가 취업제한 분야에 취업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령 및 해당 지침에 따라 처리(단, 건설업 취업자의 경우 적발 시 통고처분 후 체류허가), 취업제한 분야 이외 취업자는 아래 기준에 따라 처리

나) 인도적체류자가 취업허가 없이 취업한 경우(단속 포함)

- 출입국관리법 제20조(체류자격외 활동) 위반으로 통고처분 후 체류허가
- 통고처분 불이행시 고발 조치

마. 인도적 체류자 체류허가 취소 및 기간연장 등 불허

1) 체류허가 취소 또는 기간연장 등 불허 사유

- 거짓 서류의 제출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경우
-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경우
- 본국의 사정 변경으로 본국에 돌아갈 수 있게 된 경우
- 인도적 체류허가 이후에 난민인정의 제한, 취소 및 철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상응하는 법 위반 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기타 사정 변경으로 더 이상 인도적 체류를 허가할 필요가 없다고 법무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2) 절차

가) 체류허가 취소자 : 출입국관리법 제89조 따라 처리

- 출입국관리법 제68조에 따른 출국명령(발부일로부터 30일 범위 내 출국기한)

나)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자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33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통지서(발급일로부터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출국기한 명시)

4. 난민인정자 체류관리

가. 체류자격 부여·연장·변경 등

1) 체류자격 부여(→세분류 코드 F-2-4)

가) 대상 : 난민법 제2조 2호(난민인정자)에 해당하는 자

-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자, 보호 중인 자, 밀입국자 등 출입국관리법 제23조 해당자

※ 난민임시상륙허가를 받은 사람이 난민으로 인정된 후 입국을 허가 하는 경우에는 난민임시상륙허가서 회수

나) 조치사항 등

- 난민인정자(F-2-4, 3년) 자격 부여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의 체류기간과 동일하게 부여

※ 보호 중 난민인정 받은 자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보호해제 후 체류자격 부여
→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2(난민에 대한 형의 면제)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받아 보호된 외국인의 형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하고 보호를 해제하여야 함

다) 제출 서류

- 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 여권
- 난민인정증명서(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 X 4.5cm) 1장
※ 사진의 규격 등은 체류관리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체류지 입증 서류

- ☞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교회·난민지원시설·인권단체·UNHCR 등의 주거확인서 등
- 결핵검진확인서(결핵 고위험 19개 국가 국민, 결핵지침 시행 후 최초 체류허가 신청인 경우)
 - ※ 「외국인 결핵 환자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서 정한 결핵검진 확인서(진단서)

2) 체류자격 변경허가(→세분류 코드 F-2-4)

가) 대상 : 난민법 제2조 2호(난민인정자)에 해당하는 자

-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나) 조치사항 등

- 난민인정자(F-2-4, 3년) 자격 변경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족의 체류기간과 동일하게 부여

다) 제출서류

- 신청서(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 여권
- 난민인정증명서(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 체류지 입증 서류
 - ☞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교회·난민지원시설·인권단체·UNHCR 등의 주거확인서 등
- 결핵검진확인서(결핵 고위험 19개 국가 국민, 결핵지침 시행 후 최초 체류허가 신청인 경우)
 - ※ 「외국인 결핵 환자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서 정한 결핵검진 확인서(진단서)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 X 4.5cm) 1장
 - ※ 사진의 규격 등은 체류관리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름

3) 체류기간 연장허가(→세분류 코드 F-2-4)

가) 대상 : 난민인정자(F-2-4)자격 소지자로 아래 해당자

- 국내 체류를 허가한 난민인정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나) 조치사항 등

- 난민인정자(F-2-4, 3년 범위 내) 자격으로 기간 연장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족의 체류기간 동일하게 부여

다) 제출서류

- 신청서(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체류지 입증 서류

☞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교회·난민지원시설·인권단체·UNHCR 등의 주거확인서 등

4) 체류지 변경신고

- 일반외국인 체류관리 절차 준용

5) 난민인정자의 취업활동

- 난민인정자는 거주(F-2)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음

나. 난민인정자 영주자격 변경(→세분류 코드 F-5-27)

1) 허가권자 : 법무부장관

- 난민인정자가 영주자격 변경을 신청하면 본부에 승인 상신

- 난민인정자로서 영주자격 변경 등 심사와 관련하여 동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출입국관리법령 및 해당 지침에 따름

2) 허가 요건(아래 ①~⑤ 모두 충족)

- ① 영주자격 신청일 기준으로 난민인정자(F-2-4) 자격으로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
 - ※ 완전 출국한 사실 없이 계속하여 체류 중이어야 하며, 재입국허가(면제 포함)를 받고 출국한 후 3개월 이내 재입국한 경우는 국내체류기간으로 인정
- ②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 ③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 ④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이상 또는 가계 자산이 중위수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 ⑤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에 거주하는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 출입국관리법 제39조에서 정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종합평가 합격

3) 제출서류

가) 공통서류

- 신청서(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 여권, 외국인등록증
 - ☞ 생명과 신체의 급박한 위협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경우, 국내출생 자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여권을 소지하지 못한 경우 또는 위·변조여권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여권 생략(자격변경 및 자격부여 시 제출한 사유서 확인)
- 본국이 아닌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체류국 정부가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본국 발행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은 생략)

나) 기본소양(한국어 요건) 관련 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또는 종합평가 합격 증빙서류

다) 생계유지 능력 입증 서류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이상 또는 가계 자산이 중위수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4) 영주자격 변경 제한 대상

- 범칙금 및 벌금형을 받은 자는 「체류관리 제한 통합기준 (체류관리과 - 2626호, 2014.05.20.)」 적용
-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람
- 해외범죄경력 확인에 따른 영주자격변경의 제한 대상자

5) 난민인정자로서 영주자격 상실자 등 처리 방법

- 강제퇴거가 결정되어 영주자격이 상실된 난민인정자의 경우 동 지침 강제송환의 금지(2p) 부분 참고하여 처리

다. 난민여행증명서 신청 및 발급

1) 기본사항

가) 발급 대상

-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난민인정을 받은 자

나) 발급 목적

- 난민인정자가 출국하려고 할 때에는 그의 신청에 의하여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 다만, 그의 출국이 대한민국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발급하지 않음

다) 발급 시기

○ 발급 대상자가 출국하고자 하여 발급신청을 한 때

라) 유효기간

○ 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년(체류허가 기간과 상관없음)

마) 신청

○ 발급 신청인은 난민여행증명서 발급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6호의11 서식)에 제출 서류를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하 청장 등)에게 제출

○ 제출서류

- 난민인정증명서 사본 1부
-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에 한함)
- 반명합판 천연색 사진(3.5cm X 4.5cm) 1장
※ 사진의 규격 등은 체류관리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수수료 1만원

바) 심사

○ 청장 등은 난민여행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야 함

- 신청인의 난민인정의 취소 여부 또는 난민인정 취소대상인지 여부
- 그의 출국이 대한민국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5 제4항*에 따라 입국 기간(3개월 이상 1년 미만)을 특히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 법무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3개월 이상 1년 미만의 범위에서 입국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할 수 있음

사) 발급 결정 및 발급 요청

○ 청장 등은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조폐공사에 난민여행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다음 사항을 송부하여 난민여행증명서 발급의뢰를 하여야 함

- 난민여행증명서 허가 정보 : 발급번호, 발급일자, 만료일
- 신청자 정보 :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출생지, 신청자 사진
 - ※ 한국조폐공사는 접수된 데이터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검증 수단이 없으므로 데이터 송부 시 송신 데이터의 정확성 및 신청자 사진 규격 준수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함
- 단, 청장 등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8조의10(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등 사무의 대행) 제6항 제3호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신청인에게 그 이유 등을 통지함

아) 교부

- 청장 등은 난민여행증명서 발급대장(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6호의13 서식)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인수증에 서명을 하게 한 후 난민여행증명서를 교부함
 - ☞ 인수증은 출입국관리시스템의 '인수증 출력' 탭에서 출력 가능
 - ※ 난민여행증명서 교부 시 체류기간 내 재입국하도록 안내, 체류기간 내 재입국하지 않을 경우 체류자격 변경 등 절차를 거쳐야 함을 안내

2)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가) 신청

- 난민인정자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안에 입국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의 제출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함

나) 제출서류

-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6의14 서식)
-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

다)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시기

-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만료일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만료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난민인정자의 체류기간을 고려하여

6개월 범위에서 유효기간 연장 허가

※ (예시)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이 2014. 1. 31.인 난민인정자(체류기간 만료일 2014. 7. 31.)가 2014. 3. 1. 재외공관에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한 경우 2014. 7. 31.까지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허가

- 단, 체류기간이 이미 도과된 경우에는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불허
- 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난민여행증명서 재발급 받도록 안내

라) 조치사항

⇒ 재외공관은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접수한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유효기간을 연장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

-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 연장 란에 유효기간 연장사항 기재
- 법무부장관에게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
- 법무부장관은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보고를 받은 때에는 청장 등에게 통보함

3) 재입국허가

- 유효기한 내 횡수 제한 없이 재입국 가능
-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월 이상 1년 미만으로 국내 입국기간을 한정할 수 있음
 - 입국기간을 한정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인에게 고지
- 체류기간 도과 후 입국한 경우 입국 시 공항만청장(사무소장)은 국적에 따라 사증면제, 무사증 또는 단기 일반(C-3-1, 30일) 자격으로 입국허가
 - ※ 입국 후 체류지 관할 사무소에서 체류기간 도과 전 체류자격 변경 (F-2-4)절차를 받도록 안내할 것

4) 난민여행증명서 재발급 절차 등

가) 재발급 사유

- 난민여행증명서가 분실되거나 없어진 경우
- 난민여행증명서가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 기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난민여행증명서의 사증란에 심사인을 날인할 공간이 없는 경우
 - ☞ 위변조방지 및 개선 등을 위하여 난민여행증명서를 한꺼번에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 유효한 난민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이 새로운 난민여행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지하고 있던 난민여행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함
- 다만, 난민여행증명서가 훼손되었거나 심사인을 날인할 공간이 없어 재발급하는 경우 등 구 난민여행증명서를 계속하여 소지할 필요가 있으면 구 난민여행증명서에 'USED' 날인 후 신 난민여행증명서와 붙여서 소지하도록 함

나) 신청 기한

-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단, 사유발생 후 14일이 지난 타당한 지연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급할 수 있음

다) 재발급 절차

- 재발급 신청 접수 기관
 - (대한민국 안에서의 신청) 관할 청장 등에게 재발급 신청
 - (대한민국 밖에서의 신청)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
- 제출서류
 - 난민여행증명서 재발급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6호의 11 서식)
 -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
 - 반명합판 천연색 사진(3.5cm X 4.5cm) 2장
 - ※ 난민여행증명서 발급시 사진규격과 동일
 - 현재 가지고 있는 난민여행증명서
 - ☞ 분실 시 분실사유서 등 제출

- 수수료 1만원

○ 난민여행증명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은 청장 등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함

라) 재발급 심사, 결정 및 요청 등

○ 재발급 심사, 결정 및 요청은 동 지침의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심사, 결정 및 요청의 처리절차를 준용

- 단, 청장 등이 대한민국 밖에 있는 신청인에게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신청인에게 재외공관 등을 거쳐 그 이유 등을 통지함

마) 교부

○ 청장 등은 난민여행증명서를 재발급하는 때에는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대장에 재발급 등의 사실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인수증에 서명을 하게 한 후, 교부하여야 함

- 신청인이 대한민국 밖에 있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발급된 난민여행증명서와 인수증을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송부 받은 난민여행증명서를 신청인에게 인수증에 서명을 하게 한 후 교부하고, 교부사실을 청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함

○ 분실 사유로 난민여행증명서 재발급 시, 분실된 난민여행증명서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음을 안내하고 당사자로부터 확인서 징구

5) 난민여행증명서 등 반납

가) 반납 대상

○ 난민인정을 받은 외국인이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난민인정증명서와 난민여행증명서를 청장 등에게 반납하여야 함

- 청장 등으로부터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때

-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는 결정통지를 받은 때
-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난민인정취소 또는 철회 통지를 받은 때
- 법무부장관은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안전을 해칠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난민여행증명서의 반납을 명할 수 있음

나) 반납기한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14일 이내의 기간

다) 반납명령 절차

- 법무부장관이 난민여행증명서 반납명령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6호의15 서식)를 청장 등을 거쳐 그 외국인에게 교부

라) 난민여행증명서의 효력 상실

- 난민여행증명서를 반납한 때 또는 반납기한이 경과한 때

6) 분실 또는 효력이 상실된 난민여행증명서에 대한 조치사항

가) 조치 대상

- 분실된 난민여행증명서
- 난민여행증명서 반납명령서 상 반납기한이 경과하여 효력이 상실된 난민여행증명서

나) 조치 내용

- 난민여행증명서 분실 사유로 재발급 신청을 접수한 청 등 또는 난민여행증명서 반납명령서를 교부한 청 등은 ICRM 「출입국심사」 화면 「관리대상자」 창에 입력

※ 입력 예시(해제일자는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관리대상자입력/수정_AE0102W

이적사항	성명	HONG 00	0	
	생년월일	1990.01.01	남 / 여	
	국적			
	여권번호			
요청사항	유형구분	A 출입국 관리대상자		
	관리대상구분	SS 기타	필요적정기간	
	조치유형	09 기타조치요청		
	관련번호		<input type="checkbox"/> 신병인계	
	요청일자	2017.06.01	해제일자	
	요청사무소		요청과	
	요청자성명		요청자전화	
	요청내용 (한글로 350자)			
	출입국통보			
	통보일자		통보사무소	
통보과		통보자성명		
기타조치				
조치일자		조치사무소		
조치과		조치자성명		
조치결과 (한글로 110자)				

초기화 저장 닫기

- ▶ 출국 시 조치대상 난민여행증명서 행사 사실을 적발할 경우
→ 출국 보류, 새로운 난민여행증명서로 출국토록 안내(구 난민여행증명서 'USED' 날인)
- ▶ 입국 시 조치대상 난민여행증명서 행사 사실을 적발할 경우
→ 본인여부 확인하여 본인임이 확인되면 분실 난민여행증명서 행사 경위 등을 조사하여 입국조치 여부 결정(구 난민여행증명서 'USED' 날인)

7) 보고사항

- 청장 등은 난민여행증명서 발급현황을 정기적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라. 법 위반자 처리방법

- 체류자격부여, 체류자격변경허가 등을 위반한 경우 출입국관리법령 및 해당 지침에 따라 처리
- 취업활동의 제한은 없으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식품위생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령 및 해당 지침에 따라 처벌

마. 배우자 등에 대한 사증발급 등(난민인정자 가족결합)

1) 가족결합의 원칙

- 난민법은 난민인정자에 대하여 헤어진 가족의 재결합을 보장함으로써 난민과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법상의 가족결합 원칙(principle of family unity)을 규정

2) 가족결합의 대상 및 범위

- 가족결합의 대상이 되는 자는 난민인정자에 한함
 - ※ 난민신청자 혹은 인도적체류자는 가족결합의 대상에서 제외
- 난민인정자의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에 한함
 - 원칙적으로 배우자는 본국에서 합법적인 혼인관계가 인정(공적 서류 입증)되어야 함
 - ※ 다만, 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 시 공적인 혼인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실혼 관계 인정
 - 자녀는 배우자가 없는 미성년에 한함(민법 제4조에 따른 19세 미만의 자)
 - ※ 성년인 자녀는 일반적인 입국심사 및 체류절차에 따라 처리
 - 그 밖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은 가족결합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난민인정자의 가족인 경우에도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의한 입국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국 불허

3) 난민인정자 가족에 대한 사증 발급 절차

가) 사증발급 절차

- 난민인정자의 가족이 난민인정자와의 가족결합을 위하여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단기방문(C-3, 90일) 체류자격으로 사증 발급
 - 난민인정자가 난민인정을 받은 사실
 - 난민인정자의 가족임을 입증하는 서류
 - 난민인정자와의 가족결합 희망 여부

- 재외공관의 장은 사증을 발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난민인정자의 난민인정 사실 및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음

나) 가족결합을 위한 사증발급 신청 시 확인 서류

○ 배우자 입증서류

- 여권
-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결혼증명서 등 혼인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그 밖에 혼인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난민인정자의 미성년 자녀 입증서류

- 여권
- 출생증명서 등 부모와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미성년 자녀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미성년 자녀의 혼인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미성년 자녀의 혼인유무가 의심스러울 경우에만 징구

4) 가족결합 대상자에 대한 입국심사 절차

가) 일반 절차

- 가족결합을 희망하는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및 그 미성년 자녀가 출입국항에서 입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족결합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입국심사

나) 입국금지대상자에 대한 처리절차

- 가족결합을 희망하는 난민인정자의 가족이 제11조제1항의 입국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국 불허
- 다만, 입국금지대상자인 경우에도 인도적사유 등 입국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입국을 허가

다) 사증 없이 도착한 자에 대한 처리절차

○ 일반 외국인의 입국허가 절차에 따라 처리

5) 난민인정자의 가족 체류자격 부여·변경 (→세분류코드 F-1-16) · 취업허가 등 가) 체류자격 부여·변경 허가

○ 기본원칙

- 난민인정자의 가족(배우자, 미성년 자녀)이 자격부여(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난민인정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동거 자격(F-1-16)으로 체류자격 부여·변경

※ 방문동거(F-1) 체류자격 소지자도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난민법에 따른 생계비 지원 등 난민신청자로서의 지위 및 권리 보장

○ 배우자의 가족결합

- 주신청자의 난민신청일(재신청자는 최초 난민신청일 기준) 이후에 가족관계가 형성되었고, 자신의 독자적 난민인정 사유가 없어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은 경우 “난민인정자 가족(F-1-16)”으로 체류허가

※ ICRM 및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에 “난민인정자 가족(F-1-16) 체류자격 부여대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지 반드시 확인

- 원칙적으로 배우자는 본국 또는 국내에서 합법적인 혼인관계가 인정(공적 서류로 입증)되는 자여야 함

- 다만, 혼인관계를 입증하는 공적인 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실혼 관계 인정. 단, 실태조사를 통해 혼인 경위, 실제 동거 여부, 자녀 유무,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 미성년 자녀의 가족결합

- 이혼 및 재혼 등으로 인해 부모 모두 독자적 사유 없이 가족결합으로 난민인정 받은 자의 미성년 자녀(국내출생자 포함)는 자신의 독자적 난민인정 사유가 없어 난민 불인정결정 받는 경우 “난민인정자 가족(F-1-16)”으로 체류허가

※ ICRM 및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에 “난민인정자 가족(F-1-16) 체류자격

부여대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지 반드시 확인하고 국내 출생

※ 자녀가 부모 국적국의 국적관련 법령으로 국적을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
본부와 협의하여 체류허가 여부 결정

○ 1회 부여 체류기간

- 난민인정자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최대 2년 체류기간 부여·변경

○ 제출서류

- 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 여권

- 주신청자의 난민인정증명서(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 난민인정자의 가족임을 입증하는 서류

☞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증명서, 혼인신고 수리증명서
등 혼인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미성년 자녀) 출생증명서 등 부모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체류지 입증 서류

☞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교회·난민지원시설·
인권단체·UNHCR 등의 주거확인서 등

- 결핵검진확인서(결핵 고위험 19개 국가 국민)

※ 「외국인 결핵 환자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서 정한 결핵검진
확인서(진단서)

- 반명합판 천연색 사진(3.5cm X 4.5cm) 1장

※ 사진의 규격 등은 체류관리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름

나) 체류기간 연장 허가

○ 주신청자의 난민인정이 취소·철회되지 않는 한 체류기간 연장 가능

다) 취업허가

○ 인도적체류자에 대한 취업허가 절차 및 기준 준용

※ 취업활동 허가 위반자의 경우에도 인도적체류자 법 위반자 처리절차 준용

라) 불법체류 중 난민인정자 가족결합 신청자 처리방법

- 불법체류기간 계산
 - 체류허가 신청일 기준으로 불법체류기간 계산
- 통고처분 면제(범칙금 면제) 대상
 - 자진출석한 사람으로 국내 체류기간이 입국일로부터 1년 이내이고 불법체류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 통고처분(범칙금 부과) 대상
 - 원칙적으로 상기 통고처분 면제 대상을 제외하고는 통고처분 후 체류허가
- 동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령 및 지침에 따름

마) 난민인정신청 접수 및 심사

-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등 가족이 난민인정자와 동일한 사유 등으로 난민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 신청 접수
- 접수한 난민인정 신청건은 신속절차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심사결정 완료(단, 청 등 인력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바. 난민인정 취소된 자의 체류

1) 체류담당 부서

- 출국자(등록증 미반납) : 관할 청 등은 난민인정 결정 취소된 자가 출국한 경우 참고사항에 관련 내용 입력 후 출국일 기준으로 완전출국 정리
- 국내 합법체류자 : 난민담당자로부터 통보 받은 후 지체 없이 출석요구서 (참고사항 입력) 발부

출석자	불출석자	
더 이상 국내 체류할 수 없음을 고지하고 출입국관리법 제89조에 따라 체류허가 취소* 후 사범담당자에 인계	출석요구서 반송 시	출석요구서 공시송달(출입국관리법 제91조 ②항) ⇒ 체류허가 취소 및 소재불명 입력 ⇒ 체류허가 취소 통지 공시송달
	출석요구서 정상 수령 후 불출석 시	체류허가 취소 ⇒ 체류허가 취소 통지 송달 (반송 시 공시송달)

* 「외국인등록」 화면 체류신청 및 허가사항 허가구분에서 "취소(철회성)" 항목 선택 후 체류기간 정정

2) 사범담당 부서

- 체류허가 취소 후 사범과에 인계된 자 출입국관리법 제68조에 따라 출국명령

3) 행정사항

- 난민인정이 취소된 자가 이의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면 관련 절차 종료 시까지 3개월 범위 내에서 출국기한 유예

사. 난민인정 철회된 자의 체류

1) 체류담당 부서

- 출국자(등록증 미반납) : 관할 청 등은 난민인정 결정 철회된 자가 출국한 경우 참고사항에 관련 내용 입력 후 출국일 기준으로 완전출국 정리
- 국내 합법체류자 : 난민담당자로부터 통보 받은 후 지체 없이 출석요구서 (참고사항 입력) 발부

출석자	불출석자	
더 이상 국내 체류할 수 없음을 고지하고 출입국관리법 제89조에 따라 체류허가 취소* 후 사범 담당자에 인계	출석요구서 반송 시	출석요구서 공시송달(출입국관리법 제91조 ②항) ⇒ 체류허가 취소 및 소재불명 입력 ⇒ 체류허가 취소 통지 공시송달
	출석요구서 정상 수령 후 불출석 시	체류허가 취소 ⇒ 체류허가 취소 통지 송달 (반송 시 공시송달)

* 「외국인등록」 화면 체류신청 및 허가사항 허가구분에서 "취소(철회성)" 항목 선택 후 체류기간 정정

- 체류기간 만료일에 임박한 자(체류기간 만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가 자진출석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 통지서를 발급하고, 발급일로부터 14일까지 출국기한 명시
- 출국기한 유예 신청 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처리

2) 사범담당 부서

- 체류허가 취소 후 사범과에 인계된 자 출입국관리법 제68조에 따라 출국명령

3) 행정사항

- 난민인정 철회된 자가 이의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면 관련 절차 종료 시까지 3개월 범위 내에서 출국기한 유예

1. 개 요

가. 기본원칙

- (용어의 정의) 난민인정자는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난민신청자는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인도적 체류자는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 (신청 및 접수) 난민 등의 처우 신청 관련,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는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이하 “청 등”)에서 접수·처리하고, 등록하지 않은 외국인은 난민인정 신청을 한 청 등에서 접수·처리
- 난민인정자 등의 처우는 관련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름
 - ※ 예, 난민인정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지급의 절차와 기준은 동법의 대상자 선정 기준과 처리 절차에 따름
- (직접 신청 원칙) 대리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 다만, 신청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신청 허용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신청은 신청자의 배우자·직계혈족에 한하며, 신청자의 배우자·직계혈족이 국내에 없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지정한 사람이 대리
 - 가구 단위의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경우(예 : 생계비), 세대주 등이 가구를 대표하여 신청 가능
- 법무부장관은 법 제44조에 해당하는 특정 난민신청자에 대하여는 그 처우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음

나. 처우 신청 접수 시 확인 및 조치 사항

- 청장 등은 처우 신청 접수 시 지원의 필요성 등을 확인하여 “ICRM 난민접수 및 심사-지원(여행/처우)-처우관리” 창에 입력
- 청장 등이 처우 지원과 관련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 면담 및 실태조사를 실시

다. 이의신청 등

- 난민 등의 처우 관련 불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은 불인정
 - ※ 난민법은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 난민인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에 대하여만 이의신청을 인정 (법 제21조)

라. 부정수익자 인지 시 조치사항

- (위법사실) 신청자가 속임수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처우를 받은 경우
- (인지사실의 고발) 청장 등은 위법사실을 인지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음
 - 청장 등이 고발할 경우 사전에 본부 보고
- (부정수익 환수) 법무부장관은 민사소송절차(부당이익 반환)에 따라 환수할 수 있음
- (환수대상) 법 제47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 ※ (법 제47조제2호)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로 난민으로 인정되거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

2. 난민신청자의 처우

가. 주요내용

- 생계비 등 지원(제40조제1항)
- 취업허가(제40조제2항)
- 주거시설의 지원(제41조)
- 의료지원(제42조)
- 교육의 보장(제43조)

나. 생계비 등 지원

1) 관련법령 등

- 법 제40조(생계비 등 지원)
- 법 시행령 제17조(생계비 등 지원)
- 법 시행규칙 제15조(생계비 지원 절차 등)

2) 기본원칙

- 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자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생계비 지원(단, 취업허가가 가능한 체류자격 소지자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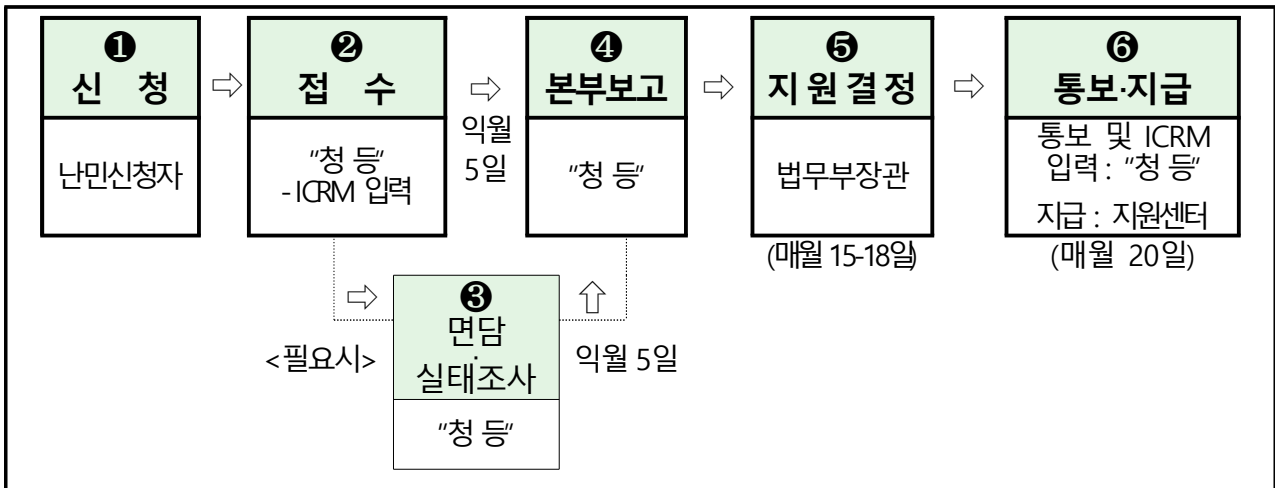
난민법 제40조(생계비 등 지원)

- ①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신청일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 취업을 허가할 수 있다.

난민법 시행령 제17조(생계비 등 지원)

- ① 법무부장관은 ...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3) 지원 절차(절차도)



4) 대상자 및 신청 접수 등

○ 대상자

-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난민신청자

※ 취업허가가 가능한 체류자격 소지자는 제외. 다만, 중대한 질병 등의 사유로 취업을 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외국인등록을 한 자는 체류지 관할 청 등, 등록하지 않은 자는 난민신청한 청 등에서 생계비 신청

- 가구단위 신청자의 경우 주 신청자의 신청서 '가족사항'란에 부양가족을 기재하여 주 신청자가 대표로 신청

※ 가구단위 신청자가 아닌 경우에도 국내에 체류 중인 가족을 '가족사항'란에 기재하도록 하며, 부양가족이라 함은 배우자, 민법 상 미성년 자녀, 65세 이상 부모에 한함

- 대리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 다만, 신청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 신청 허용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신청은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혈족에 한하며,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혈족이 국내에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지정한 사람이 대리

○ 신청 기한

- 난민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다만, 대상자 선정 및 지급일이 익월 20일인 점을 감안하여 접수

※ 난민신청일이 1. 4.이고 생계비 신청일이 6. 4.인 경우 7.15~7.18에 지원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생계비 신청 당시 난민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지만 생계비 지원대상은 될 수 없음

○ 신청 시 제출서류

- ① 생계비 등 지원신청서(난민법 시행규칙 제22호 서식)
- ② 확인서(붙임 10 처우 고지 확인서)
- ③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없는 경우 난민인정 신청 접수증)
- ④ 본인 명의 통장(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명의 통장)
- ⑤ 체류지 입증서류(단, 기 제출한 서류가 확인되지 않는 등 필요한 경우에만 징구)
- ⑥ 기타 지원이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병원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 접수 시 확인 및 조치 사항

① 확인사항

- 소득, 가족사항, 부양가족 유무, 부양가족의 소득 유무, 주거형태, 임신유무, 국내 체류기간 등
 - 다른 공공기관, 사회단체, 종교단체 등의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
- ※ 필요 시 추가 면접 또는 실태조사 실시

② 조치사항

- 제출서류 스캔하여 ICRM 난민업무- 「난민 이미지 등록」 에서 이미지 저장 및 '처우관리' 창에 생계비 신청사항 입력

5) 선정 방법

- 생계비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을 설정하고, 각 항목별 점수를 부과하여 일정점수** 이상자에게 지급

* 소득·자산, 주거, 연령, 임신유무, 국내 체류기간, 중대한 질병

** 예산 상황에 따라 점수 조정 가능

- 가구단위 신청자의 경우 가구단위로 심사함
- 민법상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생계비를 신청한 경우 난민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생계비 지원 대상 충족여부 확인 시 부양의무자의 소득 유무 등을 고려하여 심사
- 지원기간 중 자산·생활여건 등 상황변화를 고려하여 심사 시 반영

6) 생계비지원 제외대상

- 난민법 제44조(특정 난민신청자의 처우 제한) 및 난민법 시행령 제21조(특정 난민신청자의 처우 제한)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 소득 인정액이 생계비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사회단체 및 종교단체 등의 지원을 받고 있어 청장 등이 지원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점수 산정 결과 지원대상에 해당되나, 체류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소득이 있는 등 청장 등이 지원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순수한 사인간의 분쟁, 체류연장 목적 또는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 등 난민법상의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7) 지원 금액 및 지원 방법

- 지원센터 비입주자는 긴급복지지원법상 생계 지원액을 참고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매년 고시), 지원센터 입주자는 비입주자 지급액의 50% 이하 금액 지급

※ 예산사정에 따라 지원 금액은 감액될 수 있음

- 가구단위 신청자에 대해서는 가구단위로 지급하며, 5인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5인 가구 해당 금액 지급

- 가족 구성원 중 일부만 생계비를 지원받는 경우* 생계비 지원 대상이 되는 인원에 해당되는 금액만 지급

* 예) 국내출생자녀의 부모 등 가족은 난민신청 후 6개월이 지나 생계비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부부가 따로 입국하여 배우자는 생계비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등

○ 지원센터 비입주자로서 생계비를 지원 받고 있던 사람이 지원센터에 입소할 경우, 지원센터 입주자 기준 지원 금액 지급

○ 매월 15일~18일 본부에서 지원 대상·기간 등 결정 후 지원센터에서 매월 20일에 신청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

- 다만, 부득이한 경우 별도의 날짜를 지정하여 지급 가능

- 신청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좌가 없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확인서 징구

- 생계비 지급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 대리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할 수 있음

※ 법무부장관이 지원센터장에게 생계비 지급 업무를 내부위임

8) 지원 기간

○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생계비는 지원하지 아니함

- 다만, 부득이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 적용

※ 예) 난민신청일이 1. 4.이고 생계비 신청일이 2. 8.이면 지원기간은 6월까지 4개월 지원, 난민신청일이 1. 4.이고 생계비 신청일이 1. 4.이면 지원기간은 6월까지 5개월 지원 (최장 5개월까지 지원)

※ 지원기간을 명확화하여 민원 소지를 차단하고, 한정된 예산으로 보다 많은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고자 함

난민법 시행령 제17조(생계비 등 지원)

-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질병 또는 신체장애 등으로 생계비 등의 지원이 계속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생계비 등의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생계비 지원기간 연장

- 생계비 지급 대상자 중 임산부, 고령자, 중대 질병자 등 인도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결정하는 경우 지원기간을 연장하되, 3개월의 범위 내에서 2회까지 연장 가능

※ 가족 중 취업허가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장 대상에서 제외되나, 취업허가 대상자가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상에 포함, 예) 자녀출산 등)

9) 지원 중단 등 수급자 관리

○ 생계비 신청자가 출국한 경우 지원 중단

※ 항공권을 구입할 정도의 생활 수준이면 생계비 지원이 불요하고, 철회의사를 밝히지 않고 완전 출국하는 경우가 있어 휴면예금 발생으로 국고 낭비 우려

○ 불법취업으로 단속된 경우 및 국내법 위반으로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지원 중단

○ 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 수급 적발 시 지원 중단 및 환수

○ 사회단체 및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비 지원액 이상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 중단

○ 지원센터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생활태도 및 학습태도 불량으로 벌점을 부과 받는 경우로서 센터장의 중단 요청이 있는 경우, 강제퇴소 당한 경우 지원 중단

○ 난민인정 또는 인도적체류허가 결정을 받은 경우 지원 중단

10) 심사 결과 통보 등 조치사항

- (본부) 각 청 등에 심사 결과(지원 대상·금액·기간 등) 통보 및 지원센터장에게 지급 지시
- (청 등) ①생계비 지원 신청자에게 지급여부 등 문자로 개별 통보 (지급대상자로 미선정되거나 기지급 대상자 중 지원 중단된 경우에도 통보) ② ICRM 난민업무-‘처우관리’ 화면에 처리결과 입력

11) 선정 요소별 배점 기준표

※ 미성년인 난민신청자가 단독으로 생계비를 신청한 경우, 난민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생계비 지원 대상 충족여부 확인 시 부양의무자의 소득 유무 등을 고려하여 심사

가구 소득 인정액(원)					점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100,000 미만	200,000 미만	300,000 미만	400,000 미만	500,000 미만	3
100,000 ~250,000	200,000 ~450,000	300,000 ~550,000	400,000 ~700,000	500,000 ~850,000	2
250,000 ~생계비 지원금액	450,000 ~생계비 지원금액	550,000 ~생계비 지원금액	700,000 ~생계비 지원금액	850,000 ~생계비 지원금액	1

① 소득 및 자산 기준

- ‘가구 소득 인정액’ 산정 시, 직계 가족의 소득 인정액을 합산 하되, 미성년 형제·자매는 한 가구로 보아 합산

※ 예 : 부모, 본인, 배우자,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의 소득 인정액 합산

- 자산은 자산 100원 당 소득 5원으로 환산하여 소득 인정액에 합산

② 주거 형태

-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종교단체·민간지원시설·친구집 등) 1점 가산
- ※ 전·월세 임차 등은 일정한 주거에 포함, 월 30만원 이상 지급하고 숙박하는 여관, 고시원 등도 일정한 주거에 포함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입주 신청자 중 공간 부족으로 입주하지 못한 경우 1점 가산

③ 임신 유무 : 임신한 경우 5점 가산

④ 연령(미성년자, 고령자)

연령	점수
5세 미만 및 부양자	각 5
5세 이상 15세 미만 / 65세 이상 및 부양자	각 3
15세 이상 18세 미만 및 부양자	각 1

⑤ 국내 체류기간(난민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난민신청일까지의 출입국기록에서 국내 체류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

국내 체류기간	점수
30일 미만	5
30일 이상 90일 미만	3
90일 이상 6개월 미만	1

예시) 난민신청일이 2018. 1. 1.인 경우

- 2017. 1. 1.~2018. 1. 1. 기간 중 국내 체류 합산 기간

⑥ 질병 유무

- 중대한 질병 및 장애가 있는 경우 10점
- ※ 중대한 질병 및 장애는 근로를 할 수 없는 정도의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것이 진단서 등으로 확인이 되고 청장 등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 인정
- 예) 좌측 수지 5개 절단, 00암으로 입원 중

- 합산 점수가 동점인 경우 선정 우선 순위
 - ① 중대한 질병 및 장애가 있는 경우(진단서 등 증빙자료 제출자에 한함)
 - ② 센터 입소를 희망하였으나, 입주 공간 부족으로 입주하지 못한 자
 - ③ 임신 중인 자
 - ④ 5세 미만 및 그 부양자
 - ⑤ 5세 이상 15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및 그 부양자
 - ⑥ 국내 체류기간이 단기인 자
 - ⑦ 여성

다. 취업허가

1) 관련 법령

- 법 제40조(생계비 등 지원)
- 법 시행령 제18조(취업허가)

2) 취업허가의 주요 내용 및 절차

- 난민신청자의 취업허가에 관한 사항은 “IV. 난민신청자 등 체류 관리 및 사범심사 등-2. 난민신청자 체류관리 및 사범심사-나. 취업허가”에 따르고, 동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체류관리 지침에 따름

라.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이용

1) 관련 법령

- 법 제41조(주거시설의 지원), 법 제45조(난민지원시설의 운영 등)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법무부 훈령 제1168호)

2) 주요내용

- 법무부장관은 지원센터를 통해 난민신청자 등의 숙식·의료 등 기초 생계와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음(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 제1호)

3) 처리 절차 등

○ 지원센터 이용 대상자

-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 신청을 한 자
- 난민신청자
- 인도적체류자
- 난민인정자(재정착난민 포함)

○ 이용기간 및 이용제한

-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센터 이용, 이용자의 건강 상태,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지원센터를 계속 이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이용기간 연장
- 지원센터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원센터 이용 제한

○ 지원센터 이용 절차

신청접수 후 본부 및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장에게 보고("청 등") ⇨ 지원센터 이용 여부 및 이용기간 결정(법무부장관) ⇨ 결과 통지(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 청장 등은 지원센터 이용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원센터 이용 필요 여부에 대한 의견을 붙여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장에게 보고

※ 신청인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함께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가족관계 입증서류 첨부. 다만,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청장 등이 난민인정신청서, 여권 등으로 확인하여 가족관계 서류에 갈음하여 판단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장은 지원센터 이용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센터 이용 여부 및 이용기간을 결정
- 청장 등은 신청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 지원센터 이용 관련 기타 사항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규정에 따름

마. 의료지원

1) 관련 법령 등

- 법 제42조(의료지원)
- 법 시행령 제20조(의료지원)

2) 의료지원의 주요 내용

○ 건강검진 비용 지원 및 긴급 의료비 지원

-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난민신청자에게 건강검진을 받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난민신청자가 받은 건강검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 (건강검진 비용 지원) 청장 등은 난민신청자의 건강검진 신청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본적 항목의 건강검진 비용 지원

※ 기본적 항목은 결핵, 매독, 에이즈(AIDS) 등으로 함

- (긴급 의료비 지원) 청장 등은 긴급한 의료지원이 필요한 난민신청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료비 지원을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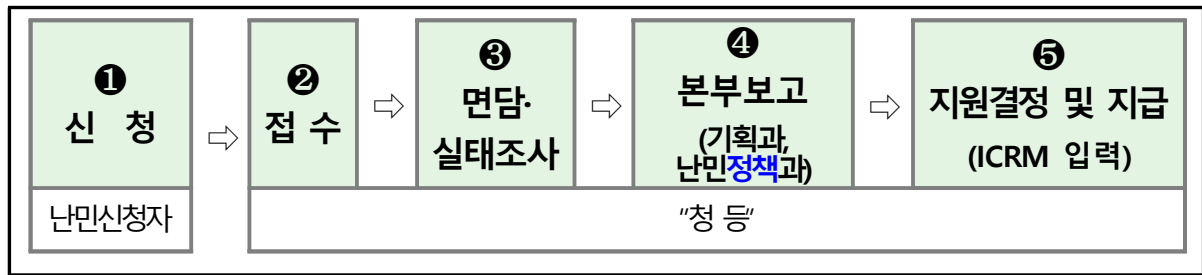
○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관계기관의 확인 요청에 대한 협조

- (정보 제공) 청장 등은 난민신청자 등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와 그 밖에 난민신청자가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에 관한 정보 제공

* 보건복지부 시행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붙임 11)』 및 전국 무료의료기관 정보(붙임14)

- (관계 기관 협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관계 부처 또는 기관의 장이 청장 등에게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경우, 청장 등은 난민신청자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통보

3) 지원 절차(절차도)



- 청장 등은 지원 금액 등 결정 시 본부와 사전 협의

4) 대상자 및 신청 접수 등

○ 대상자

-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재정착난민 포함)

○ 신청 방법

-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은 체류지 관할 청 등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난민인정신청서를 접수한 청 등에서 건강검진비 및 의료비 지원 신청

- 의료비 지원 신청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대리 신청 가능

※ 대리 신청자의 범위 :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변호사 등 신청자가 지정한 사람

○ 신청 시 제출서류

- ① 의료비 지원신청서(붙임 30)
- ② 진단서(건강검진 비용 지원 시 제출 불요)
- ③ 진료비 명세서
- ④ 병원 통장사본
- ⑤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없는 경우 난민인정 신청 접수증)
- ⑥ (대리신청 시) 위임장(붙임 31)
- ⑦ 6개월간 통장거래내역서

○ 접수 시 확인 및 조치 사항

- ① 확인사항

- 소득, 가족사항, 부양가족 유무, 부양가족의 소득 유무 등
- 다른 공공기관, 사회단체, 종교단체 등의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
- ※ 필요 시 추가 면접 또는 실태조사 실시

② 조치사항

- 제출서류 스캔하여 ICRM 난민업무-「난민 이미지 등록」에서 이미지 저장 및 '처우관리' 창에 의료비 지원 신청사항 입력

5) 지원 금액 및 지원 방법

○ 지원 금액 및 한도

- (지원 금액) 본인 부담금 5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 진료비(단, 건강검진 비용은 5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
- (한도) 1인당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 ※ 청장 등이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사유서 등 첨부

○ 지원방법

- 청장 등은 의료 지원 신청 접수 시“ICRM 난민접수 및 심사-지원(여행/처우)-처우관리” 창에 신청사항을 입력하고 의료 지원 필요 여부에 대한 의견을 붙여 본부(출입국 기획과, 난민정책과) 보고
- 법무부장관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의료비 지원 금액 결정 후, 해당 청 등 계좌에 지원 금액 입금
- 해당 청장 등은 병원 계좌에 지원 금액 입금

6) 의료비 지원 제외 대상

- 산업재해, 자동차사고, 제3자의 가해행위 등
-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치료 및 수술(성형, 예방접종 등)
- 치과의 경우 미용목적의 부정교합의 교정, 보철류(크라운, 브릿지, 틀니 등), 스켈링

- 한의원의 경우 의료보험 비급여 대상의 투약, 건강증진을 위한 보약
- 보조기, 보청기, 의수·의족, 의안, 콘택트렌즈 등의 재료비
- 마약중독 등 향정신성 의약품
- 친자확인을 위한 진단
- 만성적 질환에 대한 치료비

바. 교육보장

1) 관련법령

- 법 제43조(교육의 보장)

2) 주요 내용

- 난민신청자 및 그 가족 중 미성년자인 외국인은 국민과 같은 수준의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⁵⁾을 받을 수 있음

3) 조치사항

- 난민신청자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소관사항임을 안내

사. 특정난민신청자의 처우제한

1) 관련 법령

- 법 제44조(특정 난민신청자의 처우 제한)
- 법 시행령 제21조(특정 난민신청자의 처우 제한)

2) 특정난민신청자의 정의

-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
-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후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
- 난민인정결정이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에 따른 것으로 밝혀져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5)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종류(초·중등교육법 제2조)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

- 대한민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난민인정 신청하거나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이 그 집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난민인정 신청을 한 사람

3) 주요 내용

- 법무부장관은 특정난민신청자에 대해 생계비 지원, 주거시설 지원, 의료지원(건강검진 비용지원)의 일부를 제한 할 수 있음
- 다만, 긴급하거나 인도적인 차원에서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난민신청자에게도 생계비 지원, 주거시설 지원, 의료지원을 할 수 있음

3. 인도적체류자의 처우

가. 주요 내용

- 취업활동의 허가(제39조), 주거시설의 지원(제41조, 제45조), 의료비 지원

나. 취업활동의 허가

1) 관련 법령

- 법 제39조(인도적체류자의 처우)

2) 주요 내용

- 인도적체류허가자의 취업에 관한 사항은 “IV. 난민신청자 등 체류관리 및 사범심사 등, 3. 인도적체류자 체류관리, 나. 취업허가”에 따르고, 동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체류관리지침에 따름

다. 주거시설의 지원

1) 관련 법령

○ 법 제41조(주거시설의 지원), 법 제45조(난민지원시설의 운영 등)

2) 주요 내용

○ 인도적체류허가자에 대한 주거시설의 지원은 “V. 난민신청자 등의 처우-2.난민신청자의 처우-마. 출입국·외국인 지원센터 이용”에 따름

라. 의료 지원

○ 인도적체류허가자의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V. 난민신청자 등의 처우-2.난민신청자의 처우-라. 의료 지원”에 따름

4. 난민인정자의 처우

가. 주요 내용

○ 사회보장(제31조), 기초생활보장(제32조), 교육보장(제33조), 사회적응교육(제34조), 학력인정(제35조), 자격인정(제36조), 배우자 등 입국허가(제37조)

나. 사회보장

1) 관련 법령

○ 법 제31조(사회보장)

2) 주요 내용

○ 사회보장의 의의

-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함(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

○ 상호주의 적용의 배제(법 제31조)

-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6) 등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음

6)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3) 난민인정자에 대한 사회보장

-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난민인정자에 대한 각종 사회보장은 관련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름

다. 기초생활보장

1) 관련 법령

- 법 제32조(기초생활보장)

2) 주요 내용

- 기초생활 보장의 의의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2⁷⁾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신청에 따라 같은 법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보호를 받음(법 제32조 기초생활보장)

3)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신청

- 대상자 : 난민인정자

- 신청 및 심사 결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청장 등은 처우 신청자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가능함을 안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

라. 교육의 보장

1) 관련 법령

- 법 제33조(교육의 보장)
- 법 시행령 제13조(교육 관련 지원)
- 법 시행규칙 제13조(교육비 지원 추천 절차)

2) 주요 내용

- 난민인정자나 그 자녀가 「민법」에 따라 미성년자인 경우⁸⁾에는 국민과 동일하게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음
- 난민인정자나 그 자녀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거나 편입학할 수 있음
-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가운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⁹⁾ 따른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음

※ 교육비 지원 여부는 교육부에서 결정

3) 교육비 지원 추천서 발급 신청 접수 등

○ 지원대상

-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 신청방법

- 교육비 지원 추천을 받으려는 난민인정자나 그 자녀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교육비 지원 추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청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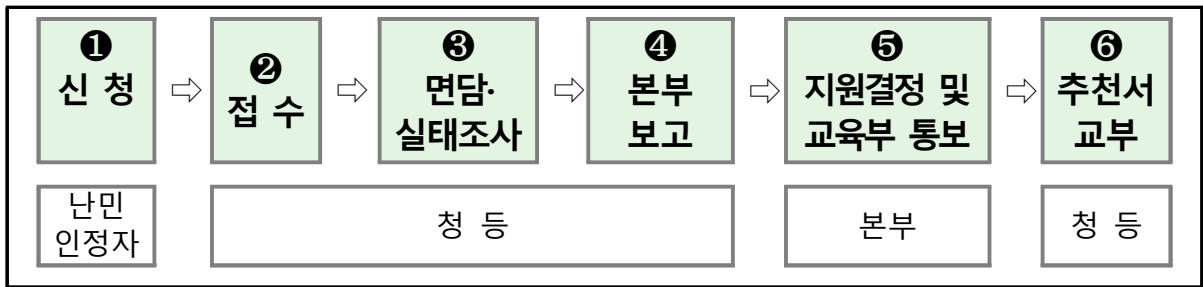
8)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9)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인 학생

○ 지원절차



○ 신청시 제출 서류

- ① 교육비 지원 추천 신청서(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 ② 입학(재학) 증명서 1부
- ③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청장 등이 난민인정신청서, 여권 등으로 확인하여 가족관계 서류에 갈음하여 판단
- ④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⑤ 난민인정증명서

○ 접수 시 확인 및 조치 사항

- (확인 사항) 소득, 가족사항, 부양가족의 소득 유무, 다른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 등의 지원 여부 등
- (조치 사항) “ICRM 난민접수 및 심사-지원(여행/처우)-처우관리” 창에 신청사항을 입력하고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교육비 지원 필요 여부에 대한 의견을 붙여 본부 보고

○ 교육비 지원 추천 여부의 결정 및 통보

- 법무부장관은 교육비 지원 추천 여부를 결정하고, 교육비 지원 추천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시행규칙 별표 제19호 서식의 교육비 지원 추천서를 발급하고 교육부장관에게 통보
- 단, 학교와 학년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다시 신청해야 함을 안내
- 청장 등은 교육비 지원 추천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고 처리 내용을 ICRM에 입력

마. 사회적응교육

1) 관련 법령

- 법 제34조(사회적응교육 등)
- 법 시행령 제14조(사회적응교육)
- 출입국관리법 제39조(사회통합 프로그램)

2) 주요 내용

-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에 대하여 한국어 교육 등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에 대한 사회적응 교육으로 「출입국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음

3) 사회적응교육의 실시

- 법무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청장 등이 실시
- 난민인정자에 대한 사회적응교육은 「출입국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으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운영지침’에 따름

■ 사회통합 프로그램

-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정보제공, 상담 등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음
-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시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운영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용 및 개발, 운영기관의 지정·관리 및 지정 취소, 그 밖에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바. 직업훈련

1) 관련 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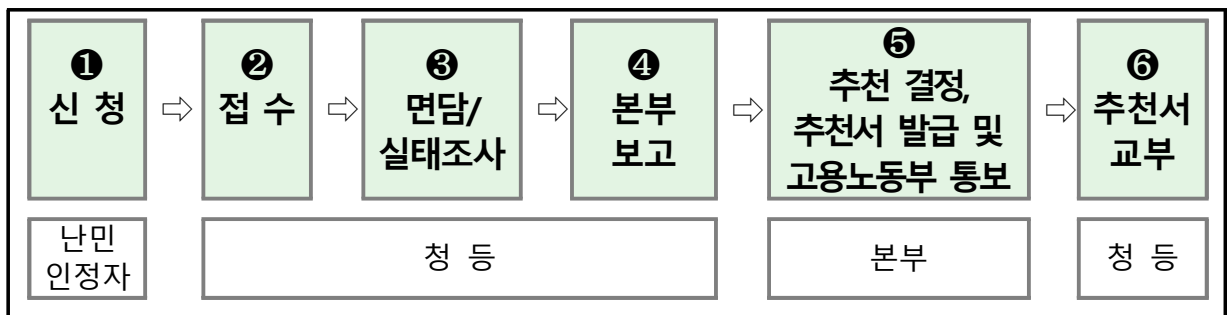
- 법 제34조(사회적응교육 등)
- 법 시행령 제15조(직업훈련)
- 법 시행규칙 제14조(직업훈련 추천 절차)

2) 주요 내용

- 법무부장관은 직업훈련을 원하는 난민인정자 가운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10)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음

3) 직업 훈련 추천서 발급 신청 접수 등

- 지원대상 : 난민인정자
- 신청방법
 - 직업 훈련 추천을 받으려는 난민인정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직업 훈련 추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청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함
- 지원절차



10)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실업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추천하는 사람)

○ 신청서 제출 서류

- ① 직업훈련 추천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 ② 자격증 등 직업훈련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③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 ④ 난민인정증명서

○ 접수 시 확인 및 조치 사항

- (확인 사항)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 대상자 여부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 필요성 등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실업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붙임 16】참조

- (조치 사항) “ICRM 난민접수 및 심사-지원(여행/처우)-처우관리” 창에 신청사항을 입력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필요 여부에 대한 의견을 붙여 본부 보고

○ 직업 훈련 추천 여부의 결정 및 통보

- 법무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직업훈련 추천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시행규칙 별표 제21호 서식의 직업훈련 추천서를 발급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

- 청장 등은 직업훈련 추천서를 신청자에게 교부

※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여부는 고용노동부에서 결정

사. 학력인정

1) 관련 법령

- 난민법 제35조(학력인정)
- 난민법 시행령 제16조(학력인정의 기준 등)

2) 주요 내용

- 난민인정자는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교육의 정도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
- 난민인정자가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은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

3) 접수시 안내사항

- 난민인정자의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소관사항임을 안내
- 법무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난민인정자의 학력인정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면담 및 사실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신청자의 학력인정 관련 정보를 제공

※ 학력인정 여부는 교육부에서 결정

아. 자격인정

1) 관련 법령

- 난민법 제36조(자격인정)

2) 주요 내용

- 난민인정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음

3) 접수시 안내사항

- 난민인정자가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의 인정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산업인력관리공단 등 해당 자격을 관할하는 기관의 소관사항임을 안내

※ 의사, 약사 등 보건자격의 인정은 보건복지부가, 기능사 등 기술자격의 인정은 산업인력관리공단 소관사항임

- 법무부장관은 자격인정 소관 기관으로부터 자격인정 관련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면담 및 사실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사실 확인을 위하여 외교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자. 주거시설의 지원

1) 관련 법령

○ 법 제41조(주거시설의 지원), 법 제45조(난민지원시설의 운영 등)

2) 주요 내용

○ 난민인정자에 대한 주거시설의 지원은 “V. 난민신청자 등의 처우-2.난민신청자의 처우-마. 출입국·외국인 지원센터 이용”에 따름

라. 의료 지원

○ 난민인정자의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V. 난민신청자 등의 처우-2.난민신청자의 처우-라. 의료 지원”에 따름

5. 난민처우협의회 구성·운영

가. 추진배경

○ 난민법에 규정된 난민인정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 향상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업 필요

나. 주요 내용

○ 처우별 소관부처 및 협업사항

구 분	처우내용	관계부처
난민인정자	사회보장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보건복지부
	교육의 보장	교육부
	사회적응교육, 직업훈련 지원	고용노동부
	학력 및 자격인정	교육부, 고용노동부
	배우자 등 입국허가	외교부
인도적체류자	취업활동 허가	고용노동부
난민신청자	취업허가	고용노동부
	주거시설 지원	행정자치부
	의료지원	보건복지부
	교육의 보장	교육부

1. 난민법 상 별칙

가. 별칙 규정(근거 규정)

- 난민법 제47조

나. 처벌 대상

- 난민법 제17조(인적사항 등의 공개 금지)를 위반한 자

- ① 난민신청자와 난민법 제13조에 따라 면접에 동석하는 사람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그 밖에 그 난민신청자 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

- ② 상기 난민신청자 등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난민신청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 ③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정보를 출신국에 제공

※ 난민신청자 신분의 특성상 인적사항 등이 공개될 경우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으며, 접수와 면접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물론, 통역인, 변호인, 언론·출판인 등 모든 사람이 동 조항의 적용 대상임

-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로 난민으로 인정되거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

다. 처벌 내용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라. 난민법 제47조(별칙) 위반자 고발

1) 고발권자

-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함(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2) 고발절차

-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고발 조치

※ 신분세탁범 등 출입국사범에 해당하면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처리

2. 유엔난민기구와의 교류·협력

가. 교류·협력 사항

- 유엔난민기구가 아래 사항에 대하여 통계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협력하여야 함

- 난민인정자 및 난민신청자의 상황
-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의 이행 상황
- 난민 관계 법령(입법예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 유엔난민기구나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유엔난민기구가 아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함

- 난민신청자 면담
- 난민신청자에 대한 면접 참여
- 난민인정 신청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에 관한 의견 제시

나. 조치사항

- 청장 등은 유엔난민기구가 협력을 요청할 경우 사전에 관련 사항에 대하여 본부에 보고하고, 본부의 지시를 받아 협력

- 법무부장관 및 난민위원회는 유엔난민기구가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

○ 시행일 : 2020. 4. 17. (금)

-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기존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은 폐지

○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난민인정 심사, 처우, 체류관리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부 보고하여 지시에 따를 것

- 단, 출입국심사, 체류관리 및 사범심사 등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 또는 지침이 있어 그 적용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침 적용

목 차		Page
1	<u>불회부결정 통지서</u>	1
2	<u>변호인 접견대장</u>	2
3	<u>변호인 접견 신청서</u>	3
4	<u>난민인정신청 철회서</u>	4
5	<u>출입국항 및 체류지 청 등 게시자료(공통)</u>	9
6	<u>출입국항 청 등 게시자료</u>	13
7	<u>체류지 청 등 게시자료</u>	21
8	<u>생활실태서</u>	29
9	<u>처우 고지 확인서</u>	30
10	<u>의료서비스 지원 홍보용 브로셔(Brochure)</u>	33
11	<u>난민인정자 처우 안내문</u>	35
12	<u>생계비 지원 안내문</u>	40
13	<u>전국 무료의료기관 현황</u>	41
14	<u>기초생활 급여 업무처리 개요</u>	46
15	<u>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u>	48
16	<u>법질서 준수 확인서</u>	51
17	<u>난민신청자 취업허가 안내문</u>	52
18	<u>인도적체류자 취업허가 안내문</u>	58
19	<u>동석신청서</u>	64
20	<u>비밀준수서약서</u>	65
21	<u>난민인정자 인적사항 변경 신고서</u>	66
22	<u>난민불인정결정 통지 공시송달문</u>	67
23	<u>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 공시송달문</u>	69
24	<u>난민인정신청서</u>	71
25	<u>열람·복사 대장</u>	96
26	<u>난민신청자 체류기간 도과자 등 처리방법</u>	97
27	<u>출석요구서 공시송달문(한/영)</u>	98
28	<u>확인서(한/영)</u>	99
29	<u>의료지원 신청서</u>	100
30	<u>위임장</u>	101
31	<u>난민신청자 범죄경력 등 본인 확인서</u>	102
32	<u>이의신청 접수증</u>	105
33	<u>통역인 등 변경 요청서</u>	106
34	<u>면접 녹음·녹화 미동의 확인서</u>	107

Date

2016년 00월 00일

난민불회부결정통지서
REFUSAL NOTICE OF REFUGEE STATUS APPLICATION

○ 성 명 _____	○ 성별 _____
Name in Full	Gender
○ 생년월일 _____년 _____월 _____일	○ 국적 _____
Date of Birth Year Month Day	Nationality

귀하의 2016년 03월 09일자 난민인정신청에 대하여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아래 각호에 해당되어 난민심사 불회부 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YOUR APPLICATION FOR REFUGEE STATUS ON 9 MAR 2016 IS DETERMINED NOT TO PROCEED UNDER ARTICLE 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REFUGEE ACT.

1.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When there are substantial grounds to regard the person as a danger to the safety and public order of the Republic of Korea
2. 인적사항 관련 질문 등에 응하지 아니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When the person's identity cannot be verified due to such person's refusal to comply with inquiries concerning personal profiles, etc.
3.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다만, 본인이 지체 없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When the person attempts to obtain refugee status by knowingly concealing fac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by submitting a false document.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if the person voluntarily reports such facts without delay
4.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When the person came from a safe county of origin or a safe third country, in which little possibility of persecution exists
5.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증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When the person, whose refugee application has been denied or whose refugee status has been terminated, reapplies for such status without a material change of the circumstances
6. 법 제 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When there are substantial grounds to regard any of the subparagraph of Article 19 of the Act as applying to the applicants
7. 그 밖에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When the person's basis for applying for refugee status is found to be clearly groundles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when the application was made solely for economic reasons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
Chief of INCHOEN AIRPORT Immigration Office

변호인 접견 신청서

접견 신청자	연번	성명	성별	생년월일	접견 목적 연락처
	1			-	(Tel.): - -
	2			-	(Tel.): - -
	3			-	(Tel.): - -
난민인정 신청외국인	국적	성명		성별	생년월일
접견 희망일시		년 월 일, ____ : ____ ~ ____ : ____			
<p>상기 난민신청 외국인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신청합니다.</p> <p>※ 접견신청서와 함께 변호인 선임서, 변호사 신분증(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 _____ , (署名) _____</p> <p style="text-align: center;">00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장 귀하</p>					

00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 00-000-0000, fax 00-000-0000, e-mail

난민인정신청 철회서

(Withdrawal of Application for the Recognition of Refugee Status)

인적사항 (Withdrawer's Details)

성명(Full Name)

생년월일(연. 월. 일) / Date of birth(yy.mm.dd)

국적(Nationality)

철회사유 (Reasons of Withdrawal)

본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I wish to withdraw my application for the recognition of refugee status due to the reasons stated below;

■ 해당하는 곳에 체크하세요 (중복체크 가능)

Please check the relevant spaces (Multiple checks are allowed.)

개인사정으로 완전출국 (Departure due to personal circumstances)

난민 신청 사유 소멸 (Ceased circumstances to apply for refugee status)

다른 자격으로 체류 허가 (Permission to stay with different status)

기타 (Other) :

철회일자 (Date of withdrawal)	년/Y	월/M	일/D
철회자 성명/서명 (Name/Signature of withdrawer)	(성명 / Name)		(서명 / Signature)
확인자 성명/서명 (Signature of official in charge)	(성명 / Name)		(서명 / Signature)

※ 인적사항, 철회사유, 성명 및 서명은 반드시 자필 기재 요

※ The blanks for withdrawer's details, reasons of withdrawal, name and signature shall be filled in by the withdrawer.

난민인정신청 철회서

(撤回难民认定申请申请书)

인적사항 (个人信息)

성명 (护照或其他旅行证件上的英文名称)

생년월일(연. 월. 일) / 出生日期 (年. 月. 日)

국적 (国籍)

철회사유 (申请原因)

본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本人因以下原因申请撤回难民认定申请。

■ 해당하는 곳에 체크하세요 (중복체크 가능)

请在相应的[]内打钩 (可选多项)

 개인사정으로 완전출국 (因个人原因彻底从韩国离境) 난민 신청 사유 소멸 (难民认定申请理由消失) 다른 자격으로 체류 허가 (已获得其他在韩滞留资格) 기타 (其他, 请详细说明):

철회일자 (申请日期)	년/年	월/月	일/日
철회자 성명/서명 (申请人姓名/签字)	(성명 / 姓名)		(서명 / 签字)
확인자 성명/서명 (工作人员姓名/签字)	(성명 / 姓名)		(서명 / 签字)

※ 인적사항, 철회사유, 성명 및 서명은 반드시 자필 기재 요

※ 个人信息、申请原因、姓名及签字栏必须由本人亲笔手写

난민인정신청 철회서

سحب طلب اللجوء

(المعلومات الشخصية للمنسحب) 인적사항

성명(الاسم الكامل)

생년월일(연. 월. 일) / تاريخ الميلاد (سنة.شهر.يوم)

국적(الجنسية)

철회사유 (أسباب السحب)

본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سأقوم بسحب طلب اللجوء للأسباب التالية

■ 해당하는 곳에 체크하세요 (중복체크 가능)

يرجى اختيار الأسباب ذات الصلة (ممکن اختيارات متعددة)

[] 개인사정으로 완전출국 (خروج نهائي من كوريا بسبب الشؤون الشخصية)

[] 난민 신청 사유 소멸 (الظروف المتوقعة لتقديم طلب اللجوء)

[] 다른 자격으로 체류 허가 (حصول على إقامة لحالة مختلفة)

[] 기타 (إلخ) :

철회일자 (تاريخ السحب)	년 / سنة	월 / شهر	일 / يوم
철회자 성명 / 서명 (اسم وتوقيع المنسحب)	(성명 / اسم)		(서명 / توقيع)
확인자 성명 / 서명 (اسم وتوقيع المسؤول الرسمي)	(성명 / اسم)		(서명 / توقيع)

※ 인적사항, 철회사유, 성명 및 서명은 반드시 자필기재 요

※ يجب كتابة المعلومات الشخصية وأسباب السحب والاسم والتوقيع بخط اليد

난민인정신청 철회서

(Retrait de la Demande pour la Reconnaissance du Statut de Réfugié)

인적사항 (Informations Personnelles du Demandeur)

성명(Nom de famille et prénom)	
생년월일(연. 월. 일) / Date de naissance(aa.mm.jj)	국적(Nationalité)

철회사유 (Raisons du Retrait)

본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Je souhaiterais retirer ma demande pour la reconnaissance du statut de réfugié pour les raisons suivantes;

■ 해당하는 곳에 체크하세요 (중복체크 가능)

Veillez sélectionner les choix pertinents. (Les réponses redondantes sont possibles.)

- 개인사정으로 완전출국 (Départ pour des raisons personnelles)
- 난민 신청 사유 소멸 (Les conditions applicables pour la demande du statut de réfugié ne sont plus d'actualité)
- 다른 자격으로 체류 허가 (L'obtention d'un permis de séjour d'un autre statut)
- 기타 (Autres raisons) :

철회일자 (Date du retrait)	년 / A 월 / M 일 / J
철회자 성명/서명 (Nom de famille et prénom/ Signature du demandeur)	(성명 / Nom et prénom) (서명 / Signature)
확인자 성명/서명 (Signature du fonctionnaire en charge)	(성명 / Nom et prénom) (서명 / Signature)

- ※ 인적사항, 철회사유, 성명 및 서명은 반드시 자필 기재 요
- ※ Les champs concernant les informations personnelles, les raisons du retrait, le nom, le prénom et la signature du demandeur doivent être remplis par le demandeur

난민인정신청 철회서

(Отмена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я на статус беженца)

인적사항 (Сведения о заявителе)

성명(Фамилия.Имя.Отчество)

생년월일(연.월.일) / Дата Рождения(ГГ.ММ.ДД)

국적(Гражданство)

철회사유 (Причины отмены)

본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Я хотел(а) бы отменить свое заявление о признании статуса беженца по о следующим причинам;

■ 해당하는 곳에 체크하세요. (중복체크 가능)

Пожалуй ста, отметьте нужны вариант. (Можно отмечать несколько вариантов)

개인사정으로 완전출국

(Выезд из страны по личным причинам без возвращения)

난민 신청 사유 소멸

(Отсутствие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оснований для прошения статуса беженца)

다른 자격으로 체류 허가

(Получение уже другого статуса пребывания в стране)

기타 (другие) :

철회 일자 Дата заявления	년/Г	월/М	일/Д
철회자 성명/서명 Ф. И. О/Подпись заявителя	(성명 / Ф. И. О) (서명 / Подпись)		
확인자 성명/서명 Ф. И. О/ Подпись ответственного лица	(성명 / Ф. И. О) (서명 / Подпись)		

※ 인적사항, 철회사유, 성명 및 서명은 반드시 자필 기재 요

※ Обязательно личное написание всех сведений и указание причин отмены.

난민신청자의 권리

□ 일반적 권리

- 난민신청자는 **난민협약 제33조** 및 **고문방지협약 제3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않습니다. (난민법 제3조)

□ 난민인정 신청 절차상 권리

- 신청자가 글을 쓸 줄 모르거나 장애가 있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접수하는 공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난민불인정 결정에 대한 소송 포함)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 난민신청자가 면접을 받을 때에는 **같은 성(性)의 공무원으로부터 면접**을 받을 수 있으며, **면접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난민신청자는 면접 시 **같은 성(性)의 통역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난민신청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난민신청자는 면접 시 면접의 공정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난민신청자는 난민면접이 끝난 후 면접조서의 내용을 통역 또는 번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난민신청자는 본인의 제출한 자료, 난민면접조서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난민불인정결정을 받거나 난민인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은 법무부장관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난민신청자는 유엔난민기구에 면담을 요청하거나 면접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처우에 관한 권리

- 난민신청자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생계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난민신청자는 일정한 요건 하에 난민지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난민신청자는 일정한 범위에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난민신청자와 미성년자인 가족은 국민과 같은 수준의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Rights of Refugee Status Applicants

General Rights

- Refugee status applicants shall not be forcibly return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3 of the Refugee Convention and Article 3 of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Article 3 of Refugee Act)

Procedural Rights during Refugee Status Application

- An applicant may request assistances from (an) officer(s), if she/he is illiterate or unable to fill out the application documents due to disabilities.
- An applicant may stay in the Republic of Korea until the determination of his/her refugee status becomes final (and, if an administrative appeal or litigation concerning the denial of his/her refugee status is ongoing, until the proceeding concludes).
- An applicant may request to be interviewed by an officer(s) with same gender, and the recording or videotaping of the interview.
- An applicant may request for an interpreter of same gender for the interview.
- An applicant has the right to receive the assistance of an attorney.
- An applicant may request for the presence of a trusted individual, to the extent that such presence does not obstruct the fairness of the interview.
- An applicant may request for the confirmation of his/her interview record in a language he/she understands through a translation or an interpretation after the completion of the interview.
- An applicant may request access to or a copy of the interview record or relevant materials such as documentary evidence submitted by him/herself and/or a written record(s) of his/her interview.
- A person whose refugee status application is denied or, whose refugee status is cancelled or withdrawn may appeal to the Minister of Justice.
- An applicant may request consultations with UNHCR or the presence of UNHCR during the interview.

Rights on Treatment

- An applicant may receive living and other expenses following certain requirements.
- An applicant may use facilities at refugee assistance centers following certain requirements.
- An applicant may receive medical assistance within certain range.
- An applicant and his/her family members who are minor aliens may receive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at the same level as that of Korean nationals.

حقوق مقدمي طلب اللجوء

□ حقوق عامة

○ لا يجوز ترحيل مقدمي طلب اللجوء قسرا وفقا للمادة 33 من اتفاقية اللاجئين والمادة 3 من اتفاقية مناهضة التعذيب وغيره من ضروب المعاملة أو العقوبة القاسية أو الإنسانية أو المهينة. (المادة 3 من قانون اللاجئين)

□ حقوق إجرائية أثناء طلب الحصول على صفة لاجئ

○ يجوز لمقدم طلب المساعدة من موظفين, إن كان هو أميا أو غير قادر على ملء وثائق الطلب بسبب الإعاقة.

○ يجوز لمقدم الطلب أن يبقى في جمهورية كوريا الجنوبية إلى وقت الانتهاء من إجراءات طلب اللجوء وحتى يصبح لاجئ بصفه رسمية. (وإذا كان هناك طعن أو مقاضاة إدارية بشأن رفض قبوله لاجئ فيبقى حتى انتهاء الاجراءات)

○ يجوز لمقدم الطلب أن يطلب مقابلة مع الموظفين بنفس الجنس والتسجيل الصوتي أو التسجيل بالفيديو للمقابلة.

○ يجوز لمقدم الطلب أن يطلب له مترجما فوريا بنفس الجنس للمقابلة.

○ لمقدم الطلب الحق في تلقي مساعدة من محامي.

○ يجوز لمقدم الطلب أن يطلب له حضور شخص موثوق بقدر أن هذا الحضور لا يعوق عدالة المقابلة.

○ يجوز لمقدم الطلب أن يطلب تسجيل المقابلة في بلغته سواء ترجمة تحريرية أو شفوية وذلك بعد انتهاء المقابلة.

○ يجوز لمقدم الطلب أن يطلب الحصول على نسخة تسجيل المقابلة أو المواد ذات الصلة مثل الأدلة الوثائقية التي قدمها بنفسه والسجلات الخطية.

○ يجوز للشخص الذي رفض طلب اللجوء أو الغاء أو سحبه أن يستأنف أمام وزير العدل.

○ يجوز لمقدم الطلب أن يطلب المشاورات مع المفوضية أو وجود المفوضية أثناء المقابلة.

□ حقوق المعاملة

○ يجوز للمتقدم أن يتلقى نفقات المعيشة وغيرها من النفقات جراء بعض الشروط اللازمة.

○ يجوز للمتقدم أن يستخدم المرافق في مراكز مساعدة اللاجئين جراء بعض الشروط اللازمة.

○ يجوز للمتقدم أن يتلقى مساعدة طبية في نطاق محدد.

○ يجوز للمتقدم وأطفاله غير البالغين أن يتلقوا التعليم الابتدائي والثانوي على نفس المستوى مثل المواطنين من

Les droits des demandeurs d'asile

□ Le principe de non-refoulement

- Selon l'article 33 de la Convention relative au statut des réfugiés et l'article 3 de la Convention contre la torture, les demandeurs d'asile ne doivent pas risquer le refoulement. (article 3 de la Loi coréenne sur les réfugié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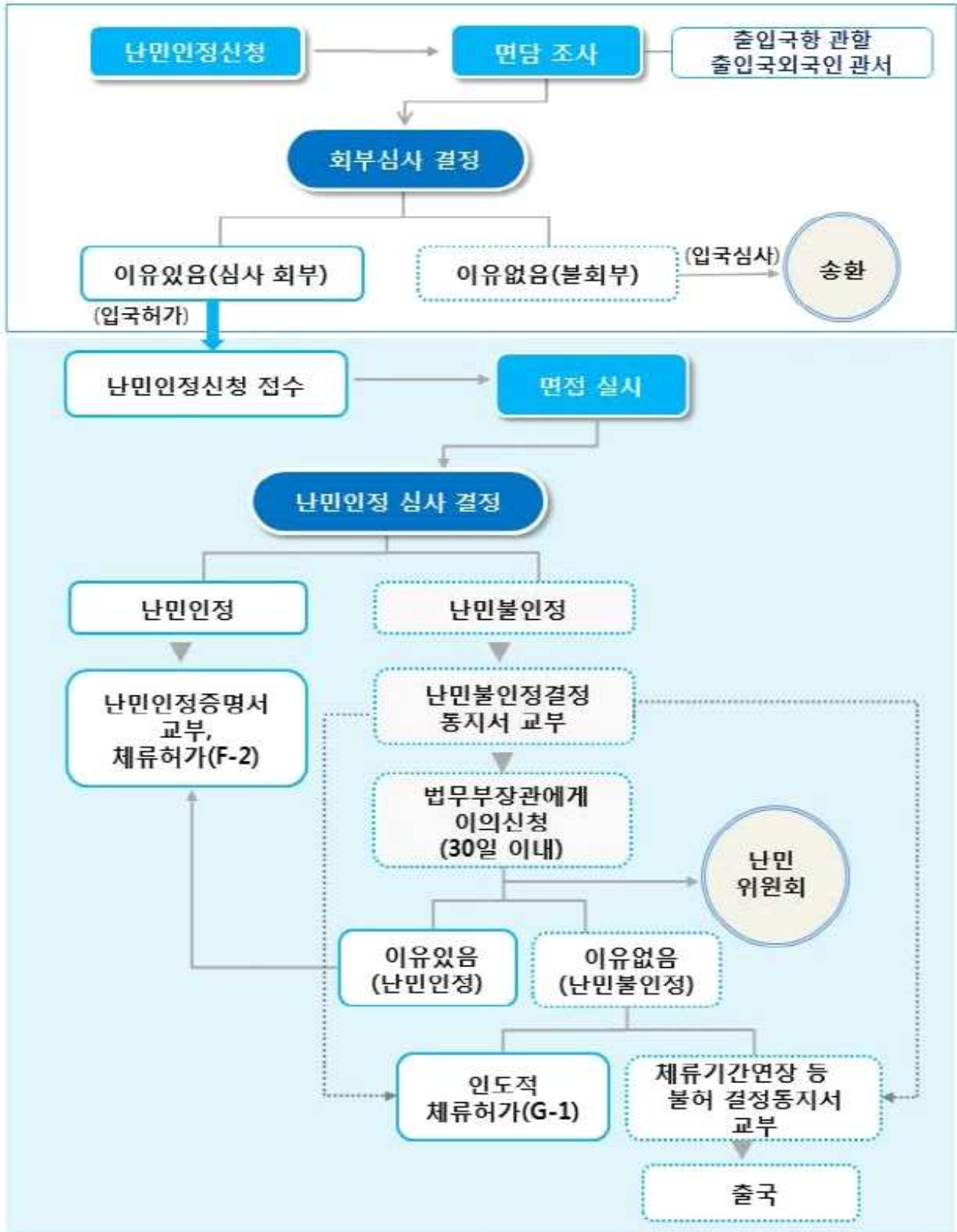
□ Les droits au cours de la procédure de demande d'asile

- Au cas où les demandeurs analphabètes ou handicapés n'arriveraient pas à remplir le formulaire de demande, ils ont le droit de bénéficier d'un agent chargé d'accueil.
- Les demandeurs sont autorisés à rester en Corée jusqu'à ce que le ministère de la Justice statue sur leur demande. Il en va de même pendant le délai de pourvoi en cassation contre la décision défavorable.
- Si les demandeurs souhaitent que l'entretien se déroule avec un officier de même sexe qu'eux, ils peuvent le demander. Si ils le souhaitent, l'entretien fait l'objet d'un enregistrement audio et/ou vidéo.
- Si les demandeurs souhaitent que l'entretien se déroule avec un interprète de même sexe qu'eux, ils peuvent le demander.
- Les demandeurs ont la possibilité de bénéficier des services d'un avocat.
- Lors de l'entretien, les demandeurs ont la possibilité de se faire assister par une personne digne de confiance ; à condition que sa présence ne compromette pas l'impartialité .
- À la fin de l'entretien, les demandeurs auront l'occasion, avec l'interprète, de vérifier si leur témoignage a été correctement retranscrit.
- Les demandeurs peuvent demander un accès à leur documents ou au compte rendu rédigé par l'officier. Ils ont le droit de les consulter et/ou photocopier.
- Si la demande d'asile est rejetée, les demandeurs peuvent contester la décision du ministère coréen de la Justice. Il en va de même pour ceux qui dont la reconnaissance du statut est annulée ou retirée.
- Les demandeurs ont le droit de consulter le Haut-Commissariat des Nations Unies pour les réfugiés (HCR) et, si nécessaire, de lui réclamer assistance lors de leur entreti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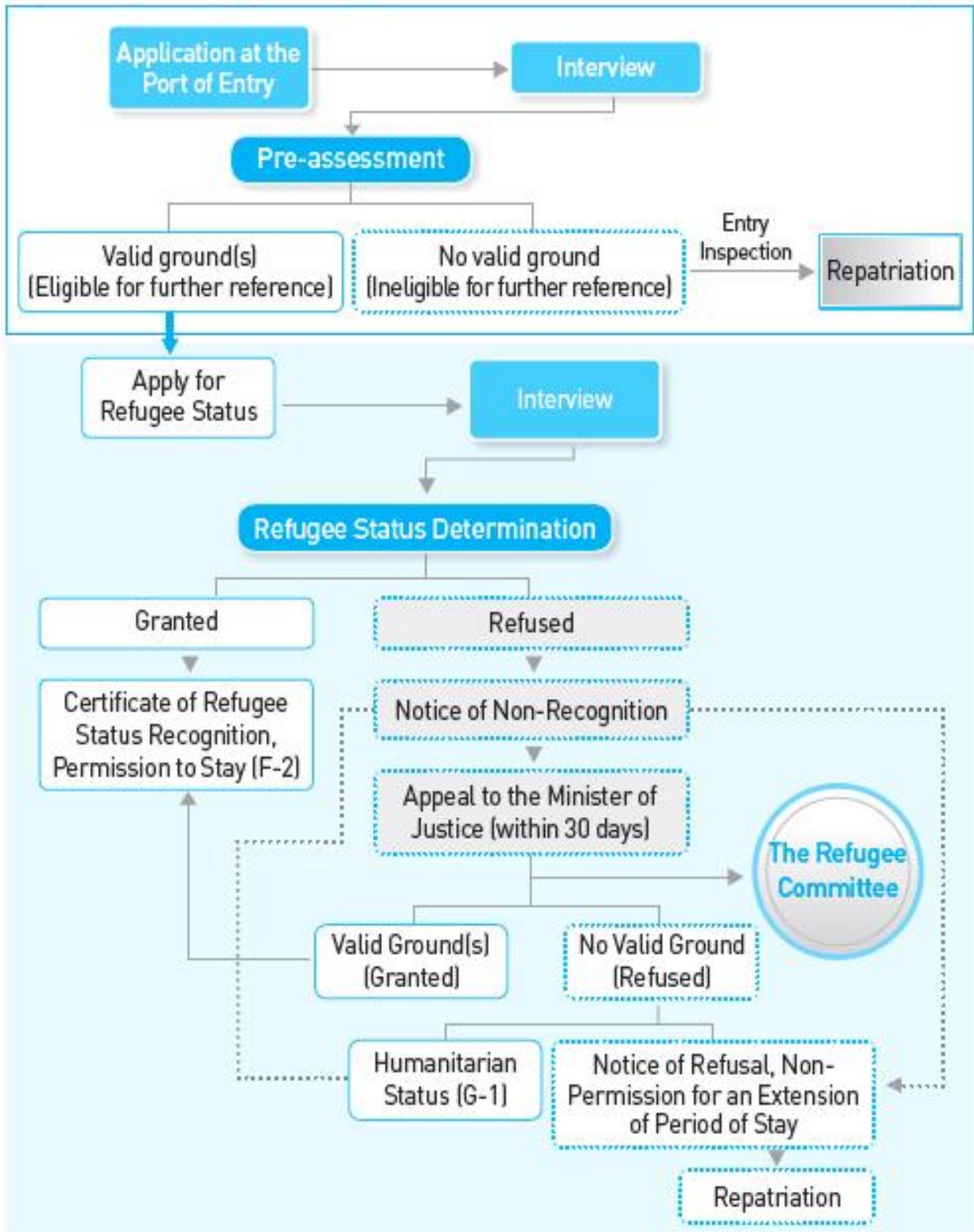
□ Le droit à la prise en charge

- Si les demandeurs remplissent les conditions requises, ils peuvent prétendre à différentes allocations financières.
- Si les demandeurs remplissent les conditions requises, ils peuvent bénéficier de services rendus par le centre d'accueil pour demandeurs d'asile.
- Les demandeurs peuvent avoir l'accès aux soins de santé dans le cadre prévu par la loi.
- L'accès au système d'éducation pour les familles des demandeurs d'asile est identique à celui réservé aux nationau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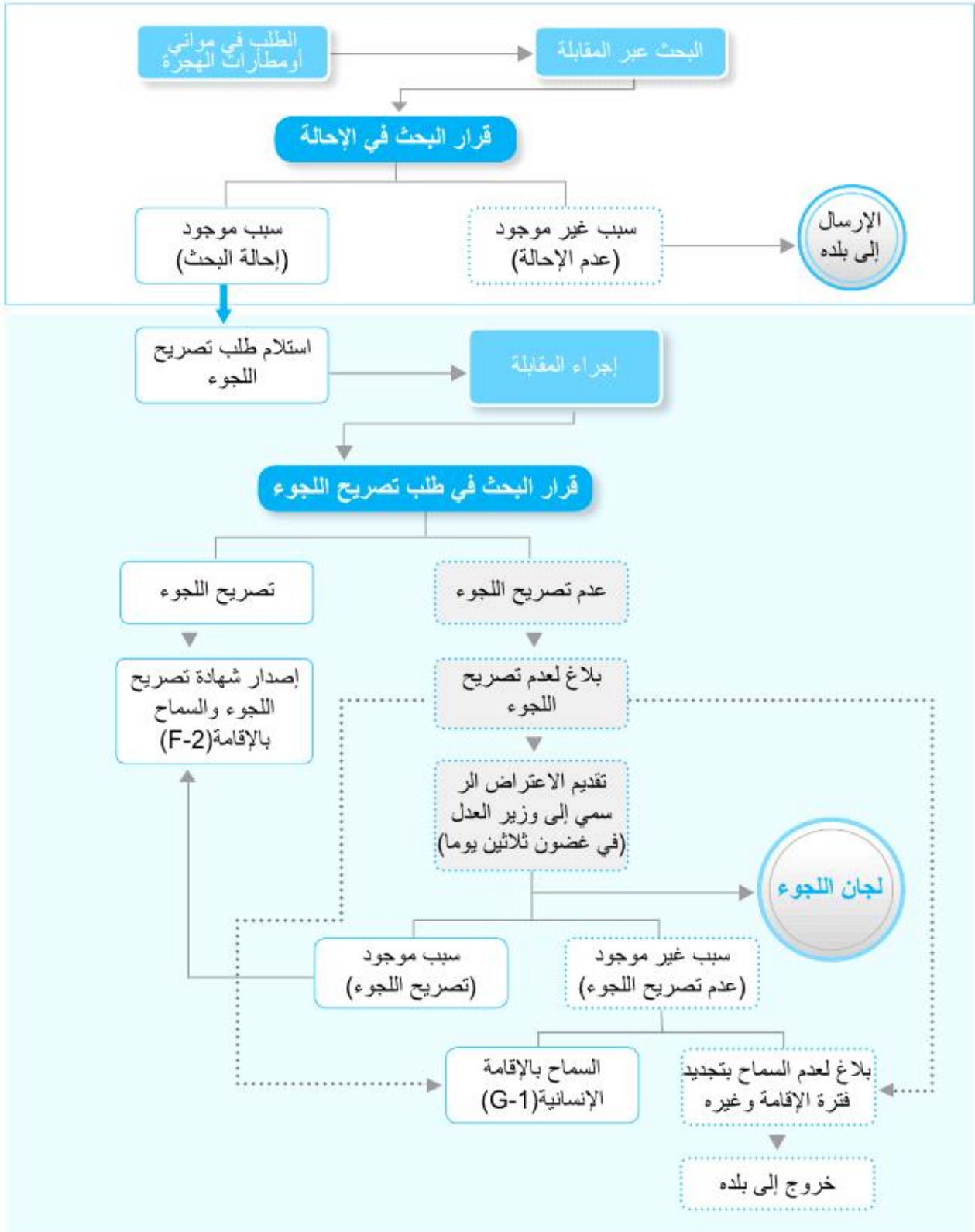
출입국향 난민인정 신청 및 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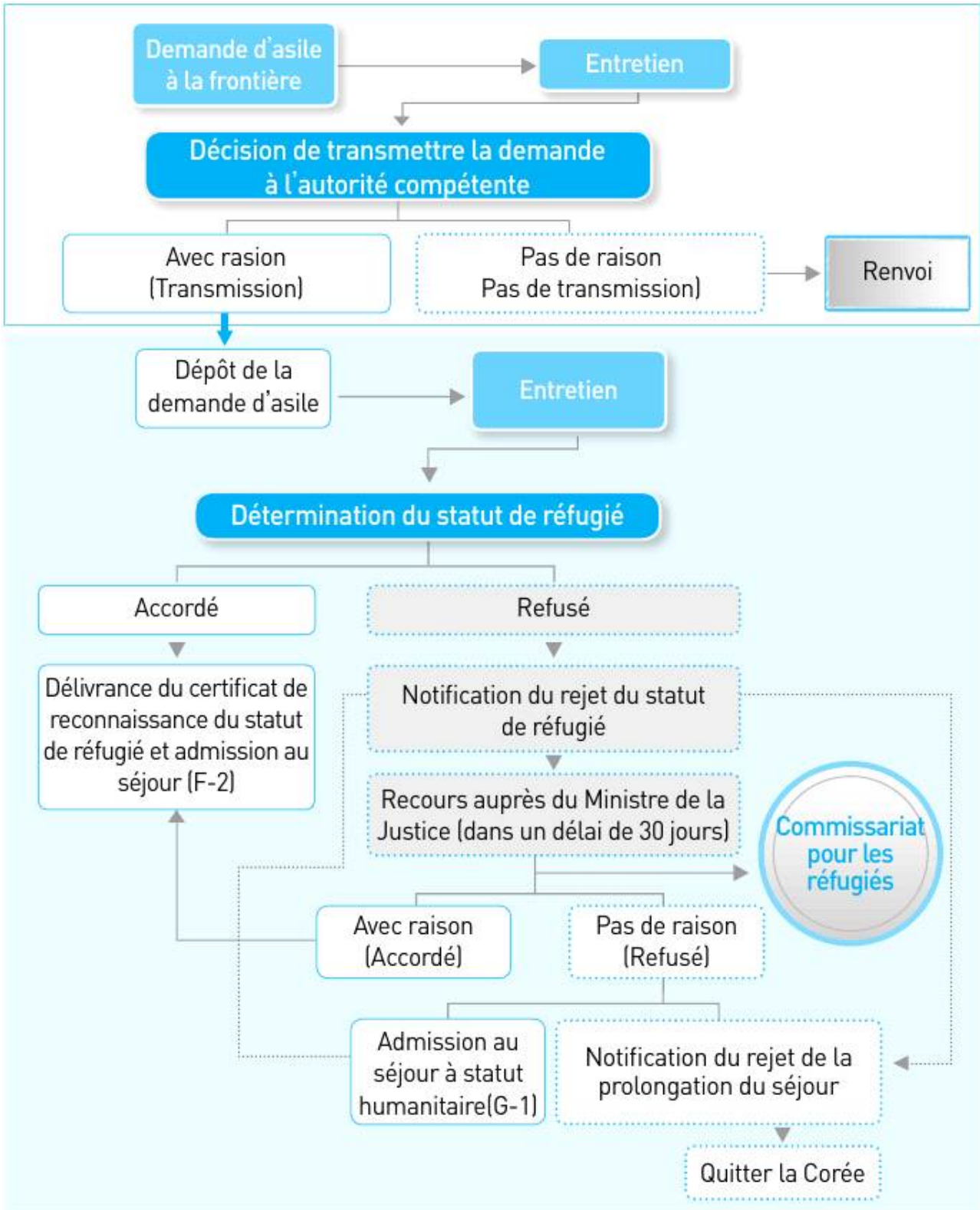
Application for Refugee Status and Asylum Procedure at Ports of Entry



عملية طلب ومعالجة تصريح اللجوء في مواني أو مطارات الهجرة



La Procédure de demande d'asile à la frontière



난민의 정의

“難民”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합니다.

난민인정 신청 접수 방법

- 난민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 난민신청서에는 난민임을 입증할 서류를 첨부합니다.
 - * 글을 모르거나 통역이 필요하면 신청서 작성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난민신청은 반드시 입국심사를 받을 때 하여야 합니다.
 - * 입국심사가 끝나고 입국이 불허된 다음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난민신청은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하여야 합니다.
- 난민신청은 그 신청의 대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 출입국향에서 난민인정을 신청하면,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를 심사·결정 하게 되며,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난민심사대기실에 머무르게 됩니다.
 - * 대기실에 머무르는 동안 난민신청자에 일정한 범위의 의식주가 제공됩니다.
 - * 난민신청자가 대기실에 머무르는 기간은 난민인정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7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 난민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정되면 난민 인정 신청에 대한 접수증을 발급 받고 입국이 허가됩니다.

거짓된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로 난민 인정을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난민법 제47조)

Definition of Refugee

A "refugee" refers to an alien who is unable or unwilling to avail him/herself of the protection of his/her country of nationality owing to well-founded fear of being persecuted for reasons of race, religion, nationality, membership of a particular social group or political opinion; or who, not having a nationality, is unable or, owing to such fear, unwilling to return to the country of his/her former residence (hereinafter "the country of habitual residence") prior to entry into the Republic of Korea.

How to Apply for Refugee Status

- An individual wishes to apply for refugee status must fill out the **Refugee status application form**.
 - * Please attach documentary evidence for reference in the determination of refugee status.
 - * Please ask for assistance if you are illiterate or in need of an interpreter.
- The application must be submitted **during the entry inspection**.
 - * If an individual is rejected entry as the result of entry inspection, his/her application for refugee status thereafter is not acceptable.
 - * Application after a repatriation order can be used as a basis for ineligibility to refer for further procedure on the ground of abusive application.
- An asylum application must be submitted to **(an) immigration officer(s)**.
- Refugee **Application by proxy** is not allowed.
- An application made at a port of Entry will be pre-assessed for eligibility whether to refer the case further, and the applicant will stay in a designated waiting room during the procedure.
 - * During the waiting time, an applicant will be provided with basic food, accommodation and clothing.
 - * The maximum period for waiting is no more than 7 days after the refugee status application form has been submitted.
- If an applicant is determined to be eligible for further process, he/she will be issued with **the certificate of receipt** and permitted entry.

A person who was recognised as a refugee or permitted by means of **submitting false documents, giving false statements or by withholding facts** shall be subject to imprisonment not exceeding one year or fines not exceeding 10 million Korean Won. (Article 47 of Refugee Act)

معنى كلمة اللجوء

اللجوء يعني طلب الحماية من جمهورية كوريا الجنوبية وهو يشمل التالي : أي شخص يتعرض للاضطهاد بسبب العرق، الدين، الجنسية، أو لكونه عضواً في جماعة خاصة أو بسبب رأيه السياسي فلا يستطيع أن يحصل على الحماية أو لا يرغب في الحصول على الحماية من بلده أو أي شخص يشعر بالخوف من العودة للبلد التي كان يعيش فيها بعد دخوله جمهورية كوريا الجنوبية أو أي فاقد جنسية لا يرغب في العودة إلى بلده.

كيف تقدم بطلب للحصول على الصفة اللاجئ

- كل فرد راغب في طلب للحصول على الصفة اللاجئ يجب ملء استمارة تصريح اللجوء.
- * يرجى إرفاق الأدلة المستندية كالمواد المرجعية في تحديد الصفة اللاجئ.
- * يرجى طلب المساعدة إذا كنت أمياً أو بحاجة إلى المترجم.
- يجب تقديم استمارة التصريح أثناء التفتيش عند القدوم.
- * إذا رفض الدخول نتيجة للتفتيش عند القدوم، من غير مقبول أن تطلب صفة اللجوء.
- يجب تقديم طلب الصفة اللجوء لموظفين مكاتب الهجرة.
- لا يسمح طلب للحصول على صفة لاجئ بالوكالة.
- الطلب في موانئ أو مطارات الهجرة يقام بتقييم للأهلية. والمتقدم سيبقى في غرفة انتظار المخصصة خلال الاجراءات.
- * أثناء فترة الانتظار، سيفقد المتقدم الغذاء الأساسي، الكساء، السكن.
- * المدة القصوى للانتظار ليست أكثر من 7 يوماً بعد أن قدمت استمارة طلب اللجوء.
- إذا تحدد المتقدم أن يكون مؤهلاً للعملية الإضافية، سيصدر له/ها الشهادة والدخول المسموح.

يعاقب الشخص المعترف به كلاجئ بواسطة تقديم الوثائق الزائفة وتصريحات خاطئة أو حجب الحقائق بالسجن لمدة لا تتجاوز سنة واحدة أو غرامات لا تتجاوز 10 ملايين ون كوري.(المادة 47 من قانون اللاجئين)

La définition du « réfugié »

Un réfugié est une personne qui, par crainte d'être persécutée du fait de sa religion, de sa race, de sa nationalité, de ses opinions politiques ou de son appartenance à un certain groupe social, se trouve hors du pays dont elle a la nationalité et ne peut ou ne veut en réclamer la protection ou dans lequel elle a sa résidence habituelle et ne peut ou ne veut y retourner.

Comment demander l'asi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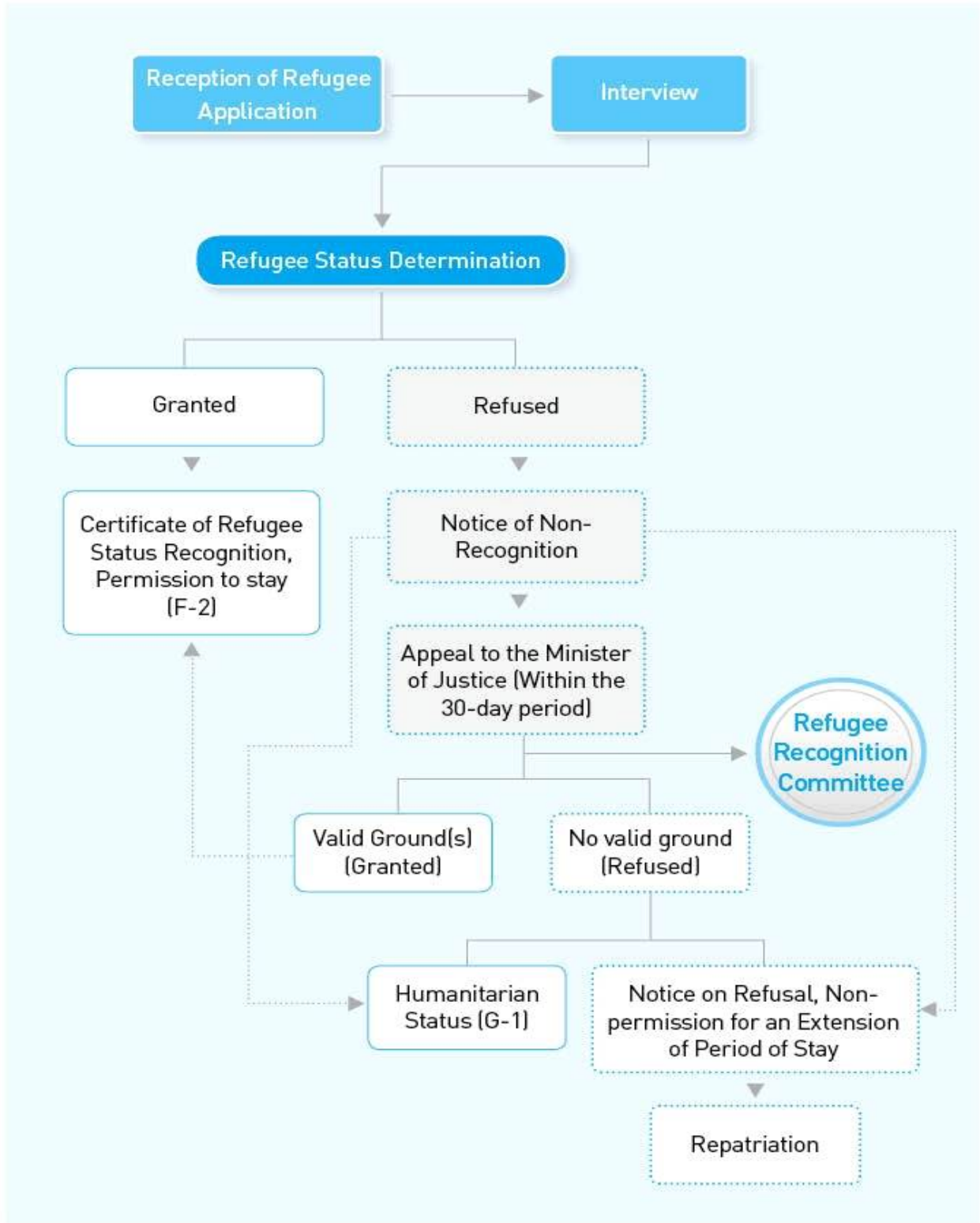
- Si vous souhaitez demander l'asile, vous devez remplir le **formulaire de demande d'asile**.
 - * Vous devez joindre les documents venant compléter votre récit.
 - * Si vous ne savez pas lire ou écrire, vous pouvez demander l'aide d'un interprète pour remplir le formulaire de demande.
- Dès votre arrivée à la frontière, **lors du contrôle de l'immigration**, vous devrez expliquer aux agents que vous souhaitez demander l'asile.
 - * Il est impossible de le demander après le refus d'entrée sur le territoire.
- Vous devez vous adresser **aux agents administratifs aux frontières** pour leur signaler votre souhait puis effectuer les démarches.
- **Vous ne pouvez faire la demande que pour vous-même.**
- Une fois votre demande déposée, les autorités compétentes l'étudieront, puis prendront leur décision quant à sa recevabilité. Vous serez placé en zone d'attente pendant le temps nécessaire à cet examen préliminaire de votre demande.
 - * Pendant ce délai, les autorités répondront à vos besoins fondamentaux tels que le logement, l'habillement et l'alimentation.
 - * La période maximum de maintien dans cette zone est de 7 jours à compter de la date de réception de la demande.
- Si votre demande fait l'objet d'une décision favorable à l'issue de l'examen préliminaire, les autorités vous délivreront **un récépissé** constatant le dépôt d'une demande d'asile. Vous serez **autorisé à entrer sur le territoire coréen**.

Le fait d'utiliser de **fausses déclarations, de faux documents ou de dissimuler des faits** aux fins d'obtenir le statut du réfugié est puni au maximum d'**un an de prison** ou de **10 millions de wons d'amende**. (Article 47, de la loi sur les réfugiés)

난민인정 신청 및 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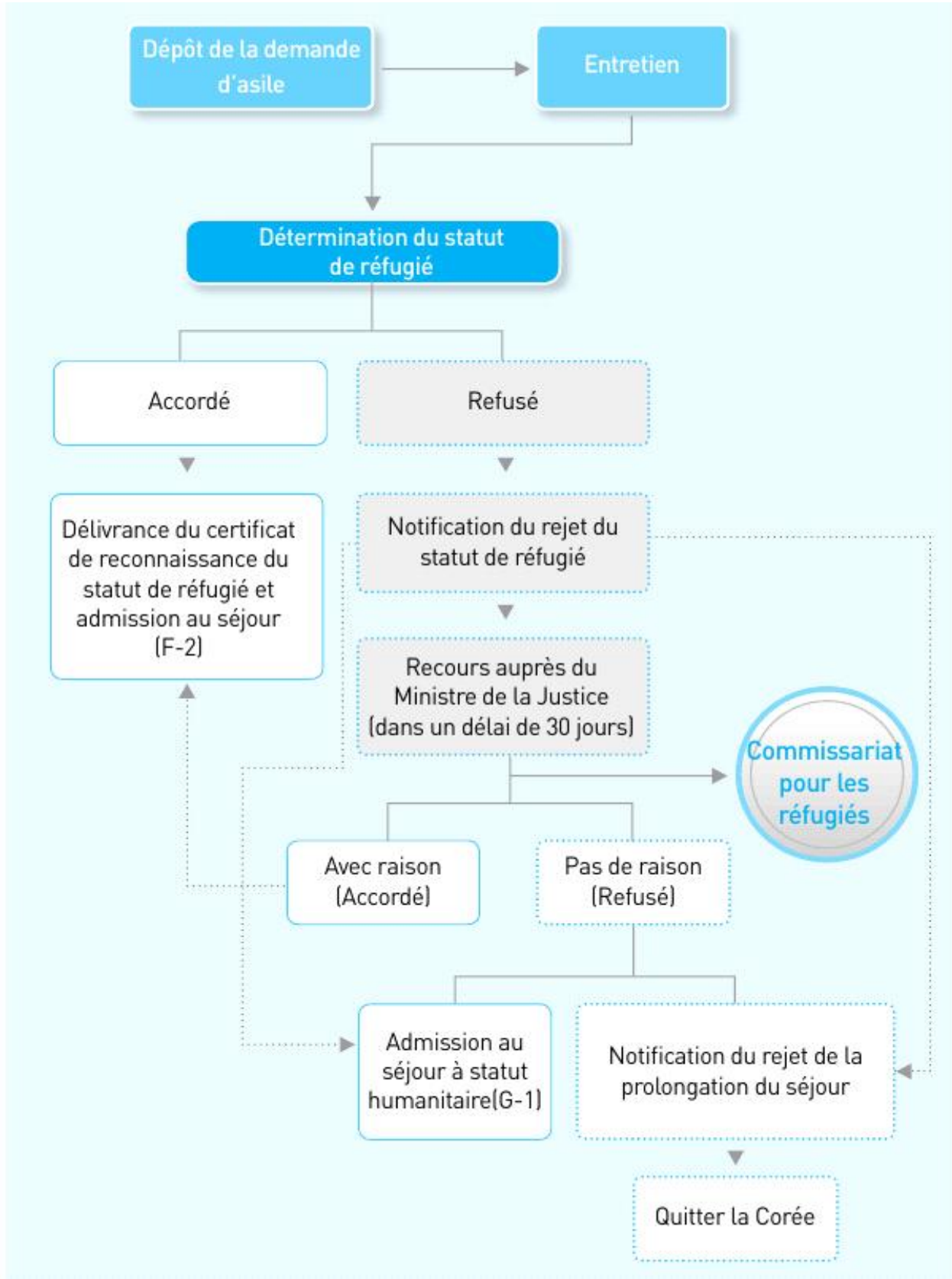
Application for Refugee Status and Asylum Procedure



عملية طلب ومعالجة تصريح اللجوء



La Procédure de demande d'asile en Corée



난민의 정의

“難民”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합니다.

난민인정 신청 접수 방법

- 난민인정 신청은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합니다.
 - * 보호 중 난민인정의 신청은 체류지 관할과 무관하게 **외국인보호소장**에게 합니다.
- 난민인정 신청을 하려면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난민인정신청서는 전국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도 게시)
 - * 난민인정신청서와 함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고 **입증서류**를 첨부합니다.
 - * 글을 모르거나 장애로 인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으면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난민인정신청서는 영어 또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모국어로 작성한 경우에는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난민인정신청은 대리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 * 미성년자는 본인이 신청하거나 민법상 법정대리인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거짓된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로 난민 인정을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난민법 제47조)

Definition of Refugee

A "refugee" refers to an alien who is unable or unwilling to avail him/herself of the protection of his/her country of nationality owing to well-founded fear of being persecuted for reasons of race, religion, nationality, membership of a particular social group or political opinion; or who, not having a nationality, is unable or, owing to such fear, unwilling to return to the country of his/her former residence (hereinafter "the country of habitual residence") prior to entry into the Republic of Korea.

How to apply for Refugee Status

- A refugee status application must be submitted to the **Chief of an Immigration Officer within jurisdiction**.
 - * Application documents are submitted to an Immigration Office for Application and transferred to an Immigration office for Determination.
 - * Application during detention must be submitted to the **Director of an Immigration Processing Center** regardless of applicant's residential jurisdiction.
- **Application for Recognition of Refugee Status** must be submitted to apply for refugee status.
 - * An applicant must provide the passport, and Alien Registration Card (if available), and supplementary documents (if available), for reference in the determination of refugee status.
 - * Please ask for assistance if you are illiterate or unable to fill the application due to disabilities.
- The application should be filled out in either Korean or English. In case of writing in the applicant's native language, a translated version must be attached.
- Application for Refugee Status by proxy is not allowed, the person directly concerned in the application him/herself must apply for the procedure.
 - * A refugee status application for a minor can be applied by him/herself or by legal representative.

A person who was recognised as a refugee or permitted by means of **submitting false documents, giving false statements or by withholding facts** shall be subject to imprisonment not exceeding one year or fines not exceeding 10 million Korean Won. (Article 47 of Refugee Act)

معنى كلمة اللجوء

اللجوء يعني طلب الحماية من جمهورية كوريا الجنوبية وهو يشمل التالي :
 أي شخص يتعرض للاضطهاد بسبب العرق, الدين, الجنسية, أو لكونه عضوا
 في جماعة خاصة أو بسبب رأيه السياسي فلا يستطيع أن يحصل على الحماية
 أو لا يرغب في الحصول على الحماية من بلده أو أي شخص يشعر بالخوف
 من العودة للبلد التي كان يعيش فيها بعد دخوله جمهورية كوريا الجنوبية أو
 أي فاقد جنسية لا يرغب في العودة إلى بلده.

كيف تقدم بطلب للحصول على الصفة اللاجئ

- يجب تقديم طلب الحصول على الصفة اللاجئ إلى رئيس مكتب الهجرة ضمن نطاق الاختصاص.
- * يجب تقديم الطلب أثناء الاحتجاز لرئيس مركز الاحتجاز للأجانب بغض النظر عن نطاق الاختصاص عن السكن.
- يجب تقديم استمارة تصريح اللجوء إذا ارادت تقدم بطلب للحصول على الصفة اللاجئ.
- * يجب على المتقدم أن تقدم جواز السفر, بطاقة تسجيل الأجانب(إذا كانت متوفرة), وثائق تكميلية(إذا كانت متوفرة) كالمواد المرجعية في تحديد الصفة اللاجئ.
- * الرجاء طلب المساعدة إذا كنت أميا أو غير قادرة على ملء الاستمارة بسبب الإعاقة.
- يجب ملء الاستمارة باللغة الكورية أو بالانكليزية. في حالة كتالتك في اللغة الأصفية, يجب إعطاء نسخة المترجمة.
- لا يسمح طلب الصفة اللاجئ بالمتقدم تبديل الوكيل فيجب على شخص أن يقوم باجراءات بنفسه/ها.
- * بنسبة لطلب الصفة اللاجئ لفاصر(تحت السن القانوني), يمكن تطبيقه/ها من قبل ممثل قانوني.

يعاقب الشخص المعترف به كلاجئ بواسطة تقديم الوثائق الزنفة وتصريحات خاطئة أو
 حجب الحقائق بالسجن لمدة لا تتجاوز سنة واحدة أو غرامات لا تتجاوز 10 ملايين ون
 كوري.(المادة 47 من قانون اللاجئين)

La définition du « réfugié »

Un réfugié est une personne qui, par crainte d'être persécutée du fait de sa religion, de sa race, de sa nationalité, de ses opinions politiques ou de son appartenance à un certain groupe social, se trouve hors du pays dont elle a la nationalité et ne peut ou ne veut en réclamer la protection ou dans lequel elle a sa résidence habituelle et ne peut ou ne veut y retourner.

Comment demander l'asile

- Vous devez faire enregistrer votre demande d'asile auprès du **chef du bureau de l'immigration rattaché à votre lieu de résidence**.
 - * Si vous êtes placé dans un centre de rétention administrative, adressez-vous au chef de l'établissement.
- Si vous souhaitez demander l'asile, vous devez remplir le **formulaire de demande d'asile**.
 - * Vous pouvez trouver le formulaire dans les bureaux de l'immigration ou le télécharger sur le site officiel du Service de l'Immigration de la Corée (hikorea.go.kr).
 - * Avec le formulaire rempli et **des preuves documentées**, vous devez présenter le **passport et/ou la carte de séjour pour les étrangers**.
 - * Si vous ne savez pas lire ou écrire, vous pouvez demander l'aide d'un agent chargé de l'accueil pour remplir le formulaire.
- Le formulaire doit être rempli en coréen ou en anglais. Il est obligatoire, s'il est écrit en votre langue maternelle, que la traduction soit faite en l'une de ces deux langues.
- Vous ne pouvez faire la demande que pour vous-même.
 - * Si vous êtes mineur, votre représentant légal peut aussi se charger de votre demande.

Le fait d'utiliser de **fausses déclarations, de faux documents ou de dissimuler des faits** aux fins d'obtenir le statut du réfugié est puni au maximum d'un an de prison ou de **10 millions de wons d'amende**. (Article 47, de la loi sur les réfugiés)

붙임 8

생활실태서

생활실태서

Report on Current living condition

	[<input type="checkbox"/>] 난민인정자(Recognized Refugee)	[<input type="checkbox"/>] 인도적체류허가자 (Individual with Humanitarian status)	[<input type="checkbox"/>] 난민인정자 등 가족 (Family member of Recognized Refugee and etc.)			
신청자 인적사항 (Personal Information)	성명(Name in Full)		생년월일(Date of Birth) 성별(Gender)			
			외국인등록번호(Alien registration No.)			
	국적(Nationality)		종교(Religion)			
	대한민국 내 주소(Address in Korea)		전자우편(E-mail)			
			연락처(Contact Number)			
거주형태(Residential Type)						
[<input type="checkbox"/>] 자가(One's own house) [<input type="checkbox"/>] 전세(Lease on a deposit basis)						
[<input type="checkbox"/>] 월세 Monthly Rent [<input type="checkbox"/>] 기타 (Others)						
취업사항 (Vocational Information)	구분	[<input type="checkbox"/>] 정규직(Full-time)	[<input type="checkbox"/>] 시간제(Part-time)			
	근무처 명(Name of Work Place)	연락처(Tel. No. of Workplace)				
		근무처주소(Address of Workplace)				
	월평균 급여액 (Monthly Income)					
지원 사항 (Information on Assistance)	생계비 지원 (Living Expense Assistance)	구분 (Content)	기초수급대상 (Area(s) for Basic Assistance)	기관 지원 (Assistance by Organization(s))	개인 지원 (Assistance by Individual(s))	
			[<input type="checkbox"/>] 생계(Living Expense),	ex)난민인권센터,UNHCR 등 (NANCEN, UNHCR, etc),		
			[<input type="checkbox"/>] 급여 (Wage),			
	[<input type="checkbox"/>] 의료 (Medical Assistance)					
	지원금액 (Amount of Assistance)					
	현물지원 (Assistance by Materials)					
동반가족 (Accompanying Family)	성명 (Name in Full)	생년월일 (Date of Birth)	관계 (Relation)	직업 (vocation)	주소 및 연락처 (Address and Contact No.)	
작성일(date) 20 . . .		서명(Signature)				

Confirmation

본인은 난민법 제30조 내지 제44조의 처우를 신청함에 있어서 아래의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I hereby confirm and certify that I have been informed the following details regarding an application for treatments pursuant to Article 30 and/or Article 44 of the Refugee Act.

1. 처우신청과 관련된 진술 및 제출한 자료가 모두 사실과 부합합니다.

All statements and materials submitted by the applicant regarding an application for treatments are true in all respects.

2. 만약 허위 진술 또는 거짓 자료 제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지급된 생계비 등 각종 지원이 중단 및 환수 될 수 있습니다.

If the statements or materials given is found to be false, it may result in termination and/or recollection of the support (e.g. paid living expenses, etc.).

3. 처우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사실이 발생한 경우 추가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In the event of a change of circumstance which may affect the eligibility evaluation for support, an additional material(s) must be submitted.

4. 처우심사 결과를 문자메세지로 수신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I hereby agree to receive to eligibility evaluation result via SMS.

00 Year 0 Month 0 Day

○ Name : *(Sign or Seal)*

○ Alien Registration Number (Date of Birth) :

Minister of Justice

Confirmation

إقرار

본인은 난민법 제30조 내지 제44조의 처우를 신청함에 있어서 아래의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أقر بأنني قد أبلغت بكافة التفاصيل المتعلقة بطلب دعم المعاملة وذلك طبقاً للمادة 30
و/أو المادة 44 من قانون اللاجئين.

1. 처우신청과 관련된 진술 및 제출한 자료가 모두 사실과 부합합니다.

1. كافة الأقوال والمستندات التي عرضها مقدم الطلب بشأن طلب دعم المعامات
صحيحة من جميع النواحي.

2. 만약 허위 진술 또는 거짓 자료 제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지급된 생계비 등
각종 지원이 중단 및 환수 될 수 있습니다.

2. في حالة اكتشاف أن الأقوال والمستندات المقدمة زائفة, من الممكن أن يسفر ذلك
عن إنهاء و/أو استرداد الدعم. (نفقات المعيشية المدفوعة, الخ)

3. 처우심사에 명함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사실이 발생한 경우 추가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في حالة تغيير الظروف التي من الممكن أن يؤثر في تقييم الأهلية للحصول على
الدعم, يجب تقديم المواد الإضافية.

4. 처우심사 결과를 문자메세지로 수신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4. وبذلك أوافق على تلقي نتائج تقييم الأهلية عن طريق الرسائل القصيرة.

00 Year/عام 0 Month/شهر 0 Day/يوم

○ Name/اسم : (توقيع أو ختم)

○ رقم التسجيل الأجنبي(تاريخ الولادة)/ Alien Registration Number(Date of Birth)

Minister of Justice

Déclaration sur l'honneur

본인은 난민법 제30조 내지 제44조의 처우를 신청함에 있어서 아래의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À l'occasion de ma demande conformément à l'article 30 et 44 de la Loi sur les réfugiés, j'ai lu et j'approuve les conditions suivantes:

1. 처우신청과 관련된 진술 및 제출한 자료가 모두 사실과 부합합니다.

- 1) Je déclare sur l'honneur que les informations fournies sont exactes et sincères.
- 2) Je confirme l'exactitude de toutes les informations figurant sur ce document.

2. 만약 허위 진술 또는 거짓 자료 제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지급된 생계비 등 각종 지원이 중단 및 환수 될 수 있습니다.

- 1) Au cas où mes informations et documents ne seraient pas corrects, le versement de l'allocation sera annulé et/ou être remboursé.
- 2) Je m'engage à ne plus recevoir et/ou à rembourser le versement de l'allocation au cas où mes informations seraient inexactes ou falsifiées.

3. 처우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사실이 발생한 경우 추가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En cas de modification de ce dossier, je dois joindre les pièces justificatives au bureau local de l'immigration, puisque tout changement de ma situation peut avoir une conséquence sur l'examen de ma demande.
- 2) Ayant une conséquence sur l'examen de ma demande, tout changement de ma situation doit être averti avec les pièces justificatives au bureau local de l'immigration.

4. 처우심사 결과를 문자메세지로 수신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Je suis d'accord pour recevoir un SMS annonçant le résultat de l'examen de ma demande.

00 Year 0 Month 0 Day

○ Name : (Sign or Seal)

○ Alien Registration Number (Date of Birth) :

Minister of Justice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안내

● 누가 지원에 주나요.

보건복지부 및 각 시·도가 지원합니다.

● 누구에게 지원에 주나요.

난민 등* 및 그 자녀,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국적취득전 여성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중에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난민인정자, 난민신청자(소송 중인 자 포함), 인도적체류자

● 몇 번까지 지원에 주나요.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일부 본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회 진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동일인이 1회 이상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심의를 거쳐 추가지원이 결정됩니다.

● 어디에서 진료를 받나요.

전국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시·도지사가 사업시행 의료기관으로 인증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시(군) ○○○○병원에서도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어느 부분까지 지원에 주나요.

입원과 수술진료(단순 외래 진료는 제외)에 대한 진료비용의 90%가 지원되며, 10%는 본인부담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시도 보건위생과, 보건(지)소, 무료진료소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 ○○○-○○○-○○○○)

Information on Medical Service for the Underprivileged and Labor Migrants

○ Who provide the medical service?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unicipal Governments of Cities and Provinces of Korea provide the service.

○ Who is qualified for the service?

Among recognized refugees/refugee applicants, labor migrants and their children, female marriage migrants without the Korean nationality and their children, those who are not qualified for medical social security system including a health insurance or a medical benefit service.

○ How many times the service can be provided?

Financial support for medical examination not exceeding 5 million won at a time is provided, but the person receiving support shall partially pay for the expenses. If medical examination expenses exceed 5 million won at a time, and if a person receives surgery for more than once, medical institutions determine whether to provide additional financial support after undergoing review.

○ Where should we go to enjoy the service?

Local hospitals/clinics, Red Cross hospitals nationwide, The National Medical Center, and medical agencies and hospitals certified by mayors and governors of each city and province for this project.

(Also, you can receive the service at ○○○ hospital/clinic in the city of ○○○)

○ What is the coverage of the medical service?

90% of expenses for hospitalization and surgery are covered, but the person receiving support shall pay for the 10% of expenses (an outpatient with minor ailment(s) are not included).

○ If you want more detailed information,

Please contact nearby local hospitals/clinics, Red Cross hospital, National Medical Center, the Health and Sanitation Division of local government, public health clinics, or free clinics for more information.

(Tel : ○○○-○○○-○○○○, ○○○-○○○-○○○○)

난민인정자 처우 안내문

1. 거주(F-2)자격 부여 및 자유로운 취업활동 허용

- 난민인정자는 거주(F-2) 체류자격을 받아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하고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취업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2.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및 재입국허가 면제

- 난민인정자는 해외로 여행하기 위해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 내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출입국을 할 수 있고, 별도의 재입국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3. 배우자와 미성년자녀에 대한 가족결합 허용

- 난민인정자의 배우자와 미성년인 자녀는 재외공관에서 단기방문(C-3, 90일) 사증을 발급받아 국내 입국하여 체류할 수 있고, 가족결합 원칙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 보장

- 난민인정자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기초생활 보장

- 난민인정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자
 - 신청 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급여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12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건강보험 혜택 제공

- 난민인정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에 따른 의료서비스 제공

- 난민인정자가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입원과 수술진료에 대한 치료비용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초·중등교육 보장 및 교육비 지원

- 난민인정자와 그의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 국민과 동일하게 초·중등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연령, 수학능력, 교육여건 등에 따라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교육비(입학금, 수업료 등)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한국어 등 사회적응교육 제공

- 난민인정자는 한국어 등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본인의 한국어능력에 따라 단계별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국적 취득 시 면접시험면제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 자세한 사항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등 또는 법무부 이민통합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직업훈련 제공

- 난민인정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관할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학력 및 자격 인정

- 난민인정자는 본국 소재 한국 대사관(총영사관)의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등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과 취득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난민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장애인 등록

- 난민인정자가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며,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Information for Refugees

1. Granting of F-2 status and freedom to pursue employment

- Refugees may reside in Korea under the F-2 (Long-Term Resident) status and may seek jobs without any further, separate approval process.

2. Issuance of Refugee Travel Document and Waiver of Reentry Permit

- In order to travel abroad, refugees may have Refugee Travel Document issued. Refugees may enter Korea and travel abroad freely without a limit within the valid period. Refugees do not need to go through a separate reentry process.

3. Family reunification with spouse and minor children

- Spouse and minor children of refugees may enter Korea with C-3 status (Short-Term Visit General Visa, 90 days) and reside in Korea. They may be recognized as refugees under the principle of family unity.

4. Social security benefits

- In accordance with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you are entitled to the same social security benefits as those of Korean nationals.

5. Basic Living

- Refugees may receive basic living benefits in accordance with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 Eligible recipient : Applicant/recipient whose recognized amount of income is below the minimum standard for livelihood security and who does not have an obligatory provider, or when such provider exists but the provider is incompetent to provide the support, and thus the applicant/recipient cannot receive such support.
 - Where to apply : local Town Office or Community Service Center
 - Types of benefits : Livelihood benefits, housing benefits, medical benefits, education benefits
- ※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129).

6. Health Insurance Benefits

- In accordance with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refugees may receive health insurance benefits as locally-provided policy holders.

※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or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7. Healthcare service in accordance with “Healthcare Services for Migrant Workers and Marginalized People”.

- If refugees are not able to receive medical support including health insurance, medical benefits, etc., they may receive payment support in case they are hospitalized or have to go through surgery. 90% of expenses for hospitalization and surgery not exceeding 5 million won at a time is covered.

※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or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8. Access to primary & secondary education and education support

- Refugees and their minor children may receive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as Korean citizens are entitled to. In addition, they may receive education support (admission fee, tuition fee) in accordance with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depending on their age, scholastic ability, education environment, etc.

※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the local Immigration Office.

9. Korean Language & Social Adjustment Programs

- Refugees may receive education support to help them learn Korean and adjust to Korean society. According to their needs, they can complete various levels of Social Integration Program, which will provide benefits when acquiring Korean citizenship, such as exemption from the interview.

※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the local Immigration Office or the Immigrant Integration Division at the Ministry of Justice.

10. Vocational Training

- Refugees may receive vocational training in accordance with Workers Vocational Skills Development Act.

※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the local Immigration Office.

11. Recognition of academic credentials

- Refugees may have their academic credentials recognized if such credentials are recognized by the Korean embassy, Consulate General or Consul in their country of origin or through Apostille.

※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the Refugee [Policy](#) Division at the Ministry of Justice.

12. Registration as persons with disabilities

- Refugees with disabilities may be registered as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receive welfare support in accordance with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생계비 지원 안내문

신청

- 신청자격
 -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난민신청자
- 제출서류
 - 생계비 지원신청서
 -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단, 없는 경우 난민인정신청접수증)
 - 본인 명의 통장(단,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명의 통장)
 - 확인서
- ※ 위 기재사항 이외에 생계비 지원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병원 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가 있는 경우 추가 제출 가능
- 신청장소
 - 외국인등록한 자는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 외국인등록하지 않은 자는 난민인정신청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입주자는 센터에서 신청 가능



선정
·
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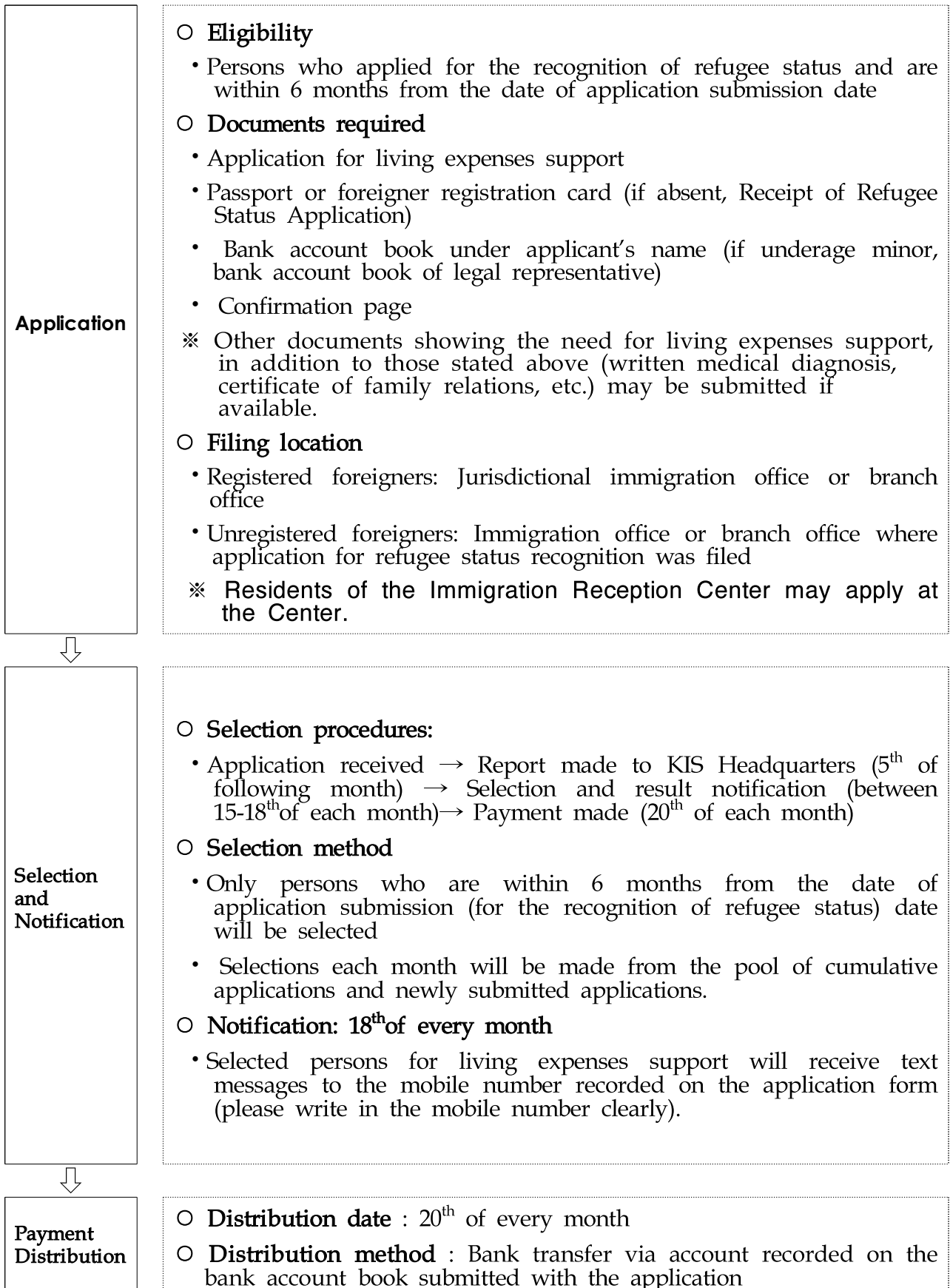
- 선정 절차
 - 신청접수 → 본부 보고 → 선정 및 결과 통지 → 입금
 - (익월 5일) (매월 15일~18일) (매월 20일)
- 선정 방법
 -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자 중에서 선정
 - 매월 선정 시, 전월까지 누적신청자 및 신규신청자 중에서 심사하여 선정
- 통지 : 매월 18일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생계비 신청 시 기재한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 발송(정확한 연락처 기입)



지급

- 지급일 : 매월 20일
- 지급방법 : 신청 시 제출한 통장에 기재된 계좌로 송금

Guidelines for Applying for Living Expenses Support



붙임 13

전국 무료의료기관 현황

시 별	관 할 구	기관(단체)명	주 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비고	
서 울 시	강 남 구	선재마을 의료회 (봉은사내)	삼성동 73	02-511-6070	http://www.seonjae.com	매주 일요일 10:00~16:00	
	강 동 구	명성교회 의료선교회	명일2동 48-10 강동노인 종합복지관	02-442-1026		매주 일요일 13:00~17:00	
	강 북 구	강북구 보건소	한천로 899	02-901-0857 02-901-0839	http://www.ehealth.or.kr	보건소 문의	
	구 로 구	이주민 의료센터	가리봉1동 137-22 서울센터 2,3층	02-863-9966	http://www.mwhospital.com	진료과목 및 일정 홈페이지참조	
	금 천 구		희년선교회	독산1동 144-43 2층	02-854-7829	http://www.jubileekorea.org	매주 일요일 16:00~18:00
			금천구 보건소	시흥동 벚꽃십리길 375	02-2627-2703	http://bogunso.geumcheo n.go.kr/index.php	보건소 문의
			서울시 의료봉사단	시흥1동 558-1 금천구노인중 합복지관	02-804-4058		매주 일요일 14:00~17:00
	동 대 문 구	다일 천사병원	전농1동 496-77	02-2212-8004	http://www.dail.org/1004/	매주 금요일 19:00~21:00 (정신과)	
	서 초 구	서초구 보건소	서초동 1376-3	02-2155-8114	http://www.secho.seoul.k r/health/	보건소 문의0~	
	성 동 구	성동외국인 근로자센터	도선길 8	02-2282-7974	http://www.smwc.or.kr	매월 2,4주 일요일 14:00~17:00	
	성 북 구	성북외국인 근로자센터 (정의교회 의료단)	하월곡동 222-5 월곡복지관 2층	02-911-2884	http://café.daum.net/sbm wcenter	매월 4주 일요일 14:30~16:30 내과,외과,정형외과, 치과	
	영 등 포 구		서울시 의사회	당산동6가121-99	02-2676-9751	http://sma.or.kr/index.php	매주 일요일 13:30~16:30
			영등포구 보건 소	대림3동710-10 영등포다문화 빌리지센터	02-2670-3800 ~7		매월 4주 목요일 16:00~19:00 매월 1,3주 토요일 09:00~13:00 매월 3주 수요일 15:00~17:00

	이 평 구	은평병원	백련산길 93	02-300-8200	http://ephosp.seoul.go.kr	평일 09:00~18:00 내과,가정의학,치과, 정신과
	중 로 구	라파엘 클리닉	혜화동 71-14	02-763-7595	http://raphael.or.kr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지정병원
	중 구	열린의사회	세종대로21길 49 601호	02-764-0980	http://www.opendrs.or.kr	매월 3주 일요일 10:00~15:00(안산) 월 1회 성북, 광주, 의정부, 평택 방문 진료
		선한이웃 클리닉	장충동 1가 26-6 경동교회	02-2274-0161 ~3	http://mclinic.net/renewal/ index.html	매월 1,3주 일요일 14:30~17:30
부 산 시	부 산 진 구	이주민과 함께	전포2동 193-38 SM빌딩 4,5층	051-802-3438	http://somi.or.kr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매주 일요일 무료진료
		부산외국인근로 자 선교회	전포2동 608-1 신우빌딩 511	051-803-9181	http://kpmf.org	매주 일요일 14:00~16:00
		그린닥터스	당감동 967	051-668-8404 051-816-2320	http://www.greendoctor.o rg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지정병원
대 구 시	서 구	대구의료원	중리동 1162	053-651-7597	http://www.daegumc.or.kr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지정병원 매월 2,4주 일요일 14:00~17:00
	중 구	구민교회	태평로 3가 171-1	053-257-0691		매주일요일 14:00~18:00
인 천 시	부 평 구	이주노동자건강 센터 희망세상	부개동 264-6	070-8775-092 01	http://café.daum.net/migr ant-health	매주 일요일 13:00~17:00 치과,한방,의과,약국
광 주 시	광 산 구	광주이주민건강 센터	우산동 1578-1	062-956-3353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지정병원 평일 18:00~20:00 매주 일요일 13:00~17:00 2,4주 목 19:00~20:30 (치과)
	동 구	브릿지 의료인회	서 석 동 470-10, 2층	070-8226-3078	http://www.bmaworld.org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지정병원 매주 일요일 14:30~17:00
대 전 시	중 구	대전이주외국인총 합 복지관	은행동 114-12	042-631-6242	http://www.djmcc.org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지정병원 매주 일요일 14:00~17:00
	대 덕 구	민들레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법동 282-7	042-638-9042	http://www.mindlle.org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지정병원

	서구	민들레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탄방동 735	042-716-7004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지정병원
	동구	벤틀의 집	대전로 835, 2층	042-252-5255 ~6	http://bethelhouse.or.kr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지정병원
		대전외국인사랑 의진료소	중동 61-4	010-5424-0582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지정병원 매주 일요일 14:00~17:00
울 산 시	북구	북구보건소	연암동 1082	052-288-3450		보건소 문의
	중구	울산광역시 의사회	상남동190-239	052-243-2047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지정병원
		사회복지법인 밝은미래 복지재단	복산1동 448-6	052-244-0011		안내 및 연계서비스 지원
	북구	울산대학교병원 울산이주민센터	연암동 1004-1	052-250-7000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지정병원
	남구	울산광역시 한의사회 KOMSTA단원	신정1동 1132-3 (울산가족문화 센터)	052-268-0124	http://komsta.org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지정병원
		가족보건의원	봉월로 63	052-273-4463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지정병원 4~11월 (토,일,월 제외)
경 기 도	고양시	일산동구 보건소	일산동구 마두동 1010	031-8075-4006	http://biz.goyang.go.kr/id_health/	보건소 문의
	광주시	광주시 보건소	경안동 115	031-760-2110	http://health.gjcity.go.kr	보건소 문의
		광주시외국인 근로자 쉼터	역동 138-2	031-763-2766		매주 일요일 15:00~18:00
	김포시	김포시 보건소	사우동 869	031-980-5011		보건소 문의
		김포이주민센터	양촌면 양곡리 405-2 2층	031-982-7661	http://café.naver.com/ichu_nddu/15	
		(사)엠지유	양촌읍 학운리 2769 김포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내	031-986-7660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지정병원 매주 일요일 오전
남양주시	성모클리닉	진전읍 장현리 409-10 남양주 진접 성당교육관 2층	031-572-7264		매월 1,3주 일요일 13:00~16:00	

부천시	부천아주노동복지센터	원미구 소사동 23-18	032-348-7575	http://www.nageune.or.kr	온라인 예약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	원미구 계남로 336, 3층	032-654-0664	http://www.bmwh.or.kr	매월 2,4주 일요일
	선재마을의료회 (석왕사내)	원미구 원미2동 산29-30	032-663-7771	http://www.seonjae.com	매주 일요일 10:00~16:00
	오정구 보건소	오정구 오정동 129	032-320-3677	http://pubhealth.bucheon.go.kr/index.asp	보건소 문의
성남시	분당구 보건소	분당구 야탑동 349	031-729-5360	http://www.bundanghealth.or.kr	보건소 문의
수원시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지부	장안구 수성로 330	031-251-6131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지정병원 3월~9월
	팔달구 보건소	교동 56-1번지	031-228-7716	http://health.suwon.ne.kr	보건소 문의
시흥시	시흥시보건소 (정왕 보건지소)	정왕동 1799-5	031-310-2566		보건소 문의
안산시	원곡 보건지소	단원구 원곡동 795	031-481-3605		매주 목요일
	안산빈센트의원	상록구 사3동 1151	031-407-9780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지정병원 매주 화~일요일
양주시	양주시 보건소	부흥로 1533	031-820-2741	http://health.yangju.go.kr/site/health/main.do	보건소 문의
용인시	용인시의사회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19	031-336-1199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지정병원
군포시	원광대산본병원	산본로 1142	031-390-2752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지정병원
평택시	살롬다문화 지원센터	비전동 301-24 성결교회	031-653-1004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지정병원 매월 2주 일요일 15:00~18:00
	기톨릭누가회	평택동 66-2	031-652-8855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지정병원 매월 4주 일요일 15:00~18:00
	송탄보건소	탄현로 18-2	031-610-8553		매월 2,4주 일요일 14:00~17:00
가평군	성민의원	청평면 청평리 465-5	031-584-7004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지정병원

	화성시	동탄시티병원	반송동 104-1	031-8015-3333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지정병원
충북	진천군	진천군 보건소	진천읍 벽암리 570	043-539-4001	http://www.jincheon.go.kr	보건소 문의
충남	천안시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동남구 순천향 6길3	041-570-3866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지정병원
		천안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무료진 료소	동남구 망향로 201	041-550-6890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지정병원 (진료 매월 2,4주 일요일 14:00~16:00 (건강진단) 3주 일요일 14:00~16:00
전북	부안군	부안군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부안읍 서외리 536-15	063-580-3942		장소: 혜성병원(부안읍 은 선리55) 세란의원(부안읍 봉덕리789-1)
	전주시	성루카무료진료 소	완산구 현무1길 40	063-285-0041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지정병원
경북	경산시	경산이주 노동자센터무료 진료소	중방동 328-17 3층	053-814-4180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지정병원 분기별1회 4주 일요일 14:00~16:00
경남	창원시	경남이주민센터	의창구 사화로 18번길 30	055-277-8779	http://www.mworker.or.kr	매월 2,4주 일요일 14:00~16:00 (한방) 매주 일요일 16:00~18:00 (검진) 4주 일요일 14:00

■ 기초생활 급여 업무처리 개요 ■

1. 급여의 신청

가. (신청주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해당 가구의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법 제21조제1항)

나. (직권주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지역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생활이 어려우나 급여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자)에 대한 급여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법 제21조제2항)

2. 소득·재산조사

급여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토록 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법 제22조)

3. 급여의 결정 및 통지

가. 급여의 결정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신청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하여야 함(법 제26조)

시·군·구에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조사한 내용을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등록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결정내용(보장적합 또는 부적합)을 즉시 입력

차상위계층 조사 실시 후 최저생계비,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 등의 변동으로 신규 수급(권)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매년 1월에 급여내용을 결정

나. 급여신청자에 대한 통지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신청에 대하여 그 결정요지, 급여종류, 급여방법 및 급여개시시기 등을 명시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변경·중지·정지·상실] 통보서를 수급(권)자 또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법 제26조제3항)

☞ 반드시 보장기관인 시장·군수·구청장 명의로 통지되어야 하며, 읍·면·동장의 명의로 통지되지 않도록 유의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되, 부양의무자 조사 등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음

다. 급여신청자의 이의신청

급여신청을 한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1.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 의무

4. 급여의 실시 및 수급(권)자 관리

가. 급여의 실시

수급(권)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결정된 급여를 지급

나. 수급(권)자 관리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구성원,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변동사항을 당사자의 신고 또는 담당공무원의 확인조사 등을 통하여 파악하여 급여중지, 급여변경 등에 반영

부정수급(권)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실업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실업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1. 실업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여성가장 또는 청소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3. 삭제 <2010.5.31>
4. 삭제 <2010.5.31>
5. 삭제 <2010.5.31>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6조(실업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취업대상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를 받는 사람 중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기능습득의 지원대상자

다.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를 받는 사람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가장

가. 이혼, 사별(死別)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

나.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다.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世帶)를 같이하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로서 60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이거나 장애, 질병, 군복무 및 재학(在學) 등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부양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여성가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를 포함한다)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청소년

②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훈련의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2. 자영업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또는 가족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제대군인(전역예정자를 포함한다)
9.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서 농어업 이외의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
1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1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12.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추천하는 사람
1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으로서 졸업이 예정된 사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7조(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은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용이성,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상황, 훈련 수요 및 훈련대상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대상자는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훈련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선발하되, 훈련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우선 선발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을 통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훈련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에게는 소득수준, 가족상황 등 훈련생의 여건, 훈련직종, 훈련 수강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간은 1년 이하로 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인력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훈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교과 편성, 훈련생 관리, 취업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3조(실업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자 선발)

① 영 제7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2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에 따라 수강 또는 지원·용자의 제한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않을 것

2.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훈련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구직등록을 한 후 취업(180일 이상 취업한 경우만 해당한다) 시까지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 및 영 제11조에 따른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을 3회 이상 수강(법 제18조에 따른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계좌를 3회 이상 발급한 경우를 말한다)한 사실(법 제55조에 따라 수강 또는 지원·용자의 제한처분을 받은 경우와 훈련 중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는 수강한 것으로 본다)이 없을 것

4. 정부로부터 훈련비 등을 지원받는 훈련과정을 수강하고 있는 사람이 아닐 것

② 영 제7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순위"란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2. 직업안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훈련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구직등록을 한 후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

4.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이직한 사람

법질서 준수 확인서
(Certificate of Legal Compliance)

1. 인적사항 (Personal Details)

국적 (Nationality)		성명 (Name)	영문(English) 한자(漢字, Chinese Character)
생년월일 (Date of Birth)		성별 (Sex)	
주소 (Address)	()		

2. 내용 (Contents)

상기 본인은 난민신청자로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한 사실을 인정하며 이후에는 불법취업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상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I hereby, admit that I worked without permission for activities beyond the given status of stay, so I swear that I will never work without permission. If I violate the order again, I will accept any punishments under the Immigration Control Act

작성일 (Date) : 20 . .

작성자 (Applicant) : _____ 서명 (Signature)

법무부장관 귀하 (Minister of Ministry of Justice)

난민신청자 취업허가 안내문

Notice on Permission for Employment of Refugee Status Applicants

○ 난민신청자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취업허가를 받아 취업할 수 있습니다

If a refugee status applicant meets all conditions below, he/she may obtain permission for employment and engage in wage-earning employment.

-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6 months have passed since the person applied for refugee status

- 취업허가 신청당시 난민신청자 자격(G-1-5)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the person is on the G-1-5 visa when applying for permission for employment

※ 출국기한 유예 중인 자(재신청자 포함)는 취업허가를 받을 수 없음

A person whose termination of departure has been postponed (including re-applicants) cannot obtain permission for employment)

○ 유의사항(Note)

- (취업제한 업종) 건설업,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업종, 법무부장관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있는 경우 취업이 제한될 수 있음

- (Prohibited Places for Employment) A refugee status applicant may be prohibited from working in a business which may be prejudicial to good public morals and public order such as construction, speculative and gambling businesses, or in a business where the Minister of Justice deems it necessary to prohibit employment activities.

- (전문분야 취업) 외국어강사, 통역 또는 번역 등 전문적인 업종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자격증,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Employment in professional field) If a refugee status applicant wishes to work in a field which requires professional skills including as foreign language instructor, interpreter or translator, he/she shall meet the qualifications such as certificates stipulated in relevant laws.

【취업허가 절차】 Procedures to Obtain Permission for Employment

①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사전 신청

Application for permission for activities beyond your given status prior to the start of work

■ 제출서류(Required documents)

- 신청서(Application), 수수료(12만원) *fees (KRW 120,000)*
- 여권(Passport), 외국인등록증(Alien Registration Card)
- 고용계약서(Employment contract),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장 관련 서류(work related documents such as business licenses)

■ 제출장소(Where to Submit)

-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

Local immigration office with jurisdiction over your place of stay



② 허가여부 결정

Decision whether to grant permission

- 허가 받은 경우(If permitted) : 허가 받은 업종·기간 내에서 취업 시작

(Engage in wage-earning employment within the permitted field and period)

- 허가 받지 못한 경우(If not permitted) : 업종변경, 서류보완 등 이후 재신청
(Re-apply for permission for activities beyond your given status after changing business field or complementing documents)



③ 근무처가 변경되는 경우

If workplace has changed

- 위 ①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사전 신청 절차에 따라 사전 신청

Re-application for permission for activities beyond given status as mentioned in ①

※ 허가받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새롭게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함

This shall apply even if you are within the authorized period of stay.

※ 취업활동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하는 경우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You may be subjected to punishment for violating relevant laws if you engage in wage-earning employment without obtaining permission for employment.

난민신청자 취업허가 안내문

Autorisation de travail du demandeur d'asile

- 인도적체류자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취업허가를 받아 취업할 수 있습니다.

Tout demandeur d'asile peut solliciter une autorisation de travail s'il satisfait les conditions suivantes :

-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La demande d'asile a été déposée depuis plus de 6 mois et ;

- 취업허가 신청당시 난민신청자 자격(G-1-5)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Le demandeur est bien titulaire du statut de demandeur d'asile (G-1-5) au moment du dépôt de sa demande d'autorisation de travail

※ 출국기한 유예 중인 자(재신청자 포함)는 취업허가를 받을 수 없음

NB : L'autorisation de travail n'est pas octroyée au demandeur faisant l'objet d'un sursis à exécution des mesures d'éloignement et au demandeur faisant enregistrer sa demande d'asile multiple.

○ 유의사항(Remarques)

- (취업제한 업종) 건설업,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업종, 법무부장관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있는 경우 취업을 제한될 수 있음

(**Métiers limités aux étrangers**) Des emplois susceptibles de nuire à l'ordre public et aux bonnes mœurs, notamment ceux se rapportant au secteur du bâtiment ou au jeu de hasard, et toute activité que le ministre de la Justice juge nécessaire de contrôler l'accès sont limités aux étrangers.

- (전문분야 취업) 외국어강사, 통역 또는 번역 등 전문적인 업종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자격증,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Secteurs professionnels**) Pour l'exercice des emplois professionnels, notamment l'enseignement des langues étrangères, l'interprétation ou la traduction, le demandeur doit avoir obtenu au préalable le permis exigé et satisfaire les qualifications requises par la loi.

【취업허가 절차】 【Procédure de la demande d'autorisation de travail】

①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사전 신청

Demande préalable de travail pour les activités non couvertes par le statut de séjour

■ 제출서류(Pièces justificatives à joindre à la demande)

- 신청서(Formulaire de demande), 수수료(12만원) frais (120,000 KRW)
- 여권(Passeport), 외국인등록증(carte de résident étranger)
- 고용계약서(Contrat de travail),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장 관련 서류
(immatriculation de l'entreprise au Registre du Commerce)

■ 제출장소(Lieu du dépôt de la demande)

-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
Bureau local d'immigration territorialement compétent en fonction de votre domicile



② 허가여부 결정

Autorisation de travail

■ 허가 받은 경우(Si la demande est acceptée.) : 허가 받은 업종·기간 내에서 취업 시작
(Le demandeur peut travailler dans la limite du secteur et de la durée autorisés)

■ 허가 받지 못한 경우(Si la demande est rejetée.) : 업종변경, 서류보완 등 이후 재신청
(Le demandeur peut déposer sa nouvelle demande en changeant le secteur de travail ou en complétant son dossier)



③ 근무처가 변경되는 경우

Changement du lieu effectif de travail

■ 위 ①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사전 신청 절차에 따라 사전 신청

Tout changement du lieu de travail devra d'office faire l'objet d'une **nouvelle demande préalable** suivant la procédure ① « Demande d'autorisation préalable de travail pour les activités non couvertes par le statut de séjour »

※ 허가받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새롭게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함

NB : Le demandeur devra recevoir une nouvelle autorisation de travail même si la date de validité de son permis de travail n'est pas encore arrivée à son terme.

※ 취업활동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하는 경우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NB: L'exercice de toute activité sans autorisation de travail préalable peut être considéré comme une activité illégale et faire l'objet d'une sanction.

난민신청자 취업허가 안내문

الإعلان الخاص بتصريح العمل لطالب اللجوء

○난민신청자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취업허가를 받아 취업할 수 있습니다.

- 난민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 취업허가 신청 당시 난민신청자 자격(G-1-5)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 * 출국기간 유예 중인 자(재신청자 포함)는 취업허가를 받을 수 없음

○ من بين طالبي اللجوء، من الممكن أن يحصل على تصريح العمل في حال توفر كل الشروط التالية.

- بعد سنة أشهر من تاريخ طلب اللجوء
- عند تقديم طلب تصريح العمل، يجب أن يحتفظ بصفة طالب اللجوء (G-1-5)
- * الشخص الذي يقوم بإرجاء تاريخ المغادرة (وأيضاً، الشخص الذي قام بإعادة طلب اللجوء) لا يستطيع أن يحصل على تصريح العمل

○유의사항

- (취업제한 업종) 건설업,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업종, 법무부장관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있는 경우 취업이 제한될 수 있음
- (전문분야 취업) 외국어강사, 통역 또는 번역 등 전문적인 업종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자격증,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ملاحظات

- (أنواع الوظائف المحدودة) أعمال الإنشاء وأنشطة المضاربة وغيرها من الأعمال ضد التقاليد والعادات الأخلاقية أو النظام الاجتماعي. وقد يفرض وزير العدل الحد من العمل وفقاً لقراره.
- (الحصول على العمل في المجالات المتخصصة) عندما يريد طالب اللجوء أن يعمل في المجالات المتخصصة بما فيها مدرس اللغة الأجنبية أو المترجم وغيرها، يحتاج إلى المؤهلات التي ينص عليها القانون ذو الصلة. ويحتاج إلى الشهادة ذات الصلة.

【취업허가 절차】

إجراءات تصريح العمل في كوريا الجنوبية

①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사전 신청

طلب تصريح العمل مسبقاً

■ 제출서류

- 신청서, 수수료 (12만원)
- 여권, 외국인등록증
-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장 관련 서류

■ الوثائق أو الأوراق

- استمارة طلب تصريح العمل، العمولة (120.000 ون كوري)
- جواز السفر، بطاقة التسجيل للأجانب (أي دي كارد)
- الوثائق المتعلقة بالأعمال بما فيها عقد العمل، وشهادة تسجيل الأعمال وشهادة السجل التجاري وغيرها

■ 제출장소

-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

■ مكان التقديم

- مكتب الأجانب · مكتب الهجرة القريبان من عنوانكم

↓

② 허가여부 결정

قرار عن إعطاء تصريح العمل

- 허가 받은 경우 : 허가 받은 업종·기간 내에서 취업시작
- 허가 받지 못한 경우 : 업종 변경, 서류보완 등 이후 재신청

■ في حال تصريح العمل : من ممكن أن يبدأ العمل في أنواع الوظائف المسموحة بها في الفترة المسموحة بها.

■ في حال عدم تصريح العمل : يجب أن يقوم بإعادة الطلب بعد تغيير أنواع الوظائف وتكميل الوثائق الإضافية.

③ 근무처가 변경되는 경우

في حال تغيير مكان العمل

- 위 ③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사전 신청 절차에 따라 사전 신청

■ يجب أن يقوم بتقديم الطلب مسبقاً طبقاً لإجراءات رقم ①

* 허가받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새롭게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함

* يجب أن يحصل على تصريح العمل مجدداً حتى لو لم تنتهي فترة العمل المسموحة بها

*취업활동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하는 경우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You may be penalized for violating relevant laws if you work without getting a work permit.

ومن الممكن أن يعاقب بسبب انتهاك القانون ذي الصلة في حال الحصول على العمل دون

تصريحه

인도적체류자 취업허가 안내문

Notice on Permission for Employment of Humanitarian Status Holders

- 인도적체류자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취업허가를 받아 취업할 수 있습니다.

If a humanitarian status holder meets all conditions below, he/she may obtain permission for employment and engage in wage-earning employment.

- 인도적체류허가를 받은 경우

the person is given permission to stay on humanitarian grounds

- 취업허가 신청당시 인도적체류자 자격(G-1-6)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the person is on the G-1-6 visa when applying for permission for employment

- 유의사항(Note)

- (취업제한 업종)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업종, 법무부장관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있는 경우 취업을 제한될 수 있음

(Prohibited Places for Employment) A refugee status applicant may be prohibited from working in a business which may be prejudicial to good public morals and public order such as speculative and gambling businesses, or in a business where the Minister of Justice deems it necessary to prohibit employment activities.

- (전문분야 취업) 외국어강사, 통역 또는 번역 등 전문적인 업종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자격증,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Employment in professional field) If a refugee status applicant wishes to work in a field which requires professional skills including as foreign language instructor, interpreter or translator, he/she shall meet the qualifications such as certificates stipulated in relevant laws.

【취업허가 절차】

Procedures to Obtain Permission for Employment

①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사전 신청

Application for permission for activities beyond your given status prior to the start of work

■ 제출서류(Required documents)

- 신청서(Application), 수수료(12만원) *fees (KRW 120,000)*
- 여권(Passport), 외국인등록증(Alien Registration Card)
- 고용계약서(Employment contract),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장 관련 서류(work related documents such as business licenses)

■ 제출장소(Where to Submit)

-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

Local immigration office with jurisdiction over your place of stay



② 허가여부 결정

Decision whether to grant permission

- 허가 받은 경우(If permitted) : 허가 받은 업종·기간 내에서 취업 시작

(Engage in wage-earning employment within the permitted field and period)

- 허가 받지 못한 경우(If not permitted) : 업종변경, 서류보완 등 이후 재신청
(Re-apply for permission for activities beyond your given status after changing business field or complementing documents)



③ 근무처가 변경되는 경우

If workplace has changed

- 위 ①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사전 신청 절차에 따라 사전 신청

Re-application for permission for activities beyond given status as mentioned in ①

※ 허가받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새롭게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함

This shall apply even if you are within the authorized period of stay.

※ 취업활동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하는 경우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You may be subjected to punishment for violating relevant laws if you engage in wage-earning employment without obtaining permission for employment.

인도적체류자 취업허가 안내문

Autorisation de travail du bénéficiaire du statut humanitaire

- 인도적체류자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취업허가를 받아 취업할 수 있습니다.

Tout bénéficiaire du statut humanitaire peut solliciter une autorisation de travail s'il satisfait les conditions suivantes :

- 인도적체류허가를 받은 경우

La demande est en cours d'instruction depuis plus de 6 mois et ;

- 취업허가 신청당시 인도적체류자 자격(G-1-6)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Le demandeur est bien titulaire du statut humanitaire (G-1-6) au moment du dépôt de sa demande d'autorisation de travail

○ 유의사항(Remarques)

- (취업제한 업종)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업종, 법무부장관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있는 경우 취업을 제한될 수 있음

(**Métiers limités aux étrangers**) Des emplois susceptibles de nuire à l'ordre public et aux bonnes mœurs, notamment ceux se rapportant au jeu de hasard, et toute activité que le ministre de la Justice juge nécessaire de contrôler l'accès sont limités aux étrangers.

- (전문분야 취업) 외국어강사, 통역 또는 번역 등 전문적인 업종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자격증,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Secteurs professionnels**) Pour l'exercice des emplois professionnels, notamment l'enseignement des langues étrangères, l'interprétation ou la traduction, le demandeur doit avoir obtenu au préalable le permis exigé et satisfaire les qualifications requises par la loi.

【Procédure de la demande d'autorisation de travail】

①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사전 신청

Demande préalable de travail

pour les activités non couvertes par le statut de séjour

■ 제출서류(Pièces justificatives à joindre à la demande)

- 신청서(Formulaire de demande), 수수료(12만원) frais (120,000 KRW)
- 여권(Passeport), 외국인등록증(carte de résident étranger)
- 고용계약서(Contrat de travail),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장 관련 서류 (immatriculation de l'entreprise au Registre du Commerce)

■ 제출장소(Lieu du dépôt de la demande)

-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

Bureau local d'immigration territorialement compétent en fonction de votre domicile



② 허가여부 결정

Autorisation de travail

- 허가 받은 경우(Si la demande est acceptée,) : 허가 받은 업종·기간 내에서 취업 시작(Le demandeur peut travailler dans la limite du secteur et de la durée autorisés)
- 허가 받지 못한 경우(Si la demande est rejetée,) : 업종변경, 서류보완 등 이후 재신청(Le demandeur peut déposer sa nouvelle demande en changeant le secteur de travail ou en complétant son dossier)



③ 근무처가 변경되는 경우

Changement du lieu effectif de travail

■ 위 ①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사전 신청 절차에 따라 사전 신청

Tout changement du lieu de travail devra d'office faire l'objet d'une **nouvelle demande préalable** suivant la procédure de ① « Demande d'autorisation préalable de travail pour les activités non couvertes par le statut de séjour »

※ 허가받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새롭게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함

NB : Le demandeur devra recevoir une nouvelle autorisation de travail même si la date de validité de son permis de travail n'est pas encore arrivée à son terme.

※ 취업활동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하는 경우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NB: L'exercice de toute activité sans autorisation de travail préalable peut être considéré comme une activité illégale et faire l'objet d'une sanction.

인도적체류자 취업허가 안내문

الإعلان الخاص بتصريح العمل للاجئ الإنساني

○인도적체류자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취업허가를 받아 취업할 수 있습니다.

- 인도적체류허가를 받은 경우
- 취업허가 신청 당시 인도적체류자 자격(G-1-6)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

○ يستطيع اللاجئ الأنساني أن يحصل على تصريح العمل في حال توفر كل الشروط التالية.

- عندما حصل على تصريح الإقامة كاللاجئ الإنساني
- عند تقديم طلب تصريح العمل، يجب أن يحتفظ بصفة اللاجئ الإنساني (G-1-6)

↵

○유의사항

- (취업제한 업종)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업종, 법무부장관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있는 경우 취업이 제한될 수 있음
- (전문분야 취업) 외국어강사, 통역 또는 번역 등 전문적인 업종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자격증,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ملاحظات

- (أنواع الوظائف المحدودة) أنشطة المضاربة وغيرها من الأعمال ضد التقاليد والعادات الأخلاقية أو النظام الاجتماعي. وقد يفرض وزير العدل الحد من العمل وفقاً لقراره.

- (الحصول على العمل في المجالات المتخصصة) عندما يريد طالب اللجوء أن يعمل في المجالات المتخصصة بما فيها مدرس اللغة الأجنبية أو المترجم وغيرها، يحتاج إلى المؤهلات التي ينص القانون ذو الصلة عليها. ويحتاج إلى الشهادة ذات الصلة.

【취업허가 절차】

إجراءات تصريح العمل في كوريا الجنوبية

①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사전 신청

طلب تصريح العمل مسبقاً

■제출서류

- 신청서, 수수료 (12만원)
- 여권, 외국인등록증
-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장 관련 서류

■الوثائق أو الأوراق

- استمارة طلب تصريح العمل، العمولة (120.000 ون كوري)
- جواز السفر، بطاقة التسجيل للأجانب (أي دي كارد)
- الوثائق المتعلقة بالأعمال بما فيها عقد العمل، وشهادة تسجيل الأعمال وشهادة السجل التجاري وغيرها

■제출장소

-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

■مكان التقديم

- مكتب الأجانب · مكتب الهجرة القريبان من عنوانكم

↓

② 허가여부 결정

قرار عن إعطاء تصريح العمل

■허가 받은 경우 : 허가 받은 업종·기간 내에서 취업시작

■허가 받지 못한 경우 : 업종 변경, 서류보완 등 이후 재신청

- في حال تصريح العمل : من ممكن أن يبدأ العمل في أنواع الوظائف المسموحة بها في الفترة المسموحة بها
- في حال عدم تصريح العمل : يجب أن يقوم بإعادة الطلب بعد تغيير أنواع الوظائف وتكميل الوثائق الإضافية

↓

③ 근무처가 변경되는 경우

في حال تغير مكان العمل

■위 ③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사전 신청 절차에 따라 사전 신청

■يجب أن يقوم بتقديم الطلب مسبقاً طبقاً لإجراءات رقم ①

* 허가받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새롭게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함

* يجب أن يحصل على تصريح العمل مجدداً حتى لو لم تنتهي فترة العمل المسموحة بها

↓

*취업활동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하는 경우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You may be penalized for violating relevant laws if you work without getting a work permit.

ومن الممكن أن يعاقب بسبب انتهاك القانون ذي الصلة في حال الحصول على العمل دون تصريحه

동석신청서
Application to Accompany Asylum Seeker

난민신청자 인적사항 (Asylum seeker's Personal information)	성명(Name in Full)		생년월일(Date of Birth)	성별(Gender)
	외국인등록번호(Alien registration No.)			
	국적(Nationality)	난민신청접수번호(Refugee application receipt No.)	난민신청일(Date of Refugee application)	
	담당난민심사관(Refugee official in charge)		난민면담예정일(Scheduled date of an interview)	

동석인 인적사항 (companion's Personal Information)	성명(Name in Full)		생년월일(Date of Birth)	성별(Gender)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Resident/Alien registration No.)			
	국적(Nationality)	직업(Vocation)	근무처 명(Name of Workplace)	
	대한민국 내 주소(Address in Korea)		전자우편(E-mail)	
		연락처(Contact Number)		
관계(Relation) [] 가족(Family member) [] 친지(Relative) [] 친구(Friend) [] 변호인(Lawyer) [] 기타				

신청일(Date) 신청인 서명 또는 인(Signature/Seal)

신청인 제출서류	1. 신분증(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Identity Card (Resident Registration Card, Alien Registration Card, Pass port)) 2. 비밀준수서약서 (An Oath of Confidentiality)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Consent for sharing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I, the undersigned, hereby consent to allow all documents and information required for the processing of this application to be viewed by the public officer in charge, as specified under Article 36 of Electronic Government Act. *If you disagree, you shall present all related documents yourself.

동석인(Companion) 서명 또는 인(Signature/Seal)

접수일 (Date)	허가일자(Date of Confirmation)	허가여부 (Confirmation)	불허사유(Reason(s) for Non-Permission)
		[] 허가(Permission)	
		[] 불허(Non-permission)	

담당난민심사관(Refugee officer in charge)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비밀준수서약서
Oath of Confidentiality**

<input type="checkbox"/> 통(번)역인(Interpreter)			<input type="checkbox"/> 동석인(Applicant to Accompany)			<input type="checkbox"/> 기타(Others)			
성명(Name in Full)				생년월일(Date of Birth)			성별(Gender)		
국적(Nationality)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Resident/Alien registration No.)					
대한민국 내 주소(Address in Korea)					전자우편(E-mail)				
					연락처(Contact Number)				
직업(Vocation)		근무처 명(Name of Workplace)			근무처 주소 (Address of Workplace)				

본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난민신청서 관련 통(번)역/동석을 통해 알게 된 아래와 같은 정보를 인터넷, 출판, 방송매체, 출신국 정부 등 외부에 누설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합니다.

I hereby agree not to disclose information below of any nature or kind that comes to my knowledge via various routes including as a translator and applicant's accompany respecting or relating to Refugee Applications to outside agents(Internet, Publications, media, applicant's Government of origin and etc).

- 아 래 -
1. 난민신청자의 인적사항
 2. 주소, 전화번호
 3. 사상, 신념, 건강에 관한 정보
 4.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
 5. 고유식별정보
- Confidential Information -
1. Personal information ;
 2. Address, Phone numbers(s);
 3. Ideology, Faith, Health Information;
 4. Biometric Information, Criminal history;
 5.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of Refugee Status Applicant

난민신청자 등의 인적사항을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 대하여는 난민법 제17조, 동법 제 4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A person who has disclosed personal information of Refugee Applicant without his/her consent shall be subject to imprisonment not exceeding one year or fines not exceeding 10 million Korean Won pursuant to Article 17 and Article 47 of Refugee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서약일(Date)	서약인 서명 또는 인(Signature/Seal)
------------	-----------------------------

난민인정자 인적사항 변경 신고서
Change of Personal Details

난민신청번호 Refugee Status Application No.	접수일자 Receipt Date	처리기간 Processing Period
---	----------------------	---------------------------

현재 인적사항 Applicant's Personal Details	성 Family Name		명 Given Name	
	성 별 Gender	[]M []F	생년월일 Date Of Birth	국 적 Nationality
	여권 번호 Passport No.		여권 발급일자 Passport Issue Date	여권 유효기간 Passport Expiry Date
	한국 내 주소 Address In Korea		휴대전화 Cell phone No.	

변경 인적사항 Applicant's New Personal Details	성 Family Name		명 Given Name	
	성 별 Gender	[]M []F	생년월일 Date Of Birth	국 적 Nationality
	여권 번호 Passport No.		여권 발급일자 Passport Issue Date	여권 유효기간 Passport Expiry Date
	변경 사유 Reasons For Change			
첨부 서류 Submitted Documents	1. 여권 Passport [] 2. 출생증명서 Birth Certificate [] 3. 졸업증명서 Academic Certificate [] 4. 기타 Others []()			

신청 일자: / /
 Date Of Application: (Year) (Month) (Day)
 신청인 서명 또는 인:
 Signature: _____

출입국 · 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장 귀하
 To Chief, ○○ Immigration Office

공용란 FOR OFFICIAL USE ONLY			
결재	담당	과장	소장

난민인정신청서

※ 어두운 난은 적지 마시고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시되, 해당사항만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개월(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	------	----------------------

1. 인적사항

1-1) 성(姓)	1-2) 이름		
1-3) 다른 이름 (혼전 성명, 종교적 이름, 가명, 별명 등)			
1-4) 생년월일(연/월/일)	1-5) 성별 [] 남 [] 여		
1-6) 국적	1-7) 직업		
1-8) 출생지(국가, 시, 도, 마을 이름 등 행정구역을 상세히 기재)			
1-9) 자국에서 등록된 주소지(국가, 시, 도, 마을 이름 등 행정구역을 상세히 기재)			
1-10) 종교 및 종파	1-11) 인종		
1-12) 모국어 및 구사 언어 [] 모국어: [] 한국어 [] 영어 [] 불어 [] 기타 :			

2. 한국 입국사항

2-1) 입국일(연/월/일)	2-2) 입국장소		
2-3) 한국 입국 시 입국허가를 받았나요? [] 예 [] 아니요 '예'인 경우 2-4) ~ 2-6)을 작성하십시오.			
2-4) 여권번호 또는 신분증번호 [] 여권번호: [] 신분증번호:	2-5) 사증 종류	2-6) 사증상 체류기간	
2-7) 2-4)와 같은 인적사항의 여권 등을 제시하고 입국하였나요? [] 예 [] 아니요 '아니요'인 경우 2-8) ~ 2-11)을 작성하십시오.			
2-8) 여권상 성(姓)	2-9) 여권상 이름		
2-10) 여권상 생년월일(연/월/일)	2-11) 여권상 국적		

3. 한국 내 체류사항

3-1) 현재 체류자격	3-2) 체류기간 만료일(연/월/일)		
3-3) 과거 및 현재 다음의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표기하십시오. [] 불법체류 [] 한국 밀입국 [] 위조·변조 여권 사용 [] 형사법 위반 [] 기타			

3-4) 위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를 자세히 쓰시오.

3-5) 대한민국 내 주소

3-6) 연락처

3-7) 전자우편

3-8) 한국 내에 연고자 등이 있으면 표기하고, 아래에 자세한 사항을 쓰시오.

가족 친척 대리인 변호인 통역 친구 기타

성명	관계	전화번호

4. 국적(시민권) 및 영주권

과거 및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국적(시민권) 및 영주권을 모두 쓰시오.

국가	취득일(연/월/일)	상실일(연/월/일)	현재 상태

5. 혼인사항

혼인사항 등을 표기하고, 자세한 내용을 연도순으로 쓰시오.

미혼 결혼 이혼 사별 사실혼 동성혼 기타

발생일(연/월/일)	배우자		현재 상태 (혼인, 이혼, 사별 등)
	성(姓)	이름	

11. 여권사항

11-1) 현재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나요?

[] 예 [] 아니요

11-2) 여권 등 발급기관명

11-3) 발급일

11-4) 취득 목적

11-5)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는 진본이며 적법하게 취득한 것인가요?

[] 예 [] 아니요 (위조, 변조 또는 그 밖의 불법 취득)

11-6)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소지 경위를 자세히 쓰시오.

11-7) 여권이 진본이 아니거나 또는 적법하지 않게 취득하였다면, 그 이유를 쓰시오.

11-8)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를 자세히 쓰시오.

11-9) 현재 여권 등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여권 등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예 [] 아니요

‘예’인 경우 11-10), ‘아니요’인 경우 11-11)을 작성하시오.

11-10) 아래 중 취득 가능한 항목에 표기하시오.

[] 여권 [] 여행증명서 [] 국가 신분증 [] 기타:

11-11) 여권 등을 취득할 수 없다면, 그 이유를 쓰시오.

12. 한국 사증사항

12-1)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사증을 발급받았나요?

[] 예 [] 아니요

12-2) 사증 발급 기관명 또는 지역

12-3) 사증 종류

12-4) 발급일

12-5) 한국 사증 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

12-6) 한국 사증 취득 또는 한국 입국에 도움을 준 사람이 있다면 인적사항과 경위 등을 자세히 쓰시오.

13. 자국 출입국사항

13-1) 최근 자국 출국일(연/월/일)

13-2) 출국 공항·항만 또는 지역

13-3) 출국 교통수단(비행기, 선박 등)

13-4) 출국 당시 출국목적

13-5) 귀국에서는 출국 시 출국허가 또는 출국비자를 받아야 하나요?

[] 예 [] 아니요

13-6) 출국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면, 귀하는 적법한 허가 등을 받았나요?

[] 예 [] 아니요

13-7) 언제 출국허가 등을 받았나요? (연/월/일)

13-8) 출국허가 등을 받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자세히 쓰시오.

13-9) 한국 입국 전 다른 나라에 입국한 적이 있나요?

[] 예 [] 아니요

‘예’로 답한 경우 방문 국가를 연도순으로 모두 쓰시오. (경유국가 등 포함)

입국일 (연/월/일)	출국일 (연/월/일)	방문 국가	체류지	체류자격	방문 목적

13-10) 과거 외국정부로부터(한국 포함) 입국거부, 체류불허, 강제퇴거 등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 예 [] 아니요

‘예’로 답한 경우 아래 사항을 연도순으로 모두 쓰시오.

처분일 (연/월/일)	처분 사항 (입국거부, 체류불허, 강제퇴거 등)	처분 국가	사 유

14. 난민인정 신청사항

난민의 정의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14-1) 아래 난민인정 신청 사유 중 귀하가 해당하는 사항에 표기하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의견: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가족결합:

→ 가족결합 외 다른 사유가 있는 경우 중복하여 표기하십시오.

기타:

14-2)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 친구, 동료가 부당한 처분 또는 박해를 받았나요?

예 아니요

‘예’라면 언제, 누가, 왜, 누구로부터,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자세히 쓰시오.

14-3) 귀하는 귀국하면 부당한 처분이나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예 아니요

‘예’라면 누구로부터, 왜, 어떤 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자세히 쓰시오.

14-4)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이 심문 또는 조사를 받은 적이 있나요?

[] 예 [] 아니요

‘예’라면 누가, 언제, 누구로부터, 왜, 무엇에 대해 조사를 받았는지 자세히 쓰시오.

14-5)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이 귀국에서 체포, 구금 또는 구속된 적이 있나요?

[] 예 [] 아니요

‘예’라면 언제, 누구로부터, 왜, 어떤 조치 등을 받았는지 및 풀려난 경위를 자세히 쓰시오.

14-6)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이 귀국에서 소속된 단체 또는 활동한 단체가 있나요?

[] 예 [] 아니요

‘예’인 경우, 아래 사항을 쓰시오.

성 명(관계)	활동 기간 (연/월/일부터-까지)	소속 단체 또는 활동 단체	활동 정도

14-7) 귀하는 자국정부나 특정 단체에 적대적인 활동을 한 사실이 있나요?

[] 예 [] 아니요

‘예’라면 언제, 어디서, 어떤 활동 등을 했는지 자세히 쓰시오.

14-8)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이 외국정부에 난민 신청을 한 적이 있나요?

[] 예 [] 아니요

(1) ‘예’인 경우, 아래 사항을 쓰시오.

성 명(관계)	신청일	신청 국가	신청 결과 (인정, 불허 등)	취소 또는 철회 여부

(2)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이 다른 국가에서 난민인정을 받았다면,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이 그 국가를 출국한 이유를 자세히 쓰시오.

14-9) 귀국에 거주 중인 가족과 연락하고 있나요?

[] 예 [] 아니요

(1) ‘예’인 경우, 연락하고 있는 가족 사항과 연락 방법, 연락 횟수 등을 자세히 쓰시오.

(2) ‘아니요’인 경우, 그 이유를 쓰시오.

14-10) 귀하의 신청 사유를 뒷받침할 서류나 그 밖의 증거물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예'인 경우, 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십시오.

14-11) 한국에서 난민 신청에 대해서 알게 된 경위를 쓰시오.(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14-12) 한국에 입국한 지 1년이 지나 난민 신청을 한 경우, 그 이유를 쓰시오.

16. 서약

◆ 신청자 서약

본인은 별지의 난민인정 신청에 관한 설명서와 이 신청서의 질문을 모두 이해하고 빠짐없이 작성하였으며,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모든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또한, 제출한 정보가 거짓이거나 기만에 의한 것일 경우 난민인정 신청이 거부되거나, 난민인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인 서약란>

※ 위의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이 직접 작성합니다.

◆ 대리인, 통역인, 미성년 보호자 등 서약

난민신청자와 어떤 관계인지 표기하십시오.

[] 대리인 [] 통역 [] 미성년 보호자 [] 기타(관계를 자세히 쓰시오)

성명/생년월일

국내 주소

연락처

본인은 난민신청자 _____ (신청자 이름 기재) _____ 의 요청으로 난민인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였으며, 신청자가 신청서의 질문을 완전히 이해하고 답변하였고, 작성내용에 틀림이 없음을 동의하고 위 서약에 서명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성명

서명

날짜(연/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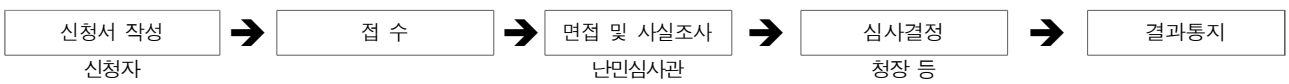
「난민법」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난민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외국인보호소장 귀하

첨부서류	1.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다만, 이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난민인정 심사에 참고할 만한 문서 등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 3.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3.5센티미터 × 4.5센티미터) 1장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Application for Recognition of Refugee Status

※ Do not mark in the shaded area and check the appropriate box.

Application No.	Date of Application	Processing Period 6 month (extensible within 6 month)
-----------------	---------------------	---

1. Personal Background

1-1) Family Name(s)	1-2) Given Name(s)
1-3) Other names you have been known by (including maiden names, religious names and nicknames)	
1-4) Date of Birth (mm/dd/yy)	1-5) Gender <input type="checkbox"/> Male <input type="checkbox"/> Female
1-6) Nationality	1-7) Occupation
1-8) Place of Birth (Village, Town, City, County, District, Province, Country)	
1-9) Registered Address in Home Country (Village, Town, City, County, District, Province, Country)	
1-10) Religion and Sect	1-11) Race, Ethnic or Tribal Group
1-12) Language(s) you can speak most fluently <input type="checkbox"/> Mother language: <input type="checkbox"/> Korean <input type="checkbox"/> English <input type="checkbox"/> French <input type="checkbox"/> Other languages:	

2. Entry to the Republic of Korea

2-1) Date of last entry in Korea (mm/dd/yy)	2-2) Place of last entry in Korea		
2-3) Did you get an entry permit to Korea?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If yes, complete 2-4) ~ 2-6)			
2-4) Identity Document No. <input type="checkbox"/> Passport No.: <input type="checkbox"/> Identification No.:	2-5) Type of Visa	2-6) Period of Stay	
2-7) Did you present your identity as listed above(2-4) when entering Korea?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If not, complete 2-8) ~ 2-11)			
2-8) Family name(s) on Passport	2-9) Given name(s) on Passport		
2-10) Date of Birth on Passport (mm/dd/yy)	2-11) Nationality on Passport		

3. Status in the Republic of Korea

3-1) Type of Current Visa	3-2) Expiration Date
3-3) Violation of law committed (If applicable) <input type="checkbox"/> Illegal Stay <input type="checkbox"/> Illegal Entry <input type="checkbox"/> Falsified or Forged Passport <input type="checkbox"/> Criminal Offence <input type="checkbox"/> Others	

3-4) Explain in detail the reason(s) for above.

3-5) Address in Korea

3-6) Contact Number

3-7) E-Mail Address

3-8) If you have any of the following in Korea, check the box(es) and complete below.

Family Relatives Representative Lawyer Interpreter Friends Others

Full Name	Relationship	Telephone Number

4. Nationality (Citizenship) and Permanent Resident Status

List all countries where you have held citizenship or permanent resident status.

Country	From(mm/dd/yy)	To(mm/dd/yy)	Status

5. Marital Status

Check the appropriate box and indicate your marital history in chronological order.

single married divorced widowed separated

common-law marriage same-sex marriage etc.

Date (mm/dd/yy)	Name of spouse		Current Status
	Family name(s)	Given name(s)	

8. Work Experience

List all the jobs you have had in chronological order (including full-time, part-time, self-employment and internships)

From (mm/dd/yy)	To (mm/dd/yy)	Name of Workplace	Location(Address)	Type of Work

9. Military Service

9-1) Is military service compulsory or voluntary in your country or countries of citizenship?

Compulsory Voluntary

9-2) Did you serve in the military?

Yes No

9-3) If yes, when did you serve?

9-4) Where did you serve?

9-5) In which military branch did you serve?

Army Navy Air Force Marine Corps Others ()

9-6) Name of regiment(unit)

9-7) Rank at the conclusion of service

9-8) Reason for discharge

9-9) Did you have experiences of combat? (If yes, give details.) Yes No

10. Residence Records

List all the places of residence in your home country and in foreign countries in chronological order.

From (mm/dd/yy)	To (mm/dd/yy)	Country	Address (Village, town, city, county, district, province)	Type of Visa

11. Travel Documents

11-1) Do you currently possess your passport or travel document?

Yes No

11-2) If yes, by whom was it issued?

11-3) Date of Issuance

11-4) Purpose of Obtaining

11-5) Was the passport or travel document genuine and legally obtained?

Yes No (e.g forged or falsified)

11-6) Explain in detail where and how you obtained your passport or travel document.

11-7) If passport is not genuine or illegally obtained, explain in detail.

11-8) If you do not have a passport or travel document, explain the reasons in detail.

11-9) If you do not currently have a passport or travel document, can you have it issued?

Yes No

11-10) If yes, check the box(es).

Passport Travel document I.D card Other

11-11) If not, explain the reason in detail.

12. Korean Visa

12-1) Do you have a Korean visa?

Yes No

12-2) If yes, which Consulate/Embassy did you apply at?

12-3) Visa Type

12-4) Validity of Visa
(Date of issuance and expiry)

12-5) Document(s) you submitted to apply for a Korean visa

12-6) Did anyone help you to obtain a Korean visa or enter Korea? If yes, give details.

13. Record of Entry Into and Departure From Home Country

13-1) When did you last leave your home country? (mm/dd/yy)

13-2) Place of Departure

13-3) Means of Transportation

13-4) Reason(s) for Departure

13-5) Were you required to obtain an exit permit or exit visa from the authorities of your country?

Yes No

13-6) If yes, did you obtain it legally?

Yes No

13-7) If yes, when was it issued? (mm/dd/yy)

13-8) If not, explain why and how you left your country.

13-9) Have you travelled through any other countries before coming to the Republic of Korea?

Yes No

If yes, list all the countries in chronological order.

From (mm/dd/yy)	To (mm/dd/yy)	Country	Location	Status	Purpose of visit

13-10) Have you ever been deported from, denied visa, or refused entry to any country including the Republic of Korea?

Yes No

If yes, complete below in chronological order.

Date (mm/dd/yy)	Action (Deportation, Visa Denial, Entry Refusal)	Country	Reason

14. Information on Application for Refugee Status

Definition of a Refugee

A refugee is a person who owing to a well-founded fear of being persecuted for reasons of race, religion, nationality, membership of a particular social group or political opinion, is outside the country of his nationality and is unable or, owing to such fear, is unwilling to avail himself of the protection of that country; or who, not having a nationality and being outside the country of his former habitual residence as a result of such events, is unable or, owing to such fear, is unwilling to return to it.

14-1) Why are you applying for refugee status? Check the appropriate box(es) and answer in detail the questions below:

I am claiming for protection as a refugee based on

Race:

Religion:

Nationality:

Political Opinion:

Membership in a particular social group:

Family Unity:

→ If you have another reason besides family unity, you may check more than one criteria.

Others:

14-2) Have you, your family, friends or colleagues ever experienced harm, mistreatment or threats in the past by anyone?

Yes

No

If Yes, explain in detail.

- ◆ What happened?
- ◆ Who experienced the harm, mistreatment or threats?
- ◆ When the harm, mistreatment or threats occurred;
- ◆ Who caused the harm, mistreatment or threats;
- ◆ Why you believe the harm, mistreatment or threats occurred;
- ◆ Where did the the harm, mistreatment, or threats occur?

14-3) Do you fear harm or mistreatment if you return to your country?

Yes

No

If Yes, give details.

- ◆ What kind of harm or mistreatment you fear;
- ◆ Who you believe would harm or mistreat you; and
- ◆ Why you believe you would or could be harmed or mistreated.

14-4) Have you or your family members ever been interrogated or questioned in your country?

Yes

No

If Yes, describe what happened in detail.

- ◆ Who experienced the action?
- ◆ When the action occurred?
- ◆ Who interrogated or questioned you/your family members?
- ◆ Why you/your family members were interrogated or questioned.
- ◆ Where did the action occur?

14-5) Have you or your family members ever been arrested, detained, arrested or imprisoned in your country?

Yes No

If yes, describe what happened in detail.

- ◆ When the action occurred;
- ◆ Who detained or arrested or imprisoned you?
- ◆ Why you were detained or arrested or imprisoned; and
- ◆ How/Why you were released.
- ◆ Where did the action occur?

14-6) Have you or any of your family members ever joined or been associated with any organizations or groups in your home country?

Yes No

If yes, complete for each person the level of participation, any leadership or other positions held, and the length of time you or your family members were involved in each organization or activity.

Relationship	Participant's Name	Name of Organization	Level of Participation /Position	Period of Activity (from-to mm/dd/yy)

14-7) Have you ever been in hostile activity against your government or any group ?

Yes No

If yes, write in detail including information on date, location, and activities.

14-8) Have you or any of your family members ever applied for refugee status in any other country?

Yes No

(1) If yes, explain the decision and any status you or your family received as a result.

Name (Relationship to you)	Country of Asylum	Date of Application	Result	Cancellation or Cessation

(2) If you or any of your family members were already recognized as a refugee in another country, explain in detail why you or your family member left the country.

14-9) Do you have any contact with, or information concerning your family members remaining in your country of origin?

Yes No

(1) If yes, with whom and how often:

(2) If not, please explain:

14-10) Can you provide any documentation or evidence in support of your application?

Yes No

If yes, give details.

14-11) How did you get the information on refugee status application procedures in Korea? (When, where, and from whom did you get the information?)

14-12) If you have not applied for refugee status within one year after you arrived in Korea, please explain.

16. Declaration

◆ Declaration by the applicant

I understand all the information and questions in this form and I declare the information I have supplied is complete, correct and current in every detail. I understand that if I have given false or misleading information, my application for refugee status may be refused, or, if I have been recognized as a refugee, the recognition may be cancelled.

<Declaration>

※ Please confirm and handwrite the statement above.

◆ Declaration by a representative, interpreter, legal guardian of minor etc.

I have helped the applicant complete this form in the capacity of:

Representative Interpreter Legal Guardian of Minor

Other(give details of relationship):

Name / Date of Birth

Current Address in Korea

Contact Number

I certify that I have completed this form and additional documents at the request of the applicant (_____), and that he/she has fully understood the contents of this form and the answers given, and approved them before signing the declaration above.

Name

Signature

Date(mm/dd/yy)

Pursuant to Article 5(1) and 6(1) of the Refugee Act, I apply for recognition of refugee status as above.

Date(mm/dd/y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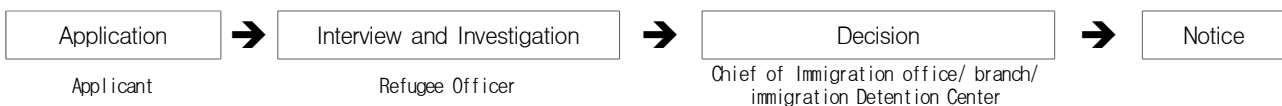
Name

(Signa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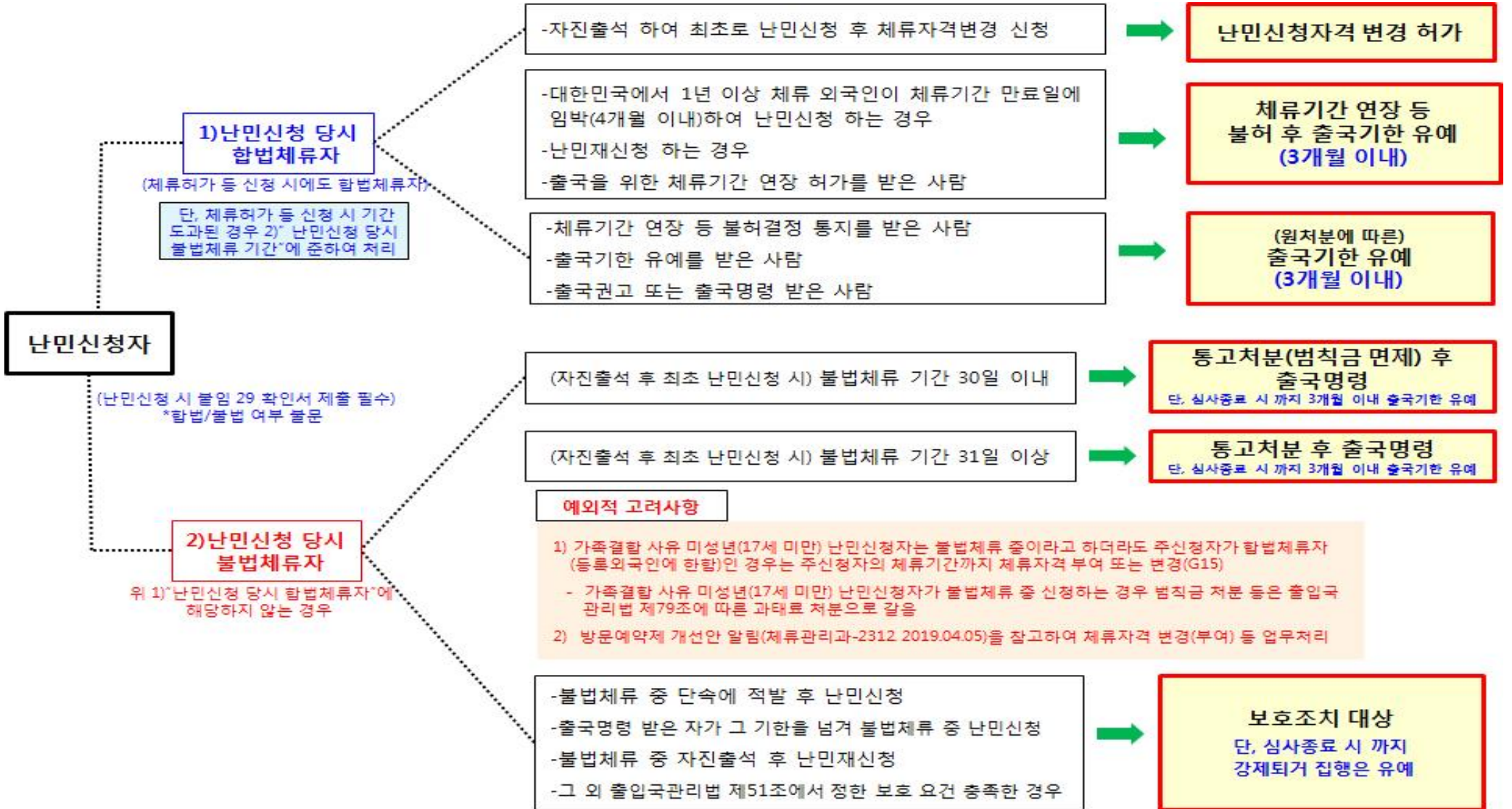
Chief of ○○○ Immigration Office/ Branch/ Immigration Detention Center

Attachments	1. Passport or Alien Registration Card(However, if an applicant is without his/her passport or alien registration card, he/she is required to submit a statement to explain the reason.) 2. Additional documents related to your refugee claim(If you have) 3. Photo(35mm×45mm) taken within the last 6 months	No fee
-------------	--	--------

Procedure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공고 제20 -

공 고
Public Notice

○ 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연 번	신청번호 (Application NO.)	신청일자 (Date of Application)	주 소 (Address)	비고
1	IC-BG-17-000000	2017.04.17.	경기도 (Gyeonggi-do)	출석요구 request to appear Refugee Office
2	PS-BG-18-000000	2018.04.17.	부산 (Busan)	출석요구 request to appear Refugee Office
3	SU-BG-18-000000	2018.01.11.	서울 (Seoul)	출석요구 request to appear Refugee Office

귀하가 신청한 난민인정신청과 관련하여 조사하고자 하오니 OO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난민과에 2000년 00월00일까지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하실 때는 외국인 등록증, 신청접수증, 여권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You are hereby requested to appear at Refugee Office, OOO immigration office by th of 2000, in connection with your application.

You are requested to carry foreigners registration card, receipt of application and passport when appearing at the office.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장
Chief of ○○○ Immigration Office

확 인 서

(Confirmation of Acknowledgement)

난민신청자는 난민심사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여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사항에 따라 출국명령(벌칙금 처분 포함), 보호조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신의 체류기간 등을 확인하고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을 방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위의 내용을 모두 이해하고 확인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서명합니다.

In order to legally stay in Korea during the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ss, refugee applicant(asylum-seeker) must visit the local immigration office to be granted a valid permission to stay temporarily in accordance with the Immigration Act. If he or she does not follow this procedure, then he/she would be violating the Immigration Act and may face unfavorable measures such as travel ban(as well as a fine), detainment, etc. Therefore, please be mindful of your valid period of stay, and visit the local immigration office to take the necessary steps.

I hereby confirm that I have acknowledged the above information and sign below.

작성일자(Date) (20 , ,)

작성자 성명 / 서명 (Name/Signature) (/)

※ 작성일자, 작성자 성명/서명은 반드시 자필 기재 요

※ You must write the date, name, and signature in your own handwriting.

의료 지원 신청서
Application for Medical Service Support

※ 어두운 난은 적지 마시기 바랍니다. Do not mark in the shaded area.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	-----	------	-----

신청자 인적사항 (Personal Information)	구분	<input type="checkbox"/> 난민인정자 <input type="checkbox"/> 인도적체류자 <input type="checkbox"/> 난민신청자	
	성명(Name in Full)	생년월일(Date of Birth)	성별(Gender)
	국적(Nationality)	전자우편(E-mail)	
	대한민국 내 주소(Address in Korea)	연락처(Contact Number)	

의료 관련 사항	진료기관명	담당자/연락처
	병명	진료비용
	병원 계좌 번호	은행/예금주
	건강보험 가입여부	지원 횟수

소득 등	현 소득 (Current Income)	원(won)	부양가족
	취업여부		타 기관 지원여부

「난민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에 따라 의료지원 지원을 신청합니다.

I hereby apply for the medical service support, pursuant to Article 42 of the Refugee Act and Article 22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s.

년(yy) 월(mm) 일(d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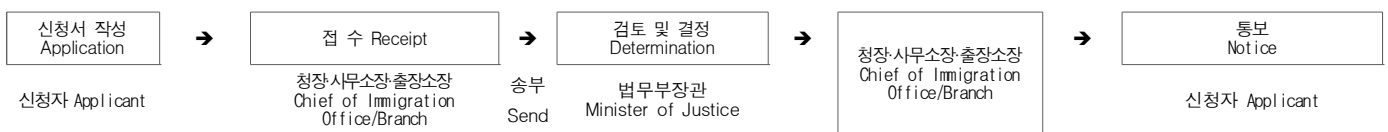
신청자(Applicant)

서명 또는 인(Signature)

법무부장관 귀하 MINISTER OF JUSTICE

첨부서류 (Attachments)	1. 진단서 2.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3. 병원 통장 사본	수수료 없음 (No Fee)
-----------------------	--	-----------------------

처리절차(Procedure)



위 임 장

위임인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위임 사유	

수임인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신청인(신고인)과의 관계	연락처

상기 위임인은 의료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위임인이 부담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날인)

법무부장관 귀하

유의사항

위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 및 행정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마약의 종류(일부 예시)

■ 총 478종(마약류 384종, 임시마약류 94종)

- ☞ 향정신성 의약품(257종) : 메트암페타민(필로폰), LSD 등
- ☞ 마약(126종) : 코카인, 헤로인(양귀비, 아편, 코카잎에서 추출)
- ☞ 대마(1종) : 대마와 그 수지 및 이들을 원료로 하여 제조된 것
 - ☞ 임시마약류(94종) : 카트 등

◆ 주요 마약류



※ 자세한 사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청(홈페이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면접 녹음·녹화 미동의 확인서

- ▶ 난민면접은 긴 시간 동안 통역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공정한 심사를 위해 난민면접의 전 과정을 녹음·녹화하고 있습니다.
- ▶ 녹음·녹화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서식을 작성하여 녹음·녹화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면접 시작 시 녹음·녹화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난민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녹음·녹화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

본인은 난민면접과정을 녹음·녹화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난민신청자 성명/서명:

담당통역인 성명/서명:

담당면접관 성명/서명:

난민심사관 결재: